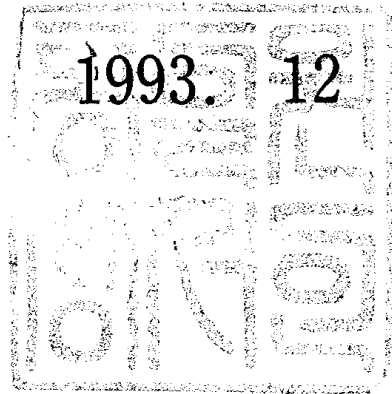


통일과정연구 93-VI

동서독 화폐 통합



통 일 원

○ 이 책자는 주독한국대사관이 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발간한 것입니다.

○ 통일원은 주독대사관에 파견된 통일연구원으로부터 통독관련 연구자료 및 양독간 교류협력 실태 자료를 송부받고 있으며,

당실은 분단국 통일사례연구의 일환으로 독일 통일관련 자료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간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 일 정 책 실

- 책을 내면서 -

주독대사관은 독일 통일 과정과 내적 통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국내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에 꾸준히 송부해 왔으며, 또한 우리의 통일정책 수립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등 다섯 권의 기본정책자료집을 이미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기본자료집으로 「동서독 화폐통합」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이제는 각론적인 연구에 깊이가 더해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각론연구의 주제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취하여진 조치 가운데서 가장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동서독간 화폐통합 문제를 채택했습니다.

이 책자는 동서독 화폐통합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독일과 우리 국내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화폐교환비율의 책정 문제, 단계적 통합론과 조기 통합론의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화폐통합을 계기로 동·서독 정부가 취한 제반 후속 조치와 화폐통합의 파급효과도 분석함으로써, 화폐통합의 핵심 사안을 평가하고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점들도 적시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화폐통합에 관한 주요 논문 등 자료들을 엄선, 번역하여 부록으로 첨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의 통일과정연구 가운데서 특히 화폐·경제통합에 관한 부분 연구에 관심을 두신 정책입안 담당자 및 전문가 여러분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3. 11

주독대사

金太指

○ 이 책자는 주독한국대사관이 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발간한 것입니다.

○ 통일원은 주독대사관에 파견된 통일연구원으로부터 통독관련 연구자료 및 양독간 교류협력 실태 자료를 송부받고 있으며,

당실은 분단국 통일사례연구의 일환으로 독일 통일관련 자료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간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 일 정 책 실

- 책을 내면서 -

주독대사관은 독일 통일 과정과 내적 통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국내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에 꾸준히 송부해 왔으며, 또한 우리의 통일정책 수립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등 다섯 권의 기본정책자료집을 이미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기본자료집으로 「동서독 화폐통합」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이제는 각론적인 연구에 깊이가 더해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각론연구의 주제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취하여진 조치 가운데서 가장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동서독간 화폐통합 문제를 채택했습니다.

이 책자는 동서독 화폐통합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독일과 우리 국내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화폐교환비율의 책정 문제, 단계적 통합론과 조기 통합론의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화폐통합을 계기로 동·서독 정부가 취한 제반 후속 조치와 화폐통합의 파급효과도 분석함으로써, 화폐통합의 핵심 사안을 평가하고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점들도 적시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화폐통합에 관한 주요 논문 등 자료들을 엄선, 번역하여 부록으로 첨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의 통일과정연구 가운데서 특히 화폐·경제통합에 관한 부분 연구에 관심을 두신 정책입안 담당자 및 전문가 여러분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3. 11

주독대사

金太指

- 목 차 -

책을 내면서	i
목차	ii

I. 화폐통합 과정과 평가

1. 조기통합의 배경	1
2. 화폐통합의 시기 논쟁	3
2-1. 단계적 통합	3
2-2. 조기 통합	5
3. 화폐 교환비율의 책정	7
3-1. 문제점	7
3-2. 적정 교환비율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10
3-3. 적정 교환비율에 대한 독일연방은행의 입장	16
4. 화폐·경제통합 조약의 주요내용	18
4-1. 화폐통합	19
4-2. 경제통합	20
5. 후속조치	22
5-1. 동독의 후속조치	22
5-2. 서독 정부의 후속조치	26
5-3. 연방은행의 후속조치	28

6. 화폐통합 이후의 문제점	32
6-1. 동독 산업의 붕괴	32
6-2. 서독의 재정부담 가중	34
6-3. 실업자 증대 및 이주민 감소	36
6-4.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친 영향	40
7. 평가 및 교훈	42
7-1. 화폐통합 시기 문제	42
7-2. 화폐교환 비율 책정 문제	45

II. 화폐통합 관련 주요 논문 및 자료

1. 화폐통합에 관한 연방은행 보고서	51
2. 동·서독 화폐통합 :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정치적 결단	91
3. 화폐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전환과정상의 위기	119
4. 경제 및 화폐통합에 대한 하우스만 계획	186
5. 연방수상 앞으로 보낸 '90.2.9일자 경제5현의 공개 서한	191
6. 화폐교환법에 대한 중앙은행 자문위원회의 제안	198
7. 1:1 교환비율에 대한 반론	202
8. 올바른 정책 방향	207
9. 환전자산 취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210
10. 동독내 통화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처벌에 관한 법	212

참고문헌	215
------------	-----

화폐통합

과정과 평가

1. 조기 통합의 배경

- '89.11.9 베를린장벽 붕괴 당시만해도 서독 경제계와 연방은행의 주요 관심사는 동독인들이 동독마르크로 경제재건을 이룩하는 과업을 서독측이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는 문제였음.
- 그러나 '89.10~'90.1월까지 4개월 동안에 30만명이 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 이들을 수용할 주택의 부족과 실업자 증가, 동독경제의 공동화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을 모종의 조치가 필요했음.
(이주 현황은 P.39 <표4> 참조)
 - 서독의 정치인들은 소속정당을 가릴것 없이 화폐·경제통합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 서독 DM의 높은 구매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동독주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이주물결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90.2.11 동독 월요데모에서 “서독마르크(DM)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 (“Kommt die DM nicht nach hier, gehen wir zu ihr”)는 구호 등장
 - 그 당시 열띤 논쟁의 대상이던 단계적 통일방안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정치, 경제 역량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름.
 - 단계적 통합안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동·서독 마르크화를 공존시켜 환율조정을 통해 동독 산업에의 초기충격을 완화하여,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임금의 점진적 조정, 사회보장 및 각종 사회제도 변경, 자산 및 부채의 단계적 전환 등으로 과도기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감.
- 베를린장벽의 개방은 동독에서 자본과 인력의 서독유출, 마르크 가치의 폭락, 상품시장의 붕괴, 재정파탄 등을 초래하여, 동독경제 전반이 붕괴되는 위기를 막을 획기적 조치가 필요했음.

- 특히 드메지어 동독 총리는 동독마르크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유리한 환율로 교환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이 보유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저축액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도 신속한 화폐통합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함.
-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화폐통합으로 서독수준으로의 복지 향상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는 동독주민들 (유권자)의 기대와 이를 정권유지에 이용하려는 콜수상 등 여당 정치가들의 의지도 큰 요인으로 작용함 (이 책 II. 2-4-1. 참조).
 - 동독 기민당의 유세지원에 나섰던 서독기민당 정치인들은 화폐통합을 총선 승리를 위한 호재로 생각함.
 - 특히, '90.3.18 구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거를 앞두고 콜 수상이 1:1 교환 비율에 의한 동.서독 화폐통합을 시사하여, 동독 독일연합당의 압승(48% 득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소련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유리한 국제정치적 호기를 놓치지 않고 독일의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대외적 요인도 작용함.

2. 화폐통합의 시기 논쟁

2-1. 단계적 통합

- 장벽붕괴후 서독 정치가들은 서독의 경제·사회제도를 동독에 도입, 동독의 경제를 서독의 구조에 적응시키는 방법에 몰두함.
 - 특히, 우선 경제개혁을 단행, 예컨대 동독의 마르크를 잠정적으로 태환화 하고, 왜곡된 가격구조를 정상화한 이후에야 화폐통합을 실시해야 한다는 단계적 통합론이 대두
- 연방 경제성과 경제자문위원회(경제5현) 등은 우선 동독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경제개혁이 실시되고, 동독 마르크가 완전태환이 가능해졌을 때, 화폐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단계적 통합모델을 제시함.
 - '93년 2월 하우스만 경제성장관은 화폐통합에 앞서 확고부동한 시장경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서독 화폐·경제통합을 EC 단일시장이 시작되는 1993.1.1까지 완결시키는 3단계 화폐통합 모델을 제시함.
 - 1단계 : 서독으로부터의 저리 신용대출 지원과 경제안정 대책용 장기 융자 등의 방법을 통해 동독경제의 시장개혁 추진과 동독 마르크의 제한적 태환성 도입
 - 2단계 : 전 제품에 대한 가격자유화 및 동독마르크의 완전 태환화 추진
 - 3단계 : 공동통화로서 D-마르크를 동독에 도입
 - 경제자문위원회(Sachverstaendigenrat)는 콜 수상앞으로 보낸 '90.2.9일자 공개서한에서 조속한 화폐통합을 반대하면서, 우선 동독의 통화 과잉공급의 흡수, 가격 구조 개혁 (가격 자유화), 시장 경제 조건에 맞는 금융제도 구축 등 개혁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 빠른 시일 내에 동독 마르크의 완전태환을 가능케 한 후에 화폐통합을 실시할 것을 건의함.
 - DM의 도입으로 양독간의 소득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동독 주민

들은 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해 와, 결국 동독의 산업입지가 악화되고 서방으로부터의 투자도 위축될 것임.

- 화폐통합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압력이 가중,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그 결과 세금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재정이전마저 투자성이 아닌 소비성 용도에 지출되어 동독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 DM을 취득한 동독주민들이 서독 및 서구제품을 선호하게 되어 동독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제품생산량과 생산성이 더욱 낮아져 결국 소득과 취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동독 경제 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앞서 화폐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정책은 자율적인 경제기반 구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금만 낭비하고, 결국 이주물결을 장기적으로 억제해 나갈 수 없을 것임.
 - .. 실물경제 분야에서 조속한 개혁을 실시, 머지않아 동독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이주물결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즉, 단계적 통합론자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통해 서독과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환율이란 완충 장치를 통해 국제경쟁시장에서 단련을 겪게 한 후에 동독지역에 서독 DM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경제이론적 측면에서는 단계적 모델이 합리적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를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음.
 - 우선,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 동독마르크의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환율이 보장되어야 하나, 동독주민들이 동독체제와 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비용이 막대함.
 - 거대한 구조전환상의 어려움에 처한 동독이 필수불가결한 변혁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개혁이 지연되고, 그 결과 서독의 대동독 재정원조가

장기화 될 우려가 큼.

- 서독에서의 임금이 동독에서 일할 경우에 비해 몇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우수인력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할 것임.

2-2. 조기통합

- 서독정부는 동독주민의 지속적인 서독 이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경제적인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통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대규모 항의시위와 서독으로의 끊임없는 이주로 인해 동독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
 - 화폐통합은 동독에 대한 서방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임.
 - 화폐통합은 정치적 통일을 가속화시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 성취에 기여할 것임.
- 한편, 야당인 사민당 (SPD)은 자체내에서 상반된 견해를 보임.
 - 사민당 재정정책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주장과 같이 동독경제의 위기와 서독으로의 이주물결을 이유로 즉각적 화폐통합을 지지함.
 - 반면, 사민당 수상후보자 라폰테인은 화폐통합이 초래할 동독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우선 사회보험제도, 임금협약체계, 재무행정제도부터 완비한 후, 동독마크를 태환 가능한 통화로 만들어, 대외경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표1〉 두 통합방안의 파급효과

	단 계 적 통 합	조 기 통 합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응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 - 가격, 품질면에서 열세인 동독 산업의 구조조정에 유리 - 환율을 통한 국내산업보호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 - 대량실업사태 방지 - 경제개혁과정의 지연 - 서독으로의 우수인력 이주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자유화 등 개혁의 즉각적인 실시 · 준비·조정과정없이 국제 경쟁시장에 돌입 · 동독경제의 전반적 붕괴 위험 · COMECON 판매시장의 상실 - 대량실업 발생 우려 - 기업들의 대량 도산 우려
정치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스스로 문제 해결 - 동독의 경제정책상의 주권 유지 - 서독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필요 - 완만한 정치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급진적 파급 효과 - 동독의 통화 및 경제정책 운용상의 자율권 포기 · 독자적인 정책수립 포기 · 서독의 즉각적인 대규모 지원 필요
분배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인 소득향상 - 초반 임금수준은 낮으나 긍정적 경제발전시 급속한 소득향상 가능 - 연대적 고통 분담: 저소득층을 위한 고소득층의 상대적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 가치 인상에 따른 즉각적인 소득 상승 - 저렴한 가격으로 서구제품 구입 용이 - 빈민층, 실업자층의 소득 저하, 고소득층의 소득향상

3. 화폐 교환비율의 책정

3-1. 문제점

3-1-1. 동.서독 통화간 환율 적용의 문제점

- 통합전 여러가지 형태로 교환되고 있던 동.서독 통화간의 기존환율은 통화통합시 교환비율 책정의 기준이 될 수 없었음.
-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89년 11월 암시장 교환비율인 1 DM : 16 동독 마르크로부터 '90년 1월부터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에게 동독 마르크의 구매를 무제한 허용할 당시 비율인 1:3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함.
 - 베를린장벽 개방이전 3년간(1987~89년) 평균환율은 양독 여행자들이 지참한 동독마르크를 서독 환전시장에 팔 경우에는 1:8 이었으며,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된 경우 1 : 6.7 이었음.
 - 1990년초 암시장에 거래된 환율은 1 : 7 정도였음.
- 이러한 불안정성의 요인은 화폐통합설에 따른 투기성 매입, 동독에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특정소비재(가전제품, 커피 등)에 대한 동독 주민의 수요 증가, 동독내 현물 및 금융 자유시장의 결여 등임.
- 한편, 동독법이 허용치 않는 외화현금 지참, 이로 인한 위험부담, 동독의 재화 및 용역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동독마르크화의 외환 가치는 실제 국내 구매력에 비해 장기간 과소평가 되어 왔음.
-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동.서독 화폐 교환율은 산정방법에 따라 100 동독 마르크 : 88 DM에서 100 동독마르크 : 132 DM까지 차이가 있음. 1)

1) 구체적 평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Sinn, Gerlinde/Sinn, Hans-Werner: Kaltstart, pp. 54-63 참조.

- 이는 주로 품목 바스켓에 포함되는 품목의 종류와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제품의 품질차이가 반영되지 않음.
-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교환율은 소득수준의 차이와 동독에서의 가격 보조금 때문에 정확한 환율을 반영하지 못함.

〈표2〉 동·서독 화폐간 구매력 비교

기 관	환 율	비 고
독일경제연구소 (DIW)	100 마르크=120 DM	통일후 가격변화 및 동독품목 바스켓 기준
ifo 경제연구소	100 마르크= 48 DM	통일후 가격변화, 통일전 동독 물품 바스켓 기준
통계청 종합	100 마르크= 97 DM	1990. 7
	100 마르크=102 DM	1990.12
	100 마르크=109 DM	1991. 1
	100 마르크=127 DM	1991.10
	독일연방은행	100 마르크=107 DM
연방통계청		제품의 질을 반영한 1990.5 현재 구매력 비교
	100 마르크=132 DM	동독 품목 바스켓 기준
	100 마르크= 88 DM	서독 품목 바스켓 기준
	100 마르크=108 DM	기하 평균

출처 : Gerlinde Sinn/Hans-Werner Sinn, Kaltstart, P.55.

- 동독마크코로 표시되는 동독 수출품의 가격을 이것을 서독에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서독마크코화 표시 수익으로 나눈 외환수익률 (Devisenrentabilitaet)에 의하면 1989년중 동.서독 통화간 환율은 1:4.4 (동독정부 시산)이나, 이 또한 적정 교환비율로는 부적합함.
 - 동독 수출상품의 국내가격은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경제적 가치와는 별도로 조세정책에 따라 환율이 변동함.
 - 동독수출의 주목적은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외환획득에 있으므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출보다는 외환수익이 매우 낮게 나타남.
- 1989년까지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시 강제환전금액(Zwangsumtausch : 취업자의 경우 1인당 1일 25 DM, 퇴직자의 경우 15 DM)에 공식적으로 적용하던 동.서독 통화간 1:1 비율은 동독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환율로 교환비율 책정과 관련된 경제적 의미는 전혀 없음.

3-1-2. 적정 교환비율 결정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기준치 결여

- 교환비율의 결정은 단순히 DM 도입에 따른 통화기술상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독경제의 실태, 특히 생산성, 국제경쟁력 및 소득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해야 했음. 왜냐하면 교환비율은 동독 경제력의 규모를 결정짓는 개시대차대조표 작성시에도 적용되며, 동시에 새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임.
 - 연방은행장 피엘은 90년 2월말, 교환비율 문제는 자세한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동독의 부채과 자산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 고 말함.
- 화폐통합 실시 전까지 동독에는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관계에 관한 자료가 전무하거나, 있어도 매우 빈약한 상태였음.

- 가격 및 원가구조가 중앙 통제에 의한 계획경제였기 때문에 항상 왜곡·조작되어 있음.
- 동독 경제전체 및 산업 각 분야별 노동생산성과 주민들의 소비유형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음.
 - 서독대비 동독경제 생산성 추정에 있어서 50%(연방은행), 30%(킬 세계경제 연구소) 등으로 차이가 발생(이 책 II. 3-2-1. 참조).
- 동독기업의 자산/부채비율 등 재무관련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음.

3-2. 적정 교환비율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화폐통합 조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과제는 화폐통합에 따른 인플레이 위험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동독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국고부담을 줄이는 한편, 동.서독 주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환비율의 책정이었음.

3-2-1. 물가에 미치는 영향

- o 역사적으로 물가안정에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서독인들에게는 교환비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함.
 - 특히 관대한 교환비율의 결정으로 동독주민들의 자본수익이 커질 경우, 수요가 증가하여 인플레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함.
- o 내독간 무역규제 철폐와 특정 소비재에 대한 과세 및 보조금의 철폐로 동독의 물가구조와 수준이 서독의 그것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되었음.
 - 40여년간의 강제적 소비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독주민의 소비성향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차치하고, 동독 가계가 소비 바스켓을

종전 수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15% 정도의 즉각적 가격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음.

○ 화폐교환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압력의 정도는 화폐통합후 DM으로 표시되는 동독의 실제통화량이 동독에서 서독수준의 물가안정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동독의 적정 화폐량을 어느정도 초과하는지 여부에 좌우됨.

- 독일연방은행은 통화방정식($MV=PQ$)에 기초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해 동독지역의 적정화폐량을 산출함.

· 화폐통합후 동독지역의 화폐유통 속도는 서독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가정

· 동독의 노동생산성(서독수준의 30~50%)을 기준으로 추정한 동독의 명목 GNP는 서독의 10~13% 수준

.. 동독 GNP를 서독의 10%로 할 경우, 구동독의 적정화폐량은 서독의 기초화폐량(12,555억 DM)의 10%인 1,256억 DM으로 산정

- 이러한 가정하에서 서독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적정교환비율은 서독의 중심통화지표인 M3(현금통화+요구불예금+불특정 저축예금+단기성 정기예금+4년미만 은행차입금)를 기준으로 할 경우, 1 DM=1.5~2.0 M(동독마르크)로 계산됨.²⁾

· 화폐통합시 실제 평균교환비율은 1 DM=1.7~1.8 M 이었음.

○ 화폐교환실시로 인한 통화량 (M3) 증가는 동독주민들이 기존예금을 채권, 주식, 장기적금등 이자율이 높은 투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약 10%로 예상되었음.

- 이는 DM 적용 영역의 확대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확대 예상보다

2) Bofinger, Peter(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중앙은행): The German Monetary Unification (GMU): Converting Marks to D-Mark.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1990. 7/8 월호 (독일 통일관련 자료집 II, 1991.9. 재무부, p. 426.)

높은 수준이 아니었음.

3-2-2. 동독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서독정부는 화폐교환비율이 동독기업의 경쟁력, 동독지역의 실업률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짐.
 - 동독기업들은 우선 그들의 제품가격을 종래 마르크에서 DM으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됨.
 - 동독의 기업들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시장에 개방될 경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실업률과 경제 성장을 좌우함.
 - 한편, 서독 주민들은 동독주민들에 대한 실업수당 등 재정지원에 따르는 부담 증가를 우려함.
- 경쟁력과 관련하여, 기업부채와 임금에 대한 교환율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

3-2-2-1. 기업부채에 미치는 영향

- 자본 stock의 교환비율은 기업의 부채부담과 이자지급액을 결정, 동독 기업의 자본비용과 사유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특히, 경제구조 전환과정의 핵심인 기업사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로 되어야 하며, 국가소유로 남는 기업체도 추후 정부 보조가 없더라도 살아 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환 후의 자산비율이 높아야 함.
- 자본 stock 교환율에 대해, '90.4 독일 5대 경제연구소는 구동독 기업 부채의 100% 탕감을 권유했으며, 연방은행은 1:1 교환을 제시함.

- 기업부채의 완전한 탕감 주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거부됨.
 - 기업들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재무구조를 가지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며,
 - 부채탕감은 막대한 정부 재정적자를 가져오기 때문임.
- 1 DM : 2 M 교환율에 의한 기업부채 감소로 동독기업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20%~37%로 되어 일부 기업의 사유화가 가능함.³⁾
 - 동독기업의 순채무 (당시 약 2,000억 동독 마르크로 추산)는 화폐 통합 후에 축소 (2:1 교환비율의 경우 1,000억 DM으로)되긴하나 과거 거의 무시되었던 이자부담이 서독수준의 금리 적용으로 더욱 가중되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음.⁴⁾

3-2-2-2.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임금교환비율의 책정은 교환율에 따라 동독기업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동독주민들의 이주 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했음.
 - 임금분야의 적정교환율은 동독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낮지 않아야 하는 반면,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야 했음.
- 교환율은 화폐통합시의 기존 임금협약에 따라 지불되는 임금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의 임금에도 계속 영향을 미침.
 - 만약 하향 경직성을 갖는 임금에 대한 교환비율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게 책정될 경우, 기업의 임금비용을 높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침.

3) Bofinger, Peter: 앞의 책 p. 429.

4) '90.6 당시, 서독의 금리수준은 재할인율이 연 6%, 롬바르트 금리가 연 8% 였음.

-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독의 평균생산성 이하로 임금수준을 통제해 주는 교환비율이 바람직함.
 - 낮은 임금수준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동독지역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보다 원활해지고, 그간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거의 획일적 임금체계였던 동독 임금구조에 부문별 생산성 차이를 감안한 차별적 임금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음.
- 화폐통합 이전 동독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1,250 마르크로 서독의 3,192 DM과 비교할 때, 교환비율이 1:1일 경우, 사용자측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비용은 서독의 37%에 달함.⁵⁾
 - 따라서 동독노동자의 생산성이 서독의 30~50% 수준이므로 1:1 교환 비율에 의거한 동독노동자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었음.
 - 단, 이러한 가정은 통합후의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타당한 것이므로, 통합후의 임금 협상의 결과에 따라 동독지역 기업의 경쟁력과 실업 및 투자 등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됨.
 - 특히 폴란드와 같은 다른 동구국가의 주민들과는 달리 동독주민들은 서독으로 이주, 취업, 정착하는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력 유출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 밖에 없었음.
 - 화폐교환비율을 1 DM : 2 M(또는 1 DM : 3 M)로 책정할 경우 소비 유형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동독노동자의 실질소득은 통합이전에 비해 약 57% (70%)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1:1 교환의 경우, 약 21% 감소).
- 동독마르크의 교환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동·서독간 임금 격차가 클 경우,

5) Bofinger, Peter: 앞의 책 p. 430.

동독인의 서독이주를 촉진시켜 서독의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 대혼란이 야기되는 한편,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한 숙련된 인적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었음.

- 그러나 교환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도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결과 서독으로의 이주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음.

3-2-3. 서독에서 동독으로 부의 이전 및 서독의 재정부담

- 동·서독 주민간 또는 기업간에는 통합 이전에 재정상 상호 연계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부의 이전 효과가 없음.
-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간의 불균형적 교환비율(채권·채무 1 DM : 2 M, 일정한도 은행 예치금 1 DM : 1 M)에 따른 차액을 서독정부가 부담할 경우 동 차액보전기금만큼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함.
 - 통합 이전 동독 경제력의 총량은 실물자산총액과 순대외채권총액으로 구성됨. 화폐통합이 동독의 대외 채권·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로 예금으로 되어 있는 국내 금융자산이 국내 금융부채보다 높은 비율로 교환될 경우 동독의 국부는 증가함.
- 불균형 교환비율로 인한 차액보전을 위해 동독정부(동독금융기관들이 차액보전청구권을 담보로 연방은행으로부터 리파이언스를 제공받으므로 사실상 서독정부)는 약 500억~1,100억 DM의 추가 재정부담을 안게 됨.
 - 연방은행 작성 '90년 5월말 현재 가상대차대조표 (이 책 II. 1. 부록 4 참조) 상의 차액보전청구권은 264억 DM이나, 금융기관은 자기자본 마련을 위한 추가 차액보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청구액수는 이보다 더 늘어남.⁶⁾

-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예금 및 현금과 같이 1 DM : 1 M 교환비율을 적용할 경우, 정부는 760억 DM의 추가재정부담을 지게 됨.
 - 동 부채는 주로 서독의 납세자들이 부담하므로 서독 주민 1인당 약 1,230 DM을 동독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서독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담이 됨.

3-3. 적정교환비율에 대한 독일연방은행의 입장

- 1990.3 동·서독이 동의할 수 있는 화폐교환법 초안을 제시해 달라는 서독정부의 요청에 대해 연방은행 자문위원회 (Zentralbankrat)는 임금 및 연금에 대한 2:1의 교환을 추천함.
 - 화폐통합 실시 이전에 주요 소비재에 대한 국가의 가격보조금 철폐 등 가격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임금인상을 실시한 이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2:1 비율로 교환함.
 - 이 경우, 임금인상 이전의 동독마르크 임금과 서독 DM 임금간의 실제교환비율은 1.2:1 정도가 되며, 임금비용은 사용자측의 사회보장기여금 분담을 포함하여 서독 수준의 약 3분의 1 정도가 됨.
 - 이로써 임금비용과 노동생산성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불가피한 시장경제여건에 따른 임금 재조정과 획일적 임금구조에 대한 개편 작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음.
- 현금 및 예치금에 대해서도 2:1 교환비율을 적용하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 주민 1인당 최고 2,000 동독 마르크까지 (4인 가족의 경우 최고 8,000

6) 차액보전 청구금액에 대해 연방은행 보고서는 약 570 억 DM (이 책자 II, 부록 4 참조), 연방은행 자문위원회는 500 억 - 1,000 억 DM (이 책자 II, 6 참조) 추정. 연방재무성 담당자(C. Unger)는 '94년까지 1,100 억 DM 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마르크까지) 1:1 비율로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함.

- 예금에 대한 2:1 교환으로도 동독예금자들이 고급품을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예금의 실제가치가 높아질 것임.
- 기업부채(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치금)에 대해 1:1 교환비율이 책정될 경우 동독정부는 주택사업 관련 부채와 국가 부채를 DM으로 상환해야 하며, 정부 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기 때문에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임.
 - 더구나 동독 금융기관의 자산항목에 대해 2:1, 부채항목(주로 예치금)에 대해 1:1 비율을 적용한다면, 국가에 대한 동독 금융기관의 차액보전청구가 500~1,000억 DM에 이르고, 부채항목에 대한 이자도 현실금리를 적용해서 지불해야 하는 만큼 정부 부담이 더욱 가증됨.
- 연방은행 자문위원회는 DM가 동독에 도입됨으로써 동독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함.
 - 왜냐하면, DM의 도입으로 동독은 완전태환이 가능한 통화를 구비하게 되어 동독 경제가 모든 산업국가들과 경쟁해 나가야하며,
 - DM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문제가 연방은행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임.
 - 임금 및 연금에 대한 교환비율이 동독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만약 임금이 1:1로 교환되고, 왜곡된 가격구조 역시 정상화될 경우, 생필품 가격인상과 이로 인한 노조측의 임금인상요구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함.
 - 자문위는 대부분 동독기업들이 노후상태에 있어서 비생산적으로 조업중인데, 임금비용까지 높아질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산에 직면, 대량 실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함.

4. 화폐·경제 통합조약의 주요 내용

- 동독과 서독은 1990.5.18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 (제1국가 조약)을 체결함.
 - 이에 앞서 4월 3일 서독정부는 임금 및 예금 일부에 대한 1:1 교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화폐교환 비율을 확정
-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제 1차 국가조약)은 6장으로 구성됨.
 - 기본원칙 :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체제를 양 조약 당사자 공동의 경제질서로 확정
 - 화폐통합에 관한 규정 : 서독 마르크화(DM)를 공통화폐로 하여 단일통화 지역을 형성
 -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본적 여건 확정
 -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 : 양독간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보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원칙을 확정
 - 국가예산 및 재정 : 재정정책, 국가지출, 조세 및 재정할당에 관한 원칙
- 부속문서인 '기본방침에 관한 공동의정서' 에서 동독은 서독의 법적, 제도적 기본조건을 인수한다고 규정함.
- 그 밖에 9개 항목에 걸친 부록이 있음.
 - 7개 항목에는 1990.7.1 화폐·경제·사회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예비 조건으로서 동독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개정이 규정되어 있음.
 - 부록 ix는 서독 및 외국의 개인 투자가에 의한 동독지역 내 토지 및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논의 끝에 확정되었음.

4-1. 화폐통합(Die Waehrungsunion)

- 화폐가치의 안정과 동독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대전제하에 서독 DM을 공통통화로 하는 단일 통화 지역을 형성함.
 - 1990.7.1 부터 서독 DM을 동독지역에 법정통화로 도입
 - 동독주민의 임금, 봉급, 보조금, 연금, 집세, 임대료 및 기타 정기적 지급은 1:1 비율로 교환
 - 장기간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교환율은 동독의 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을 일치시킴으로써 나온 결과였음. 즉 서독대비 임금수준은 취업자당 1/3, 급부창출능력은 취업자당 40~50%로 산정되었음.
 - 동독마르크로 된 채권, 채무의 교환율은 원칙적으로 2:1로 책정
 - 다만 사회정책 상의 이유로 동독거주자의 개인예금은 절충안을 택하여, 연령에 따라 2,000 마르크(0~14세), 4,000 마르크(15~59세) 및 6,000 마르크(60세 이상)까지는 1:1로 교환, 동 금액을 초과하는 저축액은 2:1로 교환
 - 동독 외 거주자의 경우 1989. 12. 31 이전 예금은 2:1, 이후 예금은 3:1로 교환
 - 화폐 교환은 동독 내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짐.
- 독일 연방 은행의 통화 정책 권한을 단일 통화 지역의 전역으로 확대
 -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은 독일연방은행 이사회가 수행

- 동독재무장관은 연방은행 이사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따라서 통화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책임도 없음.
- 동독정부는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시 연방은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중요조치시에는 각의에 연방은행총재를 초빙토록 의무화
- 연방은행은 동독정부·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연방은행이사회 직속 임시관리국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과 동독내에 15개소 이내의 지점을 설치
- 이에 소요되는 토지·건물은 동독정부가 제공하며 외국공관에 준하는 지위(치외법권 등)를 보장
- 동독측은 연방은행의 통화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쟁적 상업은행제도의 도입 및 자유로운 금융·자본시장 형성을 추진

4-2. 경제 통합(Die Wirtschaftsunion)

- o 사유재산제, 자유경쟁, 자유로운 가격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인력·자본·재화·서비스의 완전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공동경제지역을 구축
- 동독정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종식시키고 시장의 힘과 사적 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창출
- 내독간 거래에는 서독 DM을 사용
 - 베를린 협정 (1951. 9. 20)에 의한 청산 결제 방식 폐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논의 끝에 확정되었음.

4-1. 화폐통합(Die Waehrungsunion)

- 화폐가치의 안정과 동독기업의 경쟁력제고라는 대전제하에 서독 DM을 공통통화로 하는 단일 통화 지역을 형성함.
 - 1990. 7. 1 부터 서독 DM을 동독지역에 법정통화로 도입
 - 동독주민의 임금, 봉급, 보조금, 연금, 집세, 임대료 및 기타 정기적 지급은 1:1 비율로 교환
 - 장기간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교환율은 동독의 임금 수준과 노동생산성을 일치시킴으로써 나온 결과였음. 즉 서독대비 임금수준은 취업자당 1/3, 금부창출능력은 취업자당 40~50%로 산정되었음.
 - 동독마르크로 된 채권, 채무의 교환율은 원칙적으로 2:1로 책정
 - 다만 사회정책 상의 이유로 동독거주자의 개인예금은 절충안을 택하여, 연령에 따라 2,000 마르크(0~14세), 4,000 마르크(15~59세) 및 6,000 마르크(60세 이상)까지는 1:1로 교환, 동 금액을 초과하는 저축액은 2:1로 교환
 - 동독 외 거주자의 경우 1989. 12. 31 이전 예금은 2:1, 이후 예금은 3:1로 교환
 - 화폐 교환은 동독 내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짐.
- 독일 연방 은행의 통화 정책 권한을 단일 통화 지역의 전역으로 확대
 -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 의사 결정은 독일연방은행 이사회가 수행

- 동독재무장관은 연방은행 이사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따라서 통화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책임도 없음.
- 동독정부는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시 연방은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중요조치시에는 각의에 연방은행총재를 초빙토록 의무화
- 연방은행은 동독정부·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베를린에 연방은행이사회 직속 임시관리국 (Vorläufige Verwaltungsstelle)과 동독내에 15개소 이내의 지점을 설치
 - 이에 소요되는 토지·건물은 동독정부가 제공하며 외국공관에 준하는 지위(치외법권 등)를 보장
- 동독측은 연방은행의 통화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쟁적 상업은행제도의 도입 및 자유로운 금융·자본시장 형성을 추진

4-2. 경제 통합(Die Wirtschaftsunion)

- o 사유재산제, 자유경쟁, 자유로운 가격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인력·자본·재화·서비스의 완전 자유이동이 보장되는 공동경제지역을 구축
 - 동독정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종식시키고 시장의 힘과 사적 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창출
 - 내독간 거래에는 서독 DM을 사용
 - 베를린 협정 (1951. 9. 20)에 의한 청산 결제 방식 폐지

- 빠른 시일 내에 동·서독 경계선 통제를 완전히 철폐
- 동독은 GATT의 제반원칙에 부합토록 대외거래제도를 재편
 - 기존의 대외관계, 특히 COMECON 제국에 대한 계약상 의무는 존중

5. 후속 조치

5-1. 동독의 후속 조치

○ 동독정부는 경제관련법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보장 또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지한 동독 헌법 제 12조를 폐지
- 1990.6.17 신탁법(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n des Volkseigenen Vermoegens) 공포
 - 이로써 1990.3.1자 공유재산 신탁관리청(신탁청) 설립 결의안을 폐지

※ 신탁청의 기능 및 조직

- 기능 : 약 320개에 달하는 콤비나트(중앙정부 직영 : 170개, 지방정부 운영 : 140개 등)를 주식회사로, 콤비나트 산하 국영기업을 유한회사(조합 및 기타 형태의 예외 인정)로 전환하되 이를 국내외에 공모매각 할 때까지 신탁 관리
- 조직 : 5인의 이사로 이사회(집행기구), 20인으로 구성되는 감사회(당연직 : 동독국립은행 총채·재무장관·경제장관, 임명직 : 5년 임기로 동독의회에서 경제전문가 선출) 및 17인으로 구성되는 행정 위원회를 둠.

○ 동독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 실시

- 비거주자의 100% 자본참여 허용
 - 단 1,000만 DM 이상 출자시 동독경제성에 신고 의무화
 - 이로써 외국인 자본참여를 49%까지 제한한 모드로 정부 하에 입안된 합병법은 폐지

- 투자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
 - 기계 등 설비 투자 : 1991.6월 말까지 투자액의 12% 보조
1992.6월 말까지 투자액의 8% 보조
 - 창업 및 시설근대화 자금 : 유럽부흥계획자금(ERP) 등으로 융자
- 직접투자 및 민영화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부여
 - 부가가치세 경감 : 1990.12월 말까지 14%에서 11~5.5%로
1991. 3월 말까지 11~5.5%에서 6~3%로
 - 이익적립금에 대해 10년간 비과세
- 기존 동독의 금융관련 법령을 폐지하고, 서독의 해당 법률을 도입함.
 - 폐지된 동독의 금융관련 법률
 - 국립은행법
 - 외국환법
 - 외국무역법 등
 -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서독의 금융관련 법률
 - 연방은행법
 - 신용조직법(은행법)
 - 연방지준예치법(Federal Reserve Act)
 - 보험감독법 등
 - 이들 관계법규는 1990.6.21에 동독에 확대 적용되었고, 은행감독원이 동독에서 업무를 시작함.
- 동독은행을 이원화,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시중은행제도를 구축
 - 이미 4월초에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 DKB)을 설립, 종래 국립은행이 담당하던 국내기업들과의 거래 업무를 인수케함.

- DKB는 국립은행으로부터 광범위한 리파이낸스용 신용대부를 제공받음.
- 중앙은행이던 동독국립은행을 베를린 국립은행으로 전환
 - 과도기적으로 국립은행은, 수신업무를 주로 하고 자체여신업무는 보지 않는 저축은행(Sparkasse) 및 조합금고(Genossenschaftskasse)와, 민간수신업무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국립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여신업무를 보는 독일신용은행 간의 중개기관으로서 금융시장은행 역할을 수행 (항시 인출가능하고 연 3.25%의 이자 지급)
 - ※ 과거 동독의 금융기관은 중앙계획경제의 지시에 따라 자금배정, 대출규제, 청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민간예치금(저축예금, 대체예금 등)은 저축은행과 조합금고에 집중됨.
- 동독에 지점을 두고 있는 서독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원시적인 동독금융체제를 경쟁원칙에 입각한 금융조직으로 재편
- 또한 서독금융기관들도 동독지역에 합작사업을 하거나 자체지점을 개설
 - Deutsche Bank와 Dresdner Bank는 동독 국영 상업은행인 신용은행(Kreditbank)과 합작, 상업은행제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신, 지점부지, 사무기기, 인력(약 13,000명)을 지원받음.
- 동독세법을 서독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재산세법 내용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정
 - 법인세율을 종래 100% (잉여금의 전액 국고 납입)에서 누진으로 최고 50%로 조정
 - 자영업의 경우 최고소득세율을 30%로 제한

- 이외에 상법, 민법, 원자력법, 회사법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동·서독의 어떤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상세히 규정
- 불균형적 교환율에 따른 차액보전을 위한 차액보전기금(Ausgleichsfonds) 설치
 - 1990.7.1 부터 동독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가 화폐교환방식에 따라 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란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1990.5 차액보전기금을 설치함.
 - 동 기금은 은행 대차대조표 부채란의 예치금의 대부분이 1:1로 교환 ('90. 5. 31자 자료 기준 : 1,821억 동독마르크=1,234억 DM으로 평균 1.475:1) 되고, 자산란의 채권이 2:1로 상이한 비율로 교환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조정을 위해 신용기관들이 동독정부에 대해 갖는 청구권(Claim)으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자산란에 차액보전청구권(Ausgleichsforderungen) 계정을 설정함. 따라서 차액보전청구권은 정부가 은행에 진 부채임.
 - 동독은행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차액보전청구액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연방은행은 은행들이 청구하게 될 차액보전청구 금액이 약 570억 DM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음.
 - .. 은행과 기업들로부터의 차액보전청구를 심사중인 바, 연방 재무성은 1993년 10월 현재 차액보전기금을 약 800억 DM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994년 말까지는 1,100억 DM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은행의 청구권은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은행 자산으로서, 동 기금에 의해 인정된 경우 연방은행에 대한 리파이낸스 요청시 담보물로 사용될 수 있음.
- 동 기금은 대외부채청산 준비금(Richtungskoeffizienten : 과거 동독

신용제도하에서의 1:1 명목교환비율과 1 DM : 4.40 마르크 실질결산환시세 간의 차액을 지불하기 위한 국립은행 부채란의 계정) 해체에 따른 동 기금 에로의 유입과 동독정부예산지원으로 충당됨.

· 따라서 국립은행은 다른 은행과는 반대로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조정항 목이 부채란에 설정되었음.

- 동 기금은 프랑크푸르트 국내은행 제공 이자율(FIBOR: Frankfurt Inter Bank Offer Rate)를 적용 매 분기 말마다 은행에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의 경우 연 2.5% 이자와 함께 1995.7.1부터 40년간 분할 상환함.

5-2. 서독정부의 후속조치

- 화폐통합이 동독경제의 서독경제로의 편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서독측의 경제 및 금융구조상의 조정은 불필요함.
 - 서독영역 내로 제한되었던 각종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적용범위를 동독지역에까지 확대함에 따르는 제도 정비
 - 금융·조세·사회보장 관련법은 일부 수정 후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
- 서독정부는 연방의회의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 비준시 동 조약 체결에 따른 일괄법률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함.
 - 총 35조로 구성된 동 법률안은 연방은행법 등 각종 금융관련법, 세법,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독일통일기금의 설치근거조항을 포함
- 종래 동독관련 재정의 역할은 분단 관련 비용의 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화폐통합 이후에는 동독경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조 조정 비용의 지원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동독의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게 됨.

- '90년 상반기 동안 2차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3월 : 68억 DM, 6월 : 47.5억 DM)하여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증점 지원함.
- '90년 7월에는 각의에서 의결된 1991년 예산안(세입 : 2,927억 DM, 세출 : 3,240억 DM, 재정 적자 : 313억 DM)과 중기재정계획(1992~94년간)을 취소하는 한편, 통일에 대비하여 동독예산을 포함하는 통일 독일 전체 예산안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함(통독후 통일의회에 부의)
- o 화폐교환이 실시됨에 따라 그 존속의의를 상실한 여행환기금(Reise-devisenfonds)을 폐지함.
 -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후 동독주민들이 대규모로 서독을 방문하기 시작하자, '89년 12월초 서독정부는 이들 동독여행자들에게 DM화를 교환해 주기 위해 여행환기금을 설치하기로 동독정부와 합의함.
 - 1990.1.1 동 기금의 운용으로 서독측 연방과 지방자치단체가 동독 여행자에게 지불하는 환영비는 철폐
 - 동 기금은 최고 200 DM (14세까지는 100 DM까지)까지 산술평균 1 DM : 3 동독마르크의 교환비율을 적용(100 DM - 어린이는 50 DM - 까지는 1:1, 나머지는 1:5의 비율로 교환)
 - 동 기금의 상한선은 29억 DM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중 15억 DM은 서독 연방과 동독이 7.5억 DM 씩 나누어 부담키로 하고, 나머지는 1990년도 환영비로 책정된 14억 DM을 연방에서 추가로 제공함.
 - 여행환기금으로 유입되는 DM으로 환전된 동독 마르크화는 별도 적립하여 차후 동독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양독정부가 합의함.
 - 1990.7.1 여행환기금이 폐지될 때까지 환전된 금액은 총 21억 7천만

DM에 달했는 바, 이 중 연방이 16억 1천 DM, 동독이 5억 6천만 DM을 부담하였음.

- 이로써 총 50억 3천만 동독마르크가 여행환기금으로 유입되어 이 중 42억 동독마르크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교통, 환경보호, 관광, 도시 건설, 시범마을건설, 우편 및 통신시설개선,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부 및 투자 등) 지원을 위해 동독으로 다시 이전되었고, 나머지는 DM으로 교환하여 1990년 하반기 동독정부예산에 편입시킴.

5-3. 연방은행의 후속조치

- 독일 연방 은행은 통합조약 제10조 제7항에 의거 동베를린에 임시관리소를 개설하는 한편, 동독 국립 은행 건물에 15개소의 지점을 설치함.
 - 기존 동독은행과 협조, 화폐통합 이틀만에 서독 마르크(DM)를 유통시킴.
- 연방은행은 재할인 적격 상업어음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독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도적으로 리파이낸스 방식에 의한 신용제도를 운용함.
 - 1990. 7. 1 부터 연방은행은 상업어음이나 재정증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은행자체어음(“sola” drafts)을 담보로도 일정 한도내의 리파이낸스를 제공함.
 - 동독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리파이낸스 할당금(Refinanzierungskontingente) 총액은 서독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한도 총액(590억 DM)에 비해 경제규모 및 금융기관 수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250억 DM으로 설정
 - 왜냐하면 동독의 금융기관들은 적격 유가 증권의 결핍으로 연방 은행에서 통화 유동화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가증권 매입 사업(Pensionsgeschaef)에 당분간 참여할 처지가 못되었기 때문임.

- 또한 동독주민들의 화폐교환 수요(당시로 예측이 어려웠음)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방은행도 리파이낸스를 통해 일시불 기초자금(Erstaussstattung)을 전액 현금으로 제공해야 했기 때문임.
(화폐교환 실시 후 주민들의 초기 현금인출액은 원래 동독 마르크화 예치액을 하회하는 안정현상을 보였음)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리파이낸스 한도의 설정은 잠정적으로 동독 마르크화 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함.

- 서독 시중은행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단기대출실적 및 어음보유 상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동독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구조가 서독수준에 근접하는대로 서독식 재할인 할당금 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리파이낸스에 대한 결제는 연방은행의 재할인 금리를 적용함.

- 그러나 동독은행이 유가증권을 확보해 나감에 따라, 1991.7.1 부터 리파이낸스 할당금을 180억 DM으로 축소조정하고, 자체 어음 발행에 의한 대출을 할당금의 50% 범위 내로 한정함.

- 이 때 재할인금은 원래대로 최고의 신용을 보장하는 상업어음을 담보로만 제공함.

- o 리파이낸스 신용제도 이외에 서독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롬바르트(Lombard) 금리로 롬바르트 대부를 동독금융기관에도 허용함.

- 연방은행법 제19조 제7항에 의거 연방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 만기 3개월 이내의 유가증권(재할인 적격어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할인가능 재정증권, 연방 및 주정부의 확정금리부 채무증서 또는 등록채 등)을 담보로 Lombard 대출을 제공

※ 롬바르트 대부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통상 재할인율보다 1~2% 포인트 높은 금리(90.9 현재 재할인율은 연 6%, 롬바르트 금리는 연 8%)를 적용

- 롬바르트 대출시에도 당분간 서독에서 인정되는 적격 유가증권 대신 은행자체 어음(Banksolarwechsel)을 임시담보로 인정함. 특히 결산상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배정된 채권인 차액보전 기금 청구권도 담보로 인정해 줌.
- 화폐통합조약에 명시된대로 전독일지역의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조절,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0.8.1 부터 동독금융기관에 대해 지불준비금예치를 의무화함.
 - 초기에 동독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은 금액을 연방은행에 예치시켜 놓음으로써 금융시장에 일시적 자금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금융시장 자체내 조정에 의해 정상화되었음.
-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정책 교란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독정부의 예산정책상의 자율성을 제한함.
 - 동·서독 정부 간에 합의된 동독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차입한도 (1990년 하반기 : 100억 DM, 1991년 : 140억 DM) 내에서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방은행을 그 발행주체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연방은행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관이 발행토록 제한함.
 - 급격한 여건 상의 변화가 있을 시 서독 재무장관의 승인을 거쳐 초과차입이 가능(통합조약 제27조 1항)
 - 동독정부에 대한 대출도 8억 DM 이내의 당좌대월 및 재정증권 매입 형식의 단기대출로 엄격히 제한함.
 - 종래에는 동독정부는 재정적자를 발권은행인 국립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보전해 왔음.

- 90.7. 연방은행은 동·서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 차입 총액('독일 통일 기금' 및 유럽 부흥 계획(ERP) 특별자금 포함)은 1990년에 약 800억 DM, 1991년에 약 1,000억 D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이는 과거 몇년 동안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액수인 바, 동독의 세수 수입이 아직 미진한 상태일뿐만 아니라, 동독내 연금·실업자보험과 구조적 적응 대책 등을 위한 기초 재정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 이러한 재정차입 증가와 서독 경기 호황으로 인한 사회전체 자금수요 증대가 불러올 물가안정 및 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 연방은행 이사회는 1990년 5월말 연방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해 최대한의 지출제한과 예산 긴축 및 재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차입 수요를 제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6. 화폐통합 이후의 문제점

6-1. 동독 산업의 붕괴

- 화폐통합의 즉각적이고 심각한 파급효과는 동독 경제의 전례없는 침체로 1990년 12월경 생산량은 1989년 수준의 46%로 떨어짐.⁷⁾
 - 1990년 상반기 대비 1991년 산업생산량은 1/3 수준으로 떨어지고, GDP는 35% 가량 감소됨.
 -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임금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독 소비자들이 동독산 소비재 및 투자재 보다는 서구제품을 선호했기 때문임.
- 공급 측면에서 동독의 낮은 기술수준과 노후화되고 현대화되지 못한 시설·장비로 인해 동독제품의 품질이 서구제품에 비해 현격히 떨어져 이들과의 경쟁을 이길 수 없었음.
- 또한 1:1 교환비율에 의한 임금의 과대평가와 화폐통합 이후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도 약화됨.
 - 전일제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1990년 3월~7월간 약 23%, 1990년 7월~10월간 약 16%가 상승함.
 - 화폐통합이후 임금이 상승한 요인은 다음과 같음.
 - 1) 가격보조금 철폐 및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에 대한 보상
 - 2) 동·서독 지역간의 임금균형이 정당하다는 동독 노동자들의 생각
 - 3)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
 - 정부가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관대한 실업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7) 특히, 화폐통합 실시후 1 개월만에 구동독 산업생산량은 35 % 나 떨어짐. Akerlof, George A. u. a.: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1991. p. 5.

실직 또는 단축 조업에 처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을 올려 놓아야 실업수당이 높아짐.

4) 임금협상시 서독노조의 동독노조 지원

- 서독노조는 동독지역의 임금인상은 서독지역으로의 이주를 막아, 서독 노동자들의 임금의 인하 압력을 줄일 수 있고, 임금인상에 따르는 높은 실업수당은 이주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동독지역 임금인상을 적극 지원함.

5)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의 요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효과적인 대응 미비

-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동독주민의 서독제품 구입 선호와 전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동구시장의 붕괴 및 동독기업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

- 화폐통합후 동독주민들과 기업들의 서독제품에 대한 수요가 격증함.

- 이는 동독제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품질이 서독수준에 비해 조악했기 때문에 서독제품을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매상점이 동독제품을 거의 내놓지 않았기 때문임.⁸⁾

.. 통합 이전에는 구입이 불가능했거나, 가격이 너무 비쌌던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 1990년 9월 동독주민의 지출의 21%가 이들 제품 구입에 사용됨.

.. 소매상에서의 동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품별로 보면, 커피 및 카카오 4%, 초콜렛 6%, 치즈 12%, 설탕 24%, 세제 29%, 마가린 65% 었음.⁹⁾

.. 1990년 9월에 총 24억 DM 어치의 제품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반출,

8) 구동독 시절에 구입할 수 없었던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서독 텔레비전의 대대적인 상품선전(서독업체들은 '90년 하반기 동안 추가 광고비로 4억 7,500만 DM 투입) 등으로 수요증대. Sinn, Gerlinde/Sinn, Hans-Werner: 앞의 책 p. 81.

9) Nielsen: Süddeutsche Zeitung, 1990.9.25 자 (Akerlof, George A. u.a.: 앞의 책, p. 34.)

1989년 9월 대비 277%가 증가함. 10)

-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비태환성 대체 루블로 이루어지다가 1991.1.1부터 경화로 행해졌기 때문에 동독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
 - 화폐통합으로 동독마르크가 300% 평가절상되어 동독 수출제품의 가격이 3배나 인상된 셈이었음.
- 동독제품에 대한 수요 격감은 동독기업의 완제품 재고를 누적시켰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시일 내에 생산을 절반으로 감축시켰고, 운전 자금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더욱 약화됨.

6-2. 서독의 재정부담 가중

- 화폐·경제·사회통합은 동독이 적당한 시간 내에 서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 및 생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콜정부의 확실한 약속과 책임을 내포함.
 - 따라서 서독은 동독 사회구조의 재조직, 경제의 재건 및 체제전환에 따르는 비용의 대부분을 세금인상이나 재정차입을 통해 부담해야 했음.
 - 원래 콜 정부는 세금인상없이 재정차입만으로도 이러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공언했음. 11)
- 우선, 화폐통합에 따른 동독의 DM 도입과 이로 인해 가속화된 은행제도의

10) 연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반출액은 식품류 6억 5,100만 DM, 투자재 9억 7,200만 DM, 소비재 2억 2,400만 DM에 달함. Akerlof, George A. u. a.: 앞의 책 p. 35.

11) 화폐통합 당일 TV 연설을 통해 콜 수상은 “독일통일로 인해 서독인들이 희생을 치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앞으로 몇년간 거두게 될 추가수익의 일부를 우리 동족인 동독인들에게 - 자력을 위한 도움으로 -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함.

이원화로 연방정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부담을 안게 됨.

- 우선 자산과 부채간에 상이한 화폐교환비율에 따른 일반 시중은행들의 대차대조표상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차액 청구권을 이자와 함께 부담

· 채무자는 동독정부, 결국 연방정부로서 이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차액보전기금을 설치

· 동 차액보전기금은 통독후 채무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에 포함됨. 12)

- 조합은행 등 민영화된 신용기관들이 고객들의 예치금 인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신들의 이자수익을 노려,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조합은행에 투자하기 위해 국립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인출하게 되어, 베를린 국립은행은 차액보전을 위해 국가보장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1991년 5월까지 자본시장으로부터 약 800억 DM을 차입13)

- 베를린 국립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일반신용기관들의 적립금으로 이는 과거 이들 기관들이 국립은행을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해 준 신용대부인 바, 결국 연방정부의 부담으로 귀속됨.

· 일반신용기관들이 독립됨에 따라 국립은행이 부담해야 할 약 1,350억 DM 상당의 기업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은 연이율 9%를 적용할 경우, 연간 최고 120억 DM에 달함.

.. 이 중 신탁청이 소속 기업들의 부채상환의 일환으로 독일신용

12) '93년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연방재정 건실화 법안에 의거 채무청산기금은 '95.1.1 부터 운용되는 구채무 변제기금으로 이전됨.

13) Priewe, Jan/Hickel, Rudolf: Der Preis der Einheit. p. 104. (이 책자 II, 3. p.173 참조)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상환액만 1991년의 경우 약 70억 DM에 이릅니다. 14)

6-3. 실업자 증대 및 이주민 감소

- 화폐통합후 동독 산업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대량의 실업사태를 초래함.
 - 1991년 2월 현재, 노동력의 약 30%가 실업 또는 단축조업 상태에 있었음.
 - 고용창출조치 해당자 및 직업연수 참가자를 포함한 실질실업률(단축조업 근로자 제외)은 1990년 7월 7.2%에서 1991년 봄 25%, 1991년말 약 30%에 도달함. 15)
 -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과 통독후 과다고용된 공공분야의 인력감축으로 실업자는 더욱 늘어남. 1989년까지 약 980만명에 달하던 취업자 수가 1990년말에 887만명으로, 1991년말까지 약 718만명으로 줄어듦.

14) 독일신용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청산해야할 동독기업의 과거부채는 1,150억 DM 정도임. 구동독 기업체가 진 부채와 관련된 일반 신용은행, 국립은행, 신탁청간의 관계는 Priewe, Jan/Hickel, Rudolf: 앞의 책 pp. 101-105 에서 상세히 기술 (이 책자 II. 3, pp.170-174 참조)

15) Sinn, Gerlinde/Sinn, Hans-Werner: 앞의 책 p. 30.

〈표3〉 화폐통합 전후 동독 실업자 현황

시 기	실업자(천명)	실업률(%)	단축조업자(천명)	단축조업률(%)
1990				
4월	64.8	-	-	-
5월	94.8	-	-	-
6월	142.1	1.6	-	-
7월	272.0	3.1	656.3	7.4
8월	361.3	4.1	1,499.9	16.9
9월	444.9	5.0	1,728.7	19.3
10월	536.8	6.1	1,703.8	19.1
11월	589.2	6.7	1,709.9	20.1
12월	642.2	7.3	1,795.4	20.5
1991				
1월	757.2	8.6	1,856.0	21.1
2월	787.0	8.9	1,900.0	21.5

출처 : Monatszahlen, 1990.3. p.12
 연방고용청, Arbeitsmarkt in Zahlen,
 George A. Ackerhof,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p.8.

- 화폐통합이 약속된 이후인 '90년 3월의 이주민은 전년도 11월의 1/3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4월에는 전월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되었음.
- 서독으로의 순 이주자 수(유출-유입)를 연도별 (표 5 참조)로 보면 1989년 38만 3,300명에서 1990년에 35만 9,100명, 1991년에는 16만 9,500명으로 감소하였고, 1992년 상반기에는 4만 2,800명으로 감소함.

- 동·서독간의 임금격차와 더불어 동독의 높은 실업률은 서독으로의 이주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화폐통합과 독일 통일로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의 이주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이주민 수가 감소함.
 - 구동독 주민들은 - 취업자나 실업자 공히 - 서독으로 가서 직장을 구하기 보다는 동독에 남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⁶⁾
 - 또한 화폐통합 직후에는 실업후 1년간 최종 실질임금의 68%(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63%)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구태여 서독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음.

16) 다양한 집단의 동독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취업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참조.
Akerlof, George A. u.a.: 앞의 책 pp. 44-45.

〈표4〉 화폐통합 전후 동·서독간 이주 현황

	동 독 집 계 (1)		서 독 집 계 (2)
	유 출	유 입	유 입
1989. 10	34.308	61	57.024
11	70.868	176	133.429
12	54.200	494	43.221
1990. 1	41.413	593	73.729
2	45.062	151	63.893
3	44.094	71	46.241
4	24.052	136	24.615
5	13.940	265	19.217
6	13.616	437	10.689
7	27.323	353	...
8	24.537	581	...
9	18.150	688	...

(1) 동독에서 유출은 서독으로의 출국을 신고한 동독주민의 수, 유입은 서독으로부터의 입국을 신고한 사람 수로 외국을 경유한 출·입국자는 제외

(2) 유입은 서독에 입국을 신고한 동독으로부터 이주한 사람 수

출처 : (동독집계) Monatszahlen, 1990.12. p.4;
 (서독집계) 연방고용청, Arbeitsmarkt in Zahlen,
 1991.1 : George A. Akerlof, p.45 :
 Harmut Wendt, Die deutschen-deutschen Wanderungen,
 Deutschland Archiv, 1991.4. P.393.

〈표5〉 연도별 동·서독간 이주 현황

단위 : 1,000명

연 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서독으로의 순이주자
1989	5.1	388.4	383.3
1990	36.2	395.3	359.1
1991	80.3	249.7	169.5
1992상반기	50.8	93.6	42.8

출처 : 연방통계청, Zu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aendern, 1993년 7월호, P.56.

6-4.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친 영향

- 식품, 임대료, 공공교통요금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철폐로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많은 공산품과 사치제품 가격의 인하로 1990년 중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는 화폐통합 이전과 거의 변동이 없었음.
 - 다만 1991.1.1 부로 철도요금 보조금 및 난방용 가스·전기 등에 대한 보조금의 부분적 철폐로 1991년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약 7.4%에 도달함.
- 화폐통합 직후 통화량 M3가 약 1,800억 DM - 당시 서독 통화량 M3의 15%정도- 이 증가함.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금이 장기이자보장 자산으로 이동하고, 유동성 자본은 서독제품 구입에 사용됨에 따라 동독통화량이 감소함.
 - 화폐통합 후 2개월 동안 동독주민들의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나 '90년 상반기 평균저축률은 종전보다 높은 수준 (약 13%)이었으며,

'91년에 들어서서 '89년 수준 정도 (약 12.7%)로 유지됨.

- 반면, 서독지역 통화량은 동독으로부터의 수요증대에 따른 경제활동 속도 증가 및 동독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힘입어 계속 증가함.
- o 독일 전체 통화량이 증가하자, 1990년 11월 연방은행은 롬바르트 금리를 8%에서 8.5%로 인상함.
- 1991년 7월, 연방은행은 1991년 통화팽창목표를 3~5%로 낮춤.

7. 평가 및 교훈

7-1. 화폐통합 시기 문제

- 당초 서독에서는 즉각적인 화폐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여 단계적·점진적 통합론이 우세하였음.
 - “선 동독 경제개혁·후 화폐통합”을 주장하는 단계적 통합론자들은 통독 이후에도 소위 충격요법(Big-Bang 또는 Shock-therapie)에 의한 화폐통합이 동독기업의 도산, 실업자 증가, 이로 인한 서독으로부터의 막대한 재정이전 등 경제적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화폐통합에 앞서 경제개혁을 실시해야 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동독주민의 지속적인 서독이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고려는 이러한 경제적 논리를 앞서서 즉각적 화폐·경제통합을 강요하게 되었음.
 - 한편,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결정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고려도 있었음.
 - 서독 DM의 도입은 동독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감을 고취시켜, 이로 인한 적극적인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은 동독경제의 자율화에 편승,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임.
 - 완전태환 가능한 서독 DM을 갖게된 동독기업들은 서구시장에서 양질의 중간재를 종전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화폐통합은 서독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촉진시킬 것임.
 - .. 동독지역에 마르크가 계속 통용된다면, 은행 등 잠재적 자본 공급자는 환율리스크 등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동독은 어려운 외채 부담을 안게 될 것임.

- 서독 DM의 도입은 서독기업들에게 자본이전 및 환율상의 위험 부담을 해소시켜, 이들의 동독투자를 촉진시킬 것임.
 - 화폐통합은 경제통합에 따른 동독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을 촉진시킴.
- 결론적으로 즉각적인 화폐·경제통합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늦춘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화폐통합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동독주민들에게 통일(또는 정치적 통합)이 이미 진행과정에 있음을 확신시켜 서독으로 이주해야 할 경제적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점임.
 - 한편, 이주억제대책으로 일정기간 동독 주민들의 서독입국 금지, 기업 및 주택 등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통한 동독주민들의 개인재산 형성 등이 제시되기도 했음 (이 책 II. 2-2. 참조).
- 독일의 경험을 고려할 때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화폐통합 시기 문제와 관련, 단계적 통합과 조기통합의 2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첫번째 가능성은 북한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체제전환을 통해 자체 경제력을 배양한 후에 점진적으로 남한 경제체제와 통합하는 방법임.
 - 이 가능성은 북한이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독재적 지배체제 유지에 대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의 진정한 화해·협력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모색하고, 남한은 단계적·점진적 경제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이 추진하는 토지 및 기업의 사유화, 시장기구의 도입, 경제안정화 조치,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및 확충, 민간투자 유치

등 북한경제체제의 전환과정을 지원,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을 추진해 나갈 때를 상정한 것임.

이 경우, 독일에서 논의된 여러 가능성을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 북한주민의 북한원화 기피로 통화불안정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임.

.. 동독경제의 몰락이 경쟁력 부재로 인한 개인 이니셔티브 결여, 노동분업화 미비, 거대한 중앙행정주의 등 경제제도상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경제체제 자체가 거의 개혁불가능 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했다는 점에서, 과연 북한경제가 개혁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와 같이 즉각적인 통합에 따른 선진제도(법, 사회, 경제제도 등)의 도입 대신, 우크라이나 등과 같이 새로운 제도를 강구하거나, 점진적인 개혁을 하려 할 경우, 제도발전이 지연되거나 더 악화될 위험도 있음. 자체개혁은 인기(Populism)에 영합하거나, 장기적인 구조변경과정에서 희석(Water down)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또한 위축될 것임.

.. 자본재가 노후화 되고, 회생불가능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등 시장 경제제도의 견지에서는 기존 자본재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사용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동구국가들에 대한 투자의 절반 내지 3/4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지적됨.¹⁷⁾

정치적 측면에서도 당료, 군부 등 보수세력에 의한 개혁반발, 극좌·극우간의 사상적 갈등 등으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17) Dornbusch, Rudiger: Economic Transition in Eastern Germany. i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1992. p. 252.

- .. 정치적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제적인 통합과정은 북한의 기득권층에 의해 방해(Sabotage) 될 수도 있음.
 - .. 따라서 강력한 계획관료층과 여타 기득권 세력을 해체해야 하지만, 그들이 바로 개혁과 체제전환을 주도해야 하는 세력이라는 모순에 봉착함.
 - .. 조기 통합 결정시에 독일정부는 새로운 제도 이식이 늦어질 경우 공산당 잔재세력들이 새로운 세력을 구성하거나 사회 각 부분에서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기도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했음. 18)
- 두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끝내 체제개혁을 거부,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독재정권이 붕괴될 경우(물론 북한의 점진적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도 경제위기가 심화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음), 남한체제에 편입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단행하는 방안임.
- 이 경우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의 허구와 한국사회의 실상을 알게되고, 한국제품(특히 생필품)에 대한 호기심 및 선호, 이에 따른 한국원화 선호, 생활수준 향상 기대 및 욕구가 분출하여, 정치적인 통합에 대한 열망이 증폭될 때 가능함.
 - 조기통합시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도산, 대량실업, 막대한 재정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

7-2. 화폐교환 비율 책정 문제

- 화폐통합 이후 동독 경제가 급속히 붕괴된 원인을 둘러싼 논쟁에서 흔히 임금 및 일부 예금에 대한 1:1 교환에 의한 지나친 동독화폐의 평가절상이

18) 었돈재: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신동아 1993년 10월호, p. 584.

지적되어 있음. 19)

- 1:1 교환을 비난하는 자들의 시나리오는 보다 적절한 화폐교환 비율의 설정을 통해 동독경제의 생산, 소비 및 해외무역을 균형화시켜, 동독 경제를 과거와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 점진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수 있었다는 것임.
 - 만약 5:1로 교환비율을 정했다면, 앞서 언급한 가격과 비용으로부터의 압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서구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가 감소되었을 것이며, 동독제품은 동구국가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임.
- o 그러나 문제는 화폐교환비율의 결정이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인 임금부문에서의 동·서독간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 화폐통합 이전 동독의 월임금은 서독의 1/3 수준이었는데 만일 교환율이 1:5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소득의 격차가 1:15에 달할 것임.
 - 이는 화폐통합으로 단일화된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낮은 동독인의 계속적인 서독이주 내지는 원거리 통근자들의 급증을 초래하여, 서독 지역에서 고용, 성장, 생산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것이고, 동독경제에도 고급인력 유출 등과 같은 악영향을 미쳐, 그 결과 동·서독 양지역에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성이 초래되었을 것임.
- o 결국, 경제적 효율성과 소득 수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두 경제가 일단 통합되면, 균형과 점진적 조정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방법 그 자체가 정치적 결정으로 되고, 정책결정자는 위험 부담이 적은 대안을 택할 것임.

19) 동독 마르크는 실제가치면에서 약 3배 가량, 생산성면에서는 약 2배 가량 상승.
Priewe, Jan/Hickel, Rufolf: 앞의 책 p. 58. (이 책자 II.3 p.121 참조)

- 만약, 정책의 목표가 통합된 두 국가 중 경제력이 약한 쪽의 기업경쟁력을 유지시키는데 있다면, 노동임금은 통합된 국가의 강한 쪽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결과 약한 쪽의 직장은 유지할 수 있으나 노동력, 특히 숙련노동자의 고갈을 감수해야 할 것임.
- 반면에 정책목표가 양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있다면 - 서독의 정책 결정자들은 베를린 장벽 개방과 화폐통합 과정을 촉진시킨 주원인이었던 동독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야 했음 - 경제력이 약한 지역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대부분 파산에 직면하게 됨. 그 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되며 정부는 기업도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실업수당 등)을 부담해야 할 것임.
 - 실제로 독일정부는 실업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경제에 대하여 새로운 전망(예 : 투자보조금 등)과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왔음.
- 따라서 화폐통합이 어떠한 비율로 선택되었던 두 가지 대안 모두 심각한 정책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어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낮은 교환율과 소득균형화 및 이주억제 등을 위한 높은 교환율 간의 선택이 정치적 결정사항으로 귀결되었음.
 - 물론, 노동인력의 이주가 반드시 동·서독간의 임금격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즉, 집세 및 생계비의 차이, 고향과 가족·친구들에 대한 애착과 타지 이주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서독 이주가 억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1991년 2월 버클리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주의 주요한 이유가 임금격차보다는 동독지역에서의 일자리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²⁰⁾

20) Akerlof, George A. u.a.: 앞의 책 p. 3 & pp. 44-51.

- 결론적으로,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보다 바람직한 임금 교환율이 적용되었다면 동독경제가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라는 것은 - 반드시 성공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 분명하나, 1990년도의 정치적 상황은 동독의 생활 조건을 신속히 서독수준으로 개선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음.
 - 임금·봉급 및 연금에 대해 2:1 교환비율을 적용하자는 연방은행의 제안은 사전에 누설되어 동독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힘.
 - 동독의 시위는 1:1 교환율을 요구하는 현수막으로 일색을 이루었으며, 총파업을 하겠다고까지 위협하자, 임금에 대한 교환비율은 긴급한 정치적 현안으로 대두함.
 - 동독주민들은 임금이 2:1로 교환되면 그들의 임금이 형편없이 낮아진다고 생각했음.
- 결국은 1:1 교환비율로 인한 높은 임금에서 시작하든, 그보다 낮은 비율로 시작하여 더많은 임금인상을 해야 하든, 임금상승 압력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임금수준이 같아지기 때문에, 임금교환비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지리적 특성(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즉, 대안이 있었다면 서독의 노동조합모델을 동독에 그대로 도입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임.²¹⁾
 - 서독 및 동독 노조들은 동독의 노동생산성에 상관없이 서독과의 임금 균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설사 2:1 교환비율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동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져서 화폐통합후의 임금조정 속도가 훨씬더 빨라져서 결과는 1:1 교환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있음.

21) Dornbusch, Rudiger: 앞의 책 p. 238.
 Siebert, Horst: Das Wagnis der Einheit. Eine wirtschaftspolitische Therapie,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92. pp. 125-126.

-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합시 1:1 교환을 적용뿐만 아니라, 화폐통합 이후의 임금협상에 의한 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상승, 구동독지역의 산업정책 그리고 COMECON 붕괴 등의 요인도 동독기업의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및 외국과 서독지역으로부터의 투자 위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화폐통합 직후 연방은행은 임금구조 적응과정에서 노동생산성에 준하는 임금인상 및 임금차등제 실시가 동독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취업상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화폐통합후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은 구동독지역의 총파업 위기에 직면한 연방정부가 임금을 1:1 비율로 교환해주기로 결정하는 대신 보류했던 국가보조금 폐지 및 공과금 부담을 인상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관철시킴.
 - 통합후 서독으로의 이주민이 감소하고, 투자가 동독경제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못미친데 반해서 임금은 급격히 상승함.
 - 특히, 동·서독간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독의 임금수준을 급속히 인상시킴으로서, 동독으로의 재정이전이 현대적인 자본재 구축 보다는 소비성으로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구동독 경제의 재건 및 구조 개편을 지연시킴.
 - 제조업 분야의 실업증가는 주로 구동독 공업제품의 전통적 시장이던 소련 및 동구시장이 예상보다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임.
- 임금 등에 대한 1:1 교환을 적용은 서독수준으로의 소득향상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강한 열망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40여년간 실업이란 개념을 모르고 살아온 동독주민들은 높은 임금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파산을 초래, 결국 오늘날과 같은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음.

- 결국, 독일인들은 한반도의 경우에 임금 및 급여에 대해서는 높은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한편, 연금은 보다 낮은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화폐통합후 점차적으로 인상시켜 나가고, 화폐통합후 임금인상의 속도를 생산성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하는 절충적 대안을 제시함.
 - 이 경우 빠른 임금인상 속도는 기업의 도산에 이어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북한주민에게 인식시켜야 함.
 - 물론 정치가들이 임금인상 자체가 통일이후 힘겨운 적응과정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솔직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또한, 임금격차로 인한 고급인력의 한국이주를 막기 위해 임금균형화 이외의 북한 잔류유인대책 (예: 국유재산 염가 매각 등)을 강구하고, 기업의 임금비용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임금보조금의 한시적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임.²²⁾

22) 임금보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Akerlof, George A. u.a.: 앞의 책 pp. 70-101 참조
 임금보조금의 문제점은 Siebert, Horst: 앞의 책 pp. 131-134 참조

화폐통합 관련

주요 논문 및 자료

1. 화폐통합에 관한 연방은행보고서¹⁾

1-1. 서 문

1990년 7월 1일 발효된 독일연방공화국(이하에서는 서독으로 약칭 : 역주)과 독일민주공화국(이하에서는 동독으로 약칭 : 역주) 간의 화폐·경제·사회통합과 더불어 동독은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독 마르크화가 동독의 유일한 법적 지불수단이 되며, 금융 및 통화정책은 연방은행의 관할사항으로 이양되었다.

중앙은행(이는 곧 연방은행을 지칭함)과 일반 시중은행으로의 분리를 통해 동독은행은 2원화 제도를 갖추었으며, 동독의 은행체제는 시장경제원칙에 입각, 조직을 개편하고 국제여신업무를 개시하였다. 동독 신용기관은 서독 신용법의 적용을 받고, 동시에 연방신용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 밖에도 동독은 대부분의 주요 현행 서독 경제법을 그대로 넘겨 받았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기존 동독 경제법을 관련 서독법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응시켜 개정해 나가고 있다. 동독은 현물시장·노동시장·자본시장을 자유화 하였으며, 조세제도 역시 서독법에 맞추어 가고 있는 등 서독을 모델로 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에서 풀려난 동독경제는 그동안 폐쇄해 왔던 대서방 문호를 - 세계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 활짝 열어 놓았다. 이로써 동독 주민들은 희망찬 미래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자유원칙에 입각하여 통일을 유럽평화질서의 일환으로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맥을 같이하여 통합조약 발효란 역사적 산물을 낳게 된 것이다.

현재 동독은, 통합조약이 체결된지 불과 몇개월 만에 89년 11월 9일 장벽 붕괴 때의 정치·경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새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당시 일반 사회 분위기는

1. 동 보고서는 연방은행보고서(Monatsberichte der Deutschen Bundesbank) 1990년 7월호에 실린 "Die Wae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을 전문 번역한 것임.

사회주의체제의 정치·경제 역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가득찼었다. 89년 10월에서 90년 1월까지 4개월 사이에만 30만명을 헤아리는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이주물결이 계속 되었을 경우, 양독이 겪게될 경제·사회적 혼란이 어떠한 것인지는 쉽사리 예측할 수 있었다.

90년 1월에 예상국면의 심각성이 사실화되자, 국가연합방안이나, 단계별 방안²⁾과 같은 “점진적 정책”(Politik des kleinen Schritten)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 이에 콜 수상은 90년 2월 6일 동독정부에 대해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구축에 관한 합의를 제안하였다. 모드로우 정부와 시작한 이 협상이 90년 3월 18일 출범한 민선정부와는 예상보다 더욱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은 동년 5월 18일에 조기 조인될 수 있었다.

독일연방은행은 처음부터 - 전문가 회동에서 뿐만 아니라, 협상위원회와 개별 장관 및 내각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 양 정부간의 회담과 조약협상 과정에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독일연방은행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동·서독 화폐통합의 대목을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³⁾

2. 장벽이 허물어지고 난 뒤 취해진 조치 중의 한 예로 89년 12월 5일 여행자 외한기금 설정에 관한 동독과 서독과의 합의를 들 수 있는 바, 이로써 동독 여행자도 환불조치를 받게 되었다. 부록 1 참조

3 경제 및 화폐통합 이전의 동독과 서독간의 2원화 경제구조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 부록5의 “89년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 결산” 참조

1-2. 교환비율 책정

화폐통합 실시전까지 동독에는 실제 경제여건과 금융관계에 관한 자료라고는 아예 없었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빈약한 상태였다. 공식 환시세가 일정치 않았으며, 자유의 환시장에서의 환율 또한 매우 유동적이었다.⁴⁾ 따라서 화폐 통합의 사활이 걸린 “적정” 교환비율의 책정은 부득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약준비상의 과제는 정치·경제·사회 제분야에 걸친 주요 난제를 서로간에 큰 마찰없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되어졌다.

실례로, 화폐통합에 따른 인플레이 위험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동독 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국고부담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환비율의 책정이라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과제에 대한 첫 대처방안으로 flow(Stromgroesse)와 stock(Bestandsgroesse)의 분리를 들 수 있다. flow - 특히 임금 및 봉급 - 의 교환실시를 목전에 두고서 화폐 통합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해진 동독지역내 명목소득의 기초액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과제는 예상대로 용이치가 않았다. 또한 이제부터 서독 마르크화로 지불되는 임금의 수준은 - 동독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 총경제 생산력에 맞게 책정되어야 했다. 동독경제의 생산성은 -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비교할때 발생하는 기준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 서독수준의 40% 정도로 추정되었다. 구동독 경제체제하의 총임금 평균치가 서독과는 비교할 바가 없었음은 - 가격제도의 차이와 공과금 부담의 편차 등의 이유로 비교가 힘들긴 했지만 - 이러한 생산성 차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

동독의 가격 및 원가구조가 항상 왜곡·조작되어 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화폐 통합 이후에도 한동안 임금격차를 유지하자는 방안을 둘러싸고서 두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첫째로 격심한 가격조작, 특히 주요 소비물품에 대한 국가의 막대한 가격지원을 화폐통합 실시 전에 미리 제거시키자는 주장이 있었다.

이 방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그 파급효과로 무엇보다 식료품 가격의 앙등이 예상되었다. 다시 말해 이는 지불 임금 및 봉급, 연금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왔을 것으로, 그

4. “ 동독 마르크 외환시장 발전상황 ” 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 부록 2 참조

차액의 보전지출(Ostmark - Aus gleichs zahlungen)은 결국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기여금 (Soziaversicherungsabgabe) 인상에 따라 임금보조비라는 추가수요가 증대되었을 것인 바, 이로 인해 상승되게 될 총임금을 1:1로 등가 교환시켜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동독기업체의 경쟁력이 보다 더 약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환비율 책정에 대한 정부의 질의에 대해 연방은행은, 화폐통합 실시 전에 가격구조의 개혁과 이에 따른 소득향상 문제를 조정하고나서 임금 및 봉급 등의 flow를 2:1 비율로 교환시켜 주도록 권고하였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교환비율을 처음부터 동독의 경제생산성에 걸맞게 책정함으로써, 통합후 불가피한 임금 및 봉급의 시장경제적 재조정과 획일적 임금구조의 개편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으리란 구상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양측간의 조약협상은 “5월 1일자 노사임금 협약”에 준하여 flow를 1:1로 교환한다는 안을 채택하였는 바, 그 이유중의 하나는 대규모의 가격개혁은 화폐통합 전에는 실시되어 질 수 없다는 점이었다(연금은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산정과정을 통해 종전과는 달리 현저히 인상되었다. 이때 종전 동독 마르크로 받던 연금액 만큼은 계속 서독 마르크화로 지불되며, 그 액수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동독 국고로부터 사회보조비 명목으로 월 495 DM이 추가 지불된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국가의 가격지원을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차액의 보전지출을 국고에서 넘겨받자는 동독측의 방안은 채택치 않기로 하였으며, 물가 상승과 공과금 인상에 따른 일반 임금보조비 지급 역시 동독기업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동독내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조약 당사자들은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연방은행이 제시한 교환방침과 크게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교환율이 1:1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계속적인 임금·봉급 상승을 내세웠다. 주로 이들은 일상용품 가격지원 중단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해 차액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때 이들은 집세 및 일련의 공공 수급업무 수수료와 비매품 가격이 서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관계로 동독내에서 DM의 구매력은 서독에서 보다는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독산 소비재 가격 폭락과 서독제 물품의 구입가능은 동독 소비자의 실제 구매력 상승을 야기하였다.

Stock의 교환, 즉 동독의 금융 및 용자제도에 따른 결산상의 채권·채무를 교환하는 문제를 두고 다양한 안이 제기되었다. 그중의 하나로 동독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은행예치금의 1:1 교환 제안은 동독 예금자들에게 막대한 구매력 증대를 의미하였으며, 실행시 걸잡을 수 없는 구매소동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제안은 은행 예치금이 원래 은행 대차대조표상 대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는데, 동독에서는 기업과 주택 산업부문의 은행채무가 대변란의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그 까닭으로 들 수 있다 (부록 4의 대차대조표 참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독 회사들의 경쟁력을 이자부담 증대로 보다 더 약화시키지 않으려면 - 동독 계획 경제의 결과인 - 이들 부채를 빠른 시일내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였다. 기업부채의 삭감과 개인 은행예치금의 1:1 교환이란 “불균형” 조치를 충당키 위해 신용기관이 국가에 대해 요구했을 차액청구액 (Ausgleichsforderung)은 -해당 이자를 포함하여 - 1조 DM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국가조약은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모든 stock의 교환비율은 원칙적으로 2:1로 하되, 저축예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여건을 배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화폐 교환 자격이 있는 동독시민들은 연령에 따라 일인당 2천, 4천 내지는 6천 동독 마르크까지 1:1의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주택사업, 국가 및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권면 액수의 절반을 삭감해 주기로 하였다. 개인명으로 이전된 업체가 조약규정에 따른 DM 개시 대차대조표 마감후에 어느정도의 “결산보조(Bilanzhilfe)” 를 받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동독 금융 및 용자기관의 결산상 전체 채권·채무에 대한 태환율은 평균 약 1.8:1로 예상된다. 이는 연방은행이 국가조약 협상중 제시하였던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 5)

이로써 stock의 교환비율은 종전 동독에서 DM과의 교환시 적용하였던 환율보다는 유리하게 책정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차원의 대서독 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1 DM이 4.40 동독 마르크로 교환되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민간차원에 대한 공식환율은 1:3으로 적용되었으며, 5월초부터는 1:2로 수정되었다. 이와는 달리 저축예금과 현금의 교환비율을 예외적으로 높이 책정할 수 있었음은 동독에서는 다른 중·동구라파 국가들에

5. 화폐교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독일연방은행 월간보고 90년 6월호 42쪽 및 본 보고서 부록 4 참조

비해 인플레이션 “화폐 공급 초과량”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태환이 가능한 DM을 동독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위와 동일한 이유에서이다.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화의 서독 DM으로의 교환대비 가상 대차대조표*)

근거자료 : 1990년 5월 31일자 작성 동독 금융계 통합 대차대조표

자 산	십억 동독마르크	십억 DM	부 채	십억 동독마르크	십억 DM
1. 국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부 합계	397.4	180.7	1. 국내 비금융기관의 예치금 합계	249.9	156.6
이 중 :			이 중 :		
- 기 업	231.7	115.8	- 기 업	57.0	27.8
- 주택부문	102.6	51.3	- 민간인	182.1	123.4
2. 대외 채권	45.0	36.3	2. 대외 부채	152.5	55.6
			이 중 :		
			- 대외부채 청산 준비금(1)	96.4	—
3. 자본 출자	1.1	1.1	3. 유통 현금 (은행잔고 제외)	13.6	6.8
			4. 누적수익 (accumulated profits)/ 준비금(reserve funds)/ 보증금(guarantee fund)	23.4	23.4
4. 기타 자산	3.1	1.5	5. 기타 부채	7.2	3.6
합 계	446.6	219.6		446.6	246.0
자산 조정항목	—	26.4	부채 조정항목	—	—
총 계	446.6	246.0		446.6	246.0

주) *) 상기 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4 참조.

(1) 이는 원래 국가에 대한 은행의 부채로서, 부채란 1번에도 해당 가능함. 2번의 대외부채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독 마르크로 낮게 책정된 대외부채의 "가치조정" 이 불가피했기 때문임.

연방은행

1-3. 금융정책의 개편과업

1-3-1. 동독은행의 이원화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 이후로 연방은행이 “연방은행법” 제12조에 따라 통화안정을 목표로 전체독일의 화폐유통과 여신업무를 규제하는 바, 이때 본 기관은 “조약 체결 양 정부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보유수단을 동원하며, 그 과업을 이행한다” (통합조약 10조 3항). 통합조약이 명시하는 화폐 및 신용창조과정에 대한 금융정책의 확대적용 과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안정정책이 사전에 수립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방은행의 고유업무인 금리 및 유동성 정책이, 이 지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첫번째 선결조치로 자율적이며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시중은행제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과거 동독의 금융 기관은 중앙계획경제의 지시에 따른 자금배정, 대출규제, 청산업무를 통괄 담당하는 전문기관 중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 예치금은 - 이는 주로 저축예금(Sparguthaben)과 대체예금(Spargiroguthaben)으로 구성되는데 - 저축은행(Sparkasse)이나 조합금고(Genossenschaftskasse) (16쪽 도표 참조)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다시 동독의 국립은행으로 납입되어야 했다(부록 3 비교). 반면 국내업체와의 거래는 주로 국립은행에서 담당하였다. 올 4월초에 있었던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bank : DKB)의 설립과 더불어 이 사업분야는 DKB로 이관되었는 바, 이때 독일신용은행은 국립은행으로부터 광범위한 리파이낸스 신용대부(Refinanzierungskredit)를 이양받았다.

이로써 국립은행은 통화단일화 이후부터는 거의 “금융시장은행”(Geldmarktbank)의 역할만 하게되었다 : 국립은행은 수신업무를 주로 하고, 자체 여신업무는 보지 않는 저축은행 및 조합금고와, 민간수신업무는 보지 않음으로 해서, 국립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을 차입하여 여신업무를 보는 독일신용은행 간에 중개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은행이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의 금융체제 내에서도 효율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동독의 원시적 금융체제가 경쟁원칙에 입각한 금융조직으로

과감히 재편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이미 진행중에 있는 바, 동독에 지점을 두고 있는 서독 신용기관과 이들 단체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의 금융, 신용, 자본시장은 서독 및 다른 선진국의 그 상황과는 아직 비교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1-3-2. 동독에서의 리파이낸스 정책(Refinanzierungspolitik)

연방은행은 계획경제의 유산인 동독의 구식 신용제도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실제 운용이 가능한 리파이낸스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화폐통합 과정에서 동독의 신용기관들은 연방은행 전담 재할인 무역어음(bundesbankfaehige Handelswechsel)이나, 자금유동화 목적 유가증권 매입사업(Pensionsgeschaef) 및 Lombard-대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은행은 이들에게 90년 7월 1일부터 리파이낸스 할당금 (Refinanzierungskontingente)을 제공하였는 바, 이는 종래의 재할인대부 (Rediskontkredit)와는 달리 잠정적으로 해당 무역어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은행 약속어음에 의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통합조약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연방은행법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이 리파이낸스 대부는 연방은행의 할인률(Diskontsatz)로 청산된다. 배정 리파이낸스 할당금 외에도 동독 신용기관은 서독의 신용기관에 적용되는 Lombard 금리로 Lombard-대부를 받을 수도 있다. 동독 은행들은 이에 대한 임시담보로써 은행약속어음(Bank-Solarwechsel)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독일 연방은행은 동독 차액 보전기금에 대한 은행들의 채권을 - 이들이 저당물으로써 충분한 체현성을 띠게 될 경우에 한해 - Lombard-대부에 대한 담보로 인정해 줄 수 있다.⁶⁾

배정 리파이낸스 할당금 총액은 2백 50억 DM으로써, 이는 서독은행의 재할인 할당

6. 이는 - 화폐통합의 일환으로 - 결산상의 차액 보전용으로 은행들에 배정된 채권들로서, 국가가 이의 지불을 보장하며, 금융시장 사정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차액 보전금의 구성요소와 (이의 동독은행제도에 대한) 분배에 관해서는 부록 4 참조

금 5백 9십억 DM과 비교했을때 높게 설정된 것이다. 그 배경으로 동독의 신용기관들은 관련 유가증권 재고의 결핍으로 연방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금유동화목적 유가증권 재매입사업에 참여할 처지가 못된다는 사실이다(서독에서의 중앙은행 자금조달은 주로 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리파이낸스 할당금을 감축시킴과 동시에 이를 다시 “정상적인” 재할인 할당금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때 이 재할인금은 원래대로 최고의 신용을 보장하는 무역어음을 담보로만 제공될 수 있다.

리파이낸스 할당금 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8월에 처음으로 있었던 최저지불준비금 마련 외에도 동독경제와 주민들에 대한 “일시불 기초자금(Erstausstattung)이 전액 현금으로 동독의 신용기관에 조달되었으며, 이들은 이 자금을 대해 연방은행으로부터 리파이낸스 결제를 받았어야 했다는 점이다. 국가조약에 명시된 화폐 교환방안에 따르면, 동독마르크는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서독 DM으로 교환될 수 있다. 동독화폐의 서독화폐로의 직접 현금교환은 불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교환비율 이유 한가지 때문이라도 허락될 수 없었다.

현금으로 지불되는 “일시불 기초자금”을 위해 동독 신용기관들이 어느정도의 리파이낸스 할당금을 필요로 하는지의 문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동독주민들이 얼마만큼의 현금을 필요로 하는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차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화폐교환 실시후 주민들의 초기 현금인출액은 원래 동독 마르크화 예치액을 하회하는 안정현상을 보였다. 물론 리파이낸스성 현금통화량은 (은행의 현금 잔고 포함) 7월 초반에 들어서서는 예상대로 증가하였다. 90년 7월 13일 현재 이 액수는 150억 DM이 조금 못된다. 동시에 동독 신용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연방은행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이들에 적용되는 리파이낸스 할당금의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개별신용기관에 대한 리파이낸스 할당금 배정시, 연방은행은 동독 은행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하였다.(부록3 참조) 이때 서독에서 적용하던 기준(예를 들어 은행자기자산, 각 은행별 단기 대부사업의 필요성 및 어음잔고 등)은 동독기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수정·적용하였는데, 만약 전체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용시켰을 경우 일방적인 결과를 자아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리파이낸스 할당액을 각 기관의 결산총액이 제시된 다음 일괄적으로 책정하였다. 이 규정 역시 임시조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 신용기관의 결산구조가 서독의 그것과 유사해지는데로, 연방은행은 동독에도 위에

서 언급한 서독식 할당금 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중앙은행과 일반시중은행으로의 이원화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동독의 신용기관을 조약발효시부터 연방은행 관할 “유동성 규제” (Liquiditätsregel)와 “리파이넌스 조건” (Refinanzierungskondition)의 귀속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연방은행의 조직문제는 특별과도규정을 제정하여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은행은 통합조약에 따라 베를린에 독일연방은행이사회 산하로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내 15개의 지점망을 거느리는 “임시 관리국”을 신설하였는 바, 이들은 동독의 금융기관들 및 독일민주공화국 그리고 그 공공행정 부서와의 거래를 관할한다.

1-3-3. 단일 통화권역내 금융정책

통화정책 집행에 있어서, DM 통화권역의 확대는 기존 통화관리 과정에 커다란 변화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온다.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금융통계에서 수치가 단절된 점이다.⁷⁾

이 밖에 통화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화량과 전체경제 지출액 - 초반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함 - 간의 연관성 문제 역시 재조명되어야 하는 바, 이는 통화관리상의 목표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화관리를 연방은행 화폐정책의 중간목표로 간주하여 이미 15년 이상 잘 유지되어온 통화관리정책 자체가 통화권역 확대로 인해 변경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서독과 동독간의 경제적 균형(GNP에 따른 비율은 약 10:1)을 비교해 보았을대, 동독을 DM 통화권역에 포함시키더라도 기존의 통화체계가 - 단기간 내에는 안되겠지만 -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 5월 30일자 동독 금융체제의 임시 통합 대차대조표 - 국립은행의 최근 자료 -

7. 동독 신용기관은 화폐통합과 더불어 서독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방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독은행들의 초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방은행은 일단 중요한 통계에 대한 보고서 제출안을 요구한다. 동독 신용기관은 처음부터 월간 결산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동독내에서의 신용대부 및 통화량 팽창의 추세와 변수에 대해 신빙성 있는 평가를 작성하는 일이 상당기간 어려운데, 이는 자유경제제도 및 신용제도에 의해 새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금융시장이 일단 적응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90년 7월까지에 대해 이용할만한 신빙성 있는 사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를 근거로 했을대, 화폐교환시 총통화량 M3은 약 1,600억 DM에 약간 못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 6월말/7월초의 교환액 추계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화교환 당시에는 모든 비은행 예치금도 - 형식상 - 현금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준화폐로) 간주되었는 바, 이는 금년 7월말까지만해도 동독 저축인과 예금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금융투자형태라고는 - 생명보험을제외하고는 - 수시 인출이 가능한 은행예치금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통계상 화폐잔고로 간주되는 지불수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히 대폭 줄어들었다.

저금리 저축예금 분액은 총통화량 M3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투자로 재입금 되었다. 화폐교환 이후 서독 총통화고에 포함될 동독의 총통화량 M3는 아마 얼마가지 않아 1,200 DM으로 증가할 것으로서, 금년 7월 1일자 통계에 따른 통화량 증가폭만으로 그치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통화량은 동독의 참여로 인해 전체독일의 총생산성이 증가한 것 만큼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수치의 정확한 추정은, 앞으로 기업의 도산사태가 어느정도나 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통계 및 분석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행은 화폐통합에 따른 금융정책상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독내의 통화량 추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독과의 화폐통합 이후로 연방은행은 새로운 금융정책상의 어려움에 봉착 하였던 바, 금융시장에 대한 연방은행의 영향력 행사 문제가 그것이다. 동독 경제와 동독국가 가 필요로 하는 신용대부 수요는 비교적 많은 편이라, 이에 대한 일반은행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성 및 안정성의 척도가 동독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동독기업체에 대한 청산대부를 위해 신탁청과 국가가 담당하는 신용보증은 따라서 일시적인 금융핍박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보조방안으로 그쳐야지, 항구적 장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로써 공고한 시장질서가 흔들림과 동시에 금리의 자동조정 기능이 상실되거나, 약해 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보유 유동성에 대한 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초반에는 충분히 보였던 동독 신용기관의 유동성 자금은 8월초부터 최저지불 준비금 확보 의무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동독의 신용기관들이 연방은행에 너무 많은 금액을 예치시켜 놓음으로 해서 한때 금융시장에 일시적 자금 부족현상이 초래되었으나, 이는 금융시장 자체내 조

정에 의해 해결되었다. 불가피할 경우 연방은행은 동등 신용기관의 회계구조가 제기능을 할때까지 단기적이거나 금융시장에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치 않을 수 없다.

1-3-4. 확대 통화권역 내에서의 금융정책 및 공공재정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밀접한 관계는 이제 서독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이에 통합조약은 동독정부가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실시, 연방은행의 금융정책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이전 동독에서는 정부부채를 발권은행인 국립은행으로부터 직접 신용대출을 받아 탕감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화폐통합의 실시와 더불어 더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독일 연방은행은(연방은행법 제20조 1항 1절에 따라) 동독에 대해 최고 8억 DM까지의 현금 선급대부를 보장하며, 본 기관은 서독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동독정부 및 그 공공 행정부서와도 지로 예치금 수령, 지불위탁업무 수행 등의 금융업무를 펼쳐나갈 수 있다. 동시에 동독의 공공기관은 연방은행법 제17조에 의거, 연방은행에 의무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예치시켜야 하며, 국체의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는 독일연방은행을 그 발행주체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은행과 협의를 거쳐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동독 행정기관의 재정차입한도를 '90년 하반기에는 100억 DM, '91년에는 140억 DM으로 제한하고 있는 통합조약상의 명시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초과신용차입은 급격한 여건상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연방재무장관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다. 이같이 예산정책상의 자율성을 제한시키는 이유로, 동독 국가법인단체의 신용대부 수요를 서독의 자본시장에서 주로 충당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자에 따른 추가 수요는 서독에까지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들 수 있다.

연방을 포함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순신용차입 총액(“독일 통일” 기금 및 유럽부흥계획(ERP) 특별자금 포함)은 현재 정보에 의하면, 90년에 약 800억 DM, 91년에는 약 1,000억 D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91년의 순신용차입 총액은 동·서독 통합 명목 국민총생산(das gemeinsame nominale sozialprodukt/the common nominal national product)의 3.5%에 해당된다. 순신용차입 총액은 그전 몇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액수인데, 이는 동독의 세수입원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일 뿐더러 동독내

연금 및 실업자보험 그리고 구조적응대책 등을 위한 기초재정공급의 불가피성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서독의 경기호황으로 사회전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에서까지 재정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이는 물가안정 및 금리에 부정적인 작용을 함은 자명하다. 이에 중앙은행이사회는 금년 5월말 연방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해 최대한의 지출제한과 예산긴축 및 재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 신용차입 수요의 제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독에 대한 광범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신용대부를 연방정부의 신설 특별기금으로 이전시키고,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하는 이행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시킬 수 있는) “독일통일” 기금이라는 재정지원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예산긴축의 필요성이 제거됐다는 잘못된 해석을 내려서는 안된다. 예산규모상 동독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이 비교적 적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경제안정을 위해선 연방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지출의 엄격한 통제와 국가의 재정차입 제한을 주장하는 이유는 동독의 재정지원을 위해 공여되는 신용대부가 현재로서는 거의 소비성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신용차입을 보통 투자지출비 한도액 내에서 허용토록하는 예산 법령(연방에 대해서는 기본법 115조 참조)의 기본원칙을 “독일통일” 기금 적자와 동독정부 예산에 적용시키기에는 당분간은 불가능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은 앞으로 있을 통일독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가능한한 국가의 회계수입으로 충당하여 신용차입에 의한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융정책의 성공을 돕는 방안이다.

“독일통일” 기금							
단위 : 10억 DM							
항 목	1990	1991	1992	1993	1994	90~94년 합 계	
동독지원 지출금	22	35	28	20	10	115	
재원출처 :							
- 기금의 재정차입	20	31	24	15	5	95	
- 연방정부로부터 배당금	2	4	4	5	5	20	
부채 상환 비용		2.0	5.1	7.5	9.0	(1)23.6	
부담자							
- 연방정부		1.0	2.6	3.8	4.5	11.8	
- 주정부		0.6	1.5	2.3	2.7	7.1	
- 지방자치단체		0.4	1.0	1.5	1.8	4.7	

(1) 나머지 부채상환은 금리추세에 맞춰 94년후 15~25년간에 걸쳐 이행됨.

1-3-5. 동독경제의 적응

전체독일에 대한 연방은행의 통화정책은, 동독이 서방 시장경제체제에 빨리 적응하면 할 수록 보다 더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지적할 점은, 유통 부문에서의 독점구조 탈피와 가격형성의 자율화를 통해 건설한 경쟁력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격구조는 수요공급의 시장원칙에 따라야 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필수품에 대한 가격 보조금의 폐지, 생산품 관련 공과금, 특히 내구 소비재에 대한 공과금의 폐지(집세, 공공교통요금, 급수시설 등은 당분간 가격이 동결되어 있음) 등은 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 밖의 조치로서 서독을 비롯한 서구라파 시장에 대한 동독시장의 문호개방을 들

수 있다. DM의 도입과 더불어 동독주민들에 대한 물품 수급 상황은 서방제품들의 진출로 인해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개방과 더불어 동독경제의 효율성 문제가 작금 부각되고 있는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임금수준은 동독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이에 따른 취업상황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앞으로 동독이 임금구조 적응과정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 간의 상호관계를 화폐교환을 결정시 목표로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다. 동시에 현재상황과는 다른 뚜렷한 임금 차등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바, 이는 특히 생산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 대로 동독 노사임금 협약으로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

서독의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에 도입함으로써 1:1로 교환되는 총소득증 실질소득액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나, 대신 소비자 가격은 공산품 관련 공과금 폐지로 인해 인하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산품 가격 인하(7월 1일 이전부터 이미 시행)에 의해 물가인상을 보전해온 정책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생산성에 준하지 않은 임금인상은 대내외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다. 과대 임금상승의 결과는 임시취업보장책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취업이전 교육과 기능 향상을 위해 국가와 기업측에서 지원하는 단축조업 수당 따위는 근로자를 위한 항구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부록 1 : 동독 여행환기금 (Reisedevisenfonds)

동독주민들이 대거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게된 것은 1989년 11월 동·서독간의 장벽이 개방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졌다. 이들의 여행비는 대부분 동독에서 1년에 한번씩 교환받는 15 DM과 서독측 연방과 지방단체가 지불하는 “환영비” (Begrüßungsgeld)가 고작이었다. 일년을 기준으로하여 첫번째 방문일 경우, 연방정부는 이들에게 일인당 100 DM을 지불하였으며, 지방단체도 보조지원을 하였다. 연방정부는 89년 12월초 동독주민들의 서독방문을 돕기 위해 여행환 기금을 서독에 설치하기로 동독정부와 합의하였다.

90년 1월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이 장치로 말미암아 “환영비”는 철폐되었다. 동시에 동독은 '89년 성탄절부터 서독여행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최소환전의무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90년 1월 2일부터는 서독인에 대해 종전의 1:1 교환비율 대신 1 DM 대 3 동독 마르크란 비율을 적용하였다.

여행환기금은 29억 DM을 넘어설 수 없도록 책정되었는 바, 그중 15억 DM은 연방과 동독이 나누어 부담키로 하였으며, 90년도 환영비로 예정된 14억 DM을 연방에서 추가로 지급하였다. 여행환기금을 근거로하여 동독주민들은 최고 200 DM(14세까지는 100 DM)까지를 동·서독 신용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었는 바, 이때 100 DM(어린이 50 DM)까지는 1 DM : 1 동독마르크로, 나머지는 1:5의 비율로 교환되었다. 이를테면 이들 차등교환비율의 산술평균은 1:3 정도가 된다. 여행환기금으로 유입되는 환전 동독마르크는 차후 동독내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에 지출될 수 있도록 양 정부는 합의를 보았다. 90년 7월 1일 통화교환이 실시됨에 따라 여행환기금은 폐지되었다. 통화교환 전까지 기금을 근거로 환전된 금액은 총 21억 7천만 DM에 달하였는 바, 이 중 연방이 16억 1천 DM, 동독이 5억 6천만 DM을 부담하였다.

여행비 환전은 주로 90년 1월과 2월 두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1:5 교환비율이 동독인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조정될 조짐이 보이자 101 DM(어린이의 경우 51 DM)부터 적용되던 1:5 교환비율은 더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총 50억 3천만 동독마르크가 여행환기금으로 유입되었다. 이 중 42억 동독 마르크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교통, 환경보호, 관광, 도시건설 및 모범마을 건설, 우편 및 체신업무,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부 및 투자) 지원을 위해 동독으로 다시 이전되었다. 이 액수는 화폐·경제·사회통합이 실시되기 전에 완전히 지출되었다. 나머지는 DM으로 교환하여 90년 후반기 동독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부록 2 : 동독의 외환시장

'90년 6월 30일까지 동독내에서 유통되던 동독마르크는 내국통화로서, 외국으로의 대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외화로 교환될 수도 없었다. 동독정부는 - 특히 - 여행자에 대해 동독마르크의 반입·반출을 금하였다. 그러나 동독 밖에서는, 특히 서베를린과 서독에서는 일찍부터 대동독마르크 환전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창구에서 이루어졌다. 국경 개방 이후에 생긴 “노천시장”(Strassenmarkt)에서 특히 동독마르크 거래가 성행하였는데, 액수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었다.

동독마르크 환전시장은 항상 정치상황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장은 국경개방 전까지는 양독 여행자들의 지참현금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 물론 이는 동독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87~89년) 동독마르크의 평균 매입시세는 100 동독마르크 대 12.50 DM 정도에 달하였다.

대부분의 동독인들은 환전 DM을 서방 또는 동독내 특별 허가업소와 암시장에서 서구제품을 구매하는데 거의 모두 지출하였다. 동독마르크의 수요자는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규정 강제환전금액(89년 당시 취업자의 경우 1인당 1일 25 DM, 퇴직자의 경우 1인당 1일 15 DM) 이상의 동독마르크를 유리한 비율로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동독법에 의하면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였다. 87년에서 '89년까지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된 마르크화는 15 DM 대 100 동독마르크의 비율로 매출되었다. 반면 동독정부는 최소환전 의무액에 대해서만큼은 1:1의 교환비율을 적용토록 요구한 바 있다.

'89년 11월초의 장벽개방과 더불어 동독마르크 거래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동독내 예금구좌를 청산하고서 서독으로 이주해가는 사람들과 서방제품을 구매하려는 동독주민들로 인해 동독마르크의 공급량이 급증하게 되자, 89년 11월 중순까지 동독마르크화는 100 동독마르크 대 7 DM이란 덤핑시세를 보이기도 했다. 90년 1월부터 불기 시작한 수요증대 현상은 동독마르크 시세를 한동안이나마 대폭 올려놓았다. 이때 동독마르크의 매입자로는 특정 동독 물품이나 가격지원을 받는 물품들을 유리하게 구입하려는 서독인

들이 대부분 이었다. 화폐통합설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투기성 매입이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차후 마련된 화폐통합 오용방지 규정은 이러한 “투기성” 동독마크 구매를 저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동독을 방문한 서독인에게 1월부터 1:3의 비율로 동독 마르크의 무제한 매입을 허용함에 따라, 비공식 환전시장에도 암암리에 하한선이 형성되게 되었다. 90년 5월 2일 화폐통합에 따른 교환방식이 공포되자 환율은 1:3으로 폭등하였다. 금융기관 측에서는 판매가와 매입가 간의 15% 편차에도 불구하고 동독마크를 화폐통합 실시전까지 제대로 처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5월부터는 환전거래를 중단하였다. 동독마크 환전시장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으며, 환전시세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환전시장에서의 환율이 화폐통합시 교환비율 책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진정한 자유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부속시장(Nebenmarkt)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전시장이라 하면 대규모 외환시장의 일부분에 속하고, 이 곳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유통 및 고정자산의 거래(Leistungs- u. Kapitaltransaktionen)와 가격 및 금리추세 등의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동독마크는 외환시장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동독의 국제교역은 주로 상호간의 협정 및 청산과정을 통해 - 다른 서방국들과도 마찬가지로 - 이루어져 왔는데, 이때 서독과의 물물 교역은 청산단위(VE)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동독내에서의 조치로 현물 및 금융 자유시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율시세를 책정할 수 있는 기초토대란 존재할 수 없었다. 동독법이 허용치 않는 현금 반입, 이로 인한 위험부담 그리고 동독의 물품 및 용역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동독마크화의 외환가치는 실제 내수 구매력에 비해 장기간 과소평가 되어왔다.

환전시장에서의 동독마르크 시세 및 거래액				
	외환거래소 시세 100 동독마르크에 대한 DM(월평균)			거래합계(2) 단위 : 백만 DM
	매 입 가	판 매 가	평 균(1)	
1985. 12월	18.00	21.00	19.50	-
1986. 12월	14.80	17.60	16.20	-
1987. 12월	12.00	14.60	13.30	-
1988. 12월	11.60	14.10	12.80	-
1989. 6월	10.50	13.00	11.70	-
10월	9.60	12.10	10.90	-
11월	10.50	13.60	12.00	33
12월	12.30	15.70	14.00	26
1990. 1월	12.80	15.70	14.20	31
2월	15.90	18.90	17.40	70
3월	18.00	21.80	19.90	80
4월	23.00	27.10	25.00	82
5월	25.90	30.10	28.00	78
6월	32.60	37.40	35.00	-

(1). 매입 및 매도 시세의 평균

(2). 서베를린 및 서독내 일부 신용기관과 주요 외환거래소의 매입 및 매도 합계

출처 : 베를린 외환거래소

부록 3 : 동독의 은행제도

동독의 은행제도는 현재까지도 이전의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42 P. 도표 참조). 1990년 3월말까지 동독의 금융체제는 국립은행과 그 지점 그리고 소수의 특수금융기관(독일 무역은행, 독일 상업은행, 식품·농업 은행(현재 베를린 조합은행))으로 구성되어 왔는데, 이들 역시 중앙의 통제를 받았다. 이외에 저축은행, 농민·상업조합금고를 포함하고 있는 조합 금고와 국민은행 등이 있는데,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국립은행에 귀속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립은행의 행정규제를 받아왔다.

국가통제경제의 재정문제는 오래전부터 동독 국립은행에서 담당하였다. 금년 4월초 신설된 독일신용은행이 이 분야의 사업을 국립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 즉 동독기업 및 주택사업에 대한 신용대부와 기업 및 보험업체의 예치금은 국립은행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분리되었다. 따라서 독일신용은행의 자산란은 종전의 산업-Kombinat와 국영업체 그리고 국영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청구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부채란에는 비은행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소규모 예치금과 국립은행에 대한 은행간 부채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국립은행에 의한 리파이낸스는 필연적이었는데, 이는 독일신용 은행이 인수받은 신용대부가 이양된 비은행 예치금액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 조합금과와 마찬가지로 - 주로 주민들의 저축예금을 수취하여 이를 다시 국립은행으로 이전시키는 업무를 도맡아왔다. 저축은행 분야에서도 자율적인 업무활동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이 개인에 대해 신용대부를 제공한 것은 금융사업상의 수익성이나 대부희망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처사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수단을 단순히 집행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게 소규모의 신용대부가 제공되었으며, 특정인물에 대해서는 사적 건축융자금이 지불될 수도 있었다.

두번째로 중요한 국립은행의 “자금출처”는 특수금융기관의 의무예치에 주어져 있다. 이들 기관은 서방과 CMEA-회원국들 간의 재정문제 청산을 주로 담당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독일무역은행, 독일상업은행 그리고 무역업체들을 들 수 있다.

외국과의 지불 및 청산업무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기관을 통해 소요외화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밖의 다른 특수기관으로 식품 및 농업은행을 들 수 있다. 이 은행은 농업생산조합 및 식품산업의 재정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농민 상업조합의 “중앙기관” 역할을 맡았었다.

이들 역시 결산상의 잔고를 국립은행에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동독 은행 구조는 계획경제 시절의 상황과는 달리 서방은행의 제도를 본따가고 있다. 이는 이미 실현된 2원화 제도에서 잘 드러나는 바, 이때 독일 연방은행은 발권은행인 동시에 은행의 은행이자 국가은행(Hausbank des Staates) 이기도 하였던 동독 국립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이양받았으며, 독일신용은행과 현 베를린 국립은행(예전의 동독 국립은행) 간의 업무는 분할되었다. 이 밖에도 독일 신용은행과 서부 독일의 대은행들에 의해 공동으로 창설된 Joint Ventures의 활동사항이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첫째 서독정부의 인가를 받아 90년 7월 1일부터 동독지역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사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와, 둘째 계획경제의 유산인 동독 금융기관들이 서방은행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치루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부록 4 : 동독 은행 대차대조표상의 교환과 결산상의 차액보전 항목

은행 대차대조표상의 교환

동독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는 90년 7월 1일부터 통합조약에 명시된 화폐교환 방식에 따라 조정되었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화폐교환이 통합 대차대조표에 가져올 양적 지수와 자산란의 차액보상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기 위해, 다음에서는 90년 5월 31일자 동독 신용기관의 통합 대차대조표를 보충 근거자료로 하여 결산상의 가상 교환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이때 통합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자산란의 첫번째 단에는 동독마르크가 십억 단위로 표기되어 있다. 두번째 단에는 적용교환비율 내지는 주요 교환규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따른 산술상의 평균 교환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단에는 교환금액을 십억 DM 단위로 표기하였다.

동독마르크화로 지칭되는 부채와 채권(자산란의 제1번과 4번 내지는 부채란의 제1, 3, 5번)은 모두 교환되었다. 제2번에 표기된 대외채권 및 대외부채는 주로 외화관계(Fremdwahrungsbeziehungen/foreign currency operations)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이는 교환 대신 적정선에서 DM으로 평가토록만 하였다. 이들이 이미 DM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수정을 하지 않고 DM 대차대조표로 이전 기입된다. 제3통화로 표기되어 있는 부채와 채권은 각 시세에 맞추어 DM으로 환산되게 된다.

이 밖에도 국내유통 동독마르크와 외환시장 유통마르크(Valutamarkkreislauf) 간의 가치 차이로 인한 “가치조정”(Wertberichtigung/value adjustments)은 결산기술상 가능한 차감계정을 하였다. 이 중 특히 부채란의 2번 C 및 자산란 1번 명기 국가에 대한 신용대부 항목이 대외부채에 대한 가치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DM으로 환전되었을 경우, 소위 대외부채 청산 준비금¹⁾(Richtungskoeffizient/the

1. 대외부채 준비금은 한편으론 과거 동독 신용제도 하에서 발생한 DM과 동독마르크 간의 1:1 관계라는 명목 교환율과, 다른 한편으론 동독기업이 무역사업에 따른 결제시 실제 적용한 1 DM 대 4.40 동독 마르크라는 사실 결산 환시세 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실제 결제시 지급액은 환전시장 시세에 따른 1 DM : 4.4 동독마르크 교환율과 1 DM :

provisions for external liabilities)은 사전에 국가에 대한 가치조정 신용대부²⁾가 차감계정되지 않는한 이전 기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CMEA - 국가들에 대한 부채와 채권(자산 및 부채란의 제2번 a)은 대체루블(Transferrubel) 시세에 맞춰 대 마르크 환산가치의 절반만 DM 대차대조표에 기입하였다. 이 채권의 가치가 이로써 적절히 평가되었는지는 장차 밝혀지게 될 것이다.

대차대조표 상의 조정항목

은행의 차액보전청구권(Ausgleichsforderung)으로 간주되는 90년 5월말 현재 가상 대차대조표의 자산 조정항목에 포함된 265억 DM은 잔금으로 처리되었다. 화폐 통합조약에 의거(통합조약 부록1의 8장 4조 2항) 신용기관들은 대차대조표상 결산총액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저자기자본(Mindesteigenkapital)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폐통합후 각 신용기관들이 어느정도로 최저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이 잔금처리 결산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용기관이 규정 최저자기자본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마련을 위해 추가 차액보상을 허가해 주도록 통합조약은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액

3.40 동독마르크의 청산준비금 항목으로 분리 처리되었다. 외환시장 시세 관계는 독일 무역은행이, 청산준비금 관계는 국립은행이 담당하였다. 국립은행에는 동독기업들의 수입대금 지불관계로 인해 고액의 예치금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동독제 물품이 서방으로 수출될시, 수출가 1 동독마르크당 3.40 동독마르크의 프리미엄을 대외부채 청산준비금으로부터 지불했어야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DM에 대한 동독 마르크 가치가 절하됨으로 해서 대외부채 청산준비금은 증가하였는데, 이를테면 대외부채는 국내유통 동독마르크화로 평가했을때 그 절하폭 만큼 상승 조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립은행 대차대조표에 국가에 대한 무이자 부채가 설정되었다. 이리하여 국가에 대한 “가치수정 신용대부”(Neubewertungskredit)액 만큼 줄어든 대외부채 청산준비금은 그 자체로는 화폐교환으로 인한 “가치인상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금액은 계산상으로는 동독 은행제도의 통합 대차대조표로 포함되었다. 통합조약의 규정(부록 1의 제8조 4항 5절)에 따라 국립은행의 재산 잔액은 동독이 신설하게될 차액보전기금으로 이양토록 하는데, 이 기금이 은행의 차액 보상을 전담하게 된다. 이로써 동독국가 부담해야 할 차액보상 할당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2. 1948년 화폐개혁과 관련한 지폐 및 동전 등의 장비마련에 따른 국가에 대한 국립은행의 채권을 포함함.

보전기금의 수요가 추가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환시세의 변동, 특히 미국 달러화에 대한 DM화의 강세로 자산상의 조정항목 금액은 소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 달러 채무 및 부채는 지금까지 실제 시장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환율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앞으로 작성해야할 “임시 화폐교환산” (통합조약 부록1, 7장 1조)에는 자산·부채상에서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이는 최종 DM 개시 대차대조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화폐교환 실시를 대비하여 동독은 차액보전기금을 신설하였다. 이 기금은 화폐교환으로 인해 은행과 무역업체에 발생하는(부채-자산상의) 조정항목에 대해 채무자인 동시에 채권자의 역할을 한다. 동독 은행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차대조표상의 차액보상 청구액은 금융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과 조합금고 분야의 경우 화폐교환시 불균형(자산 2:1 ; 일인당 일정액에 대한 부채 1:1, 기타 2:1)으로 인해 제기될 차액보상 청구액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42쪽 도표 참조). 또한 외국과 상거래 내지는 재정거래 청산을 해야 하였던 기관들의 대외부채는 - 이에 대응되는 국내 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 교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면 전 국내회사들을 담당하는 독일신용은행의 경우, 부채·자산간의 교환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도 일정액수의 차액보상금을 지출해야 되는 까닭은, 가상 결산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되어지지 않은 본기관 출자 자본금의 액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자기자본은 금전상의 채권에는 부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되지 않았음. 이 밖에도 최저자기자본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신용기관이 제시하게 될 추가 차액보상청구가 고려되어야 함).

대차대조표상의 차액보상 문제와 관련, 국립은행은 다른 모든 은행들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부채상의 조정항목이, 즉 차액보전 기금에 대해 부채가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립은행 대차대조표에서의 대외부채 청산 준비금이 화폐교환시 일정 결산한도 내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27 P. 주(1) 참조). 요컨대, 화폐교환시 발생한 “가치상향조정 수익금” (Aufwertungsgewinn)은 국립은행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액보전기금으로 흡수되어, 이는 다시 다른 은행들의 결산 조정을 위해 사용되어짐을 의미한다.

가상결산에 따르면, 부채 및 자산상의 불균형 교환으로 인한 차액보전기금에 대해 은행들이 (국립은행 포함) 청구하게 될 차액보상금액은 총 5백 7십억D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요는 대외부채 청산준비금 항목의 해체와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동독에 산의 지원으로 충당될 것이다.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은행의 청구권은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은행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차액보상 청구권은 금융시장 사업에 대한 해당은행의 기금 출자로서, 연방은행에 대한 리파이낸스 요청시 담보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화의 서독 마르크화로의 교환대비 가상 대차대조표

근거자료 : 1990년 5월 31일자 작성 동독 금융체제 통합 대차대조표

대 변	십억 동독마르크	교환비율	십억 DM (교환금액)	차 변	십억 동독마르크	교환비율	십억 DM (교환금액)
1. 국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부 합계	397.4	—	180.7	1. 국내 비은행기관의 예치금 합계	249.9	—	156.6
이 중 :				이 중 :			
- 국 가	60.6	a) 2:1	12.3	- 국 가	10.8	2:1	5.4
이 중 :							
· 대외부채 가치수정 신용대부	31.2	—	—				
· 1948년 화폐개혁시 기초자금 마련에 따른 국가에 대한 청구권	4.9	—	—				
- 기 업	231.7	2:1	115.8	- 기 업	57.0	c) 2.05:1	27.8
- 주택부문	102.6	2:1	51.3	- 민간인			
- 민간인(주택건축 신용대부 제외)	2.5	2:1	1.3	이 중 :			
				· 민간인의 지로 및 저축예금중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화의 서독 마르크화로의 교환대비 가상 대차대조표

근거자료 : 1990년 5월 31일자 작성 동독 금융체제 통합 대차대조표

대 변	십억 동독마르크	교환비율	십억 DM	차 변	십억 동독마르크	교환비율	십억 DM (교환금액)
				·내국인 예치 외화	165.6	d)1.44:1	115.0
				·외국인 예치 외화	2.3	e)2.05:1	1.1
				·생명보험	14.2	2:1	7.1
2. 대외 채권	45.0	—	36.3	2. 대외 부채	152.5	—	55.0
a) CMEA 회원국	17.4	—	8.7	a) CMEA 회원국	1.1	—	0.6
b) 서방산업국과 개발도상국	27.6	b)	27.6	b) 서방산업국과 개발도상국	55.0	b)	55.0
				c) 대외부채 청산 준비금(1)	96.4	f)	—
3. 자본 출자	1.1	1:1	1.1	3. 유통 현금 (은행 잔고 제외)	13.6	2:1	6.8
4. 기타 자산	3.1	2:1	1.5	4. 누적 수익/준비기금/ 보증금	23.4	1:1	23.4
				5. 기타 부채	7.2	2:1	3.6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화의 서독 마르크화로의 교환대비 가상 대차대조표

근거자료 : 1990년 5월 31일자 작성 동독 금융체제 통합 대차대조표

대 변	십억 동독마르크	교환비율	십억 DM	차 변	십억 동독마르크	교환비율	십억 DM (교환금액)
합 계	446.6	—	219.6	합 계	446.6	—	246.0
자산 조정 항목	—	—	26.4	부채 조정 항목	—	—	—
총 계	446.6	1.81:1	446.0	총 계	446.6	1.18:1	246.0

주)(1). 이는 원래 국가에 대한 은행의 부채로서, 부채 1번에도 해당 가능함. 2번의 대외부채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독 마르크로 낮게 책정된 대외부채의 “가치조정” 이 불가피했기 때문임.

a) 245억 마르크의 잔고에 대한 교환으로서, 이 잔고는 대외부채에 대한 가치조정을 거친 신용대부(312억 동독마르크)와 1948년 화폐개혁시 일시불 기초자금(지폐 및 동전 포함)에 따른 채권(4십 9억 마르크)을 차감계정 하였을때 대외부채 청산준비금과 동일한 수치를 보이게 됨.

b) 본 도표의 대외채권(자산 2b)과 대외부채(부채 2b)는 89년말 시세로 평가됨. 최종 교환시에는 90년 6월 30일의 시장시세가 적용됨. 이때 명시된 금액은 약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부채 2b에는 내국인의 외화 예치금도 포함됨).

c) 9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외국인 예치금 외화에 대한 교환비율은 3:1, 그 밖에는 2:1이 적용됨.

d) 2천 동독마르크×3백 2십만=64억 DM, 4천 동독마르크×1천만=404억 DM, 6천 동독마르크×3백만=80십억 DM의 합계인 648억 DM 이 1:1의 비율로 교환됨 : 나머지 1천 8억 동독마르크는 2:1 비율로 교환됨.

e) 89년 말일자 예치금 총액 2십 1억 동독마르크는 2:1의 비율로, 나머지는 3:1의 비율로 교환됨.

f) 대외부채의 가치수정에 따른 신용대부(3백 12억 동독마르크)와 1948년 일시불 기초자금(지폐 및 동전 포함)에 따른 채권(4십 9억 동독마르크) 중 일부는 차감계정됨 : 수치상으로 남게 되는 잔액(6백 1억 동독마르크)은 조정항목의 삭감명목으로 처리됨.

부록 5 : 1989년도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결산

양독간의 용역 및 자본거래 총결산은 1989년을 그 마지막으로 한다.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과 더불어 이러한 내독관계는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1989년도 양독간 용역 및 자본거래는 서독이 12억 DM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로써 차변잔고는 전년과 동일하다. 동독내 정치구조의 변화 및 경제개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동독과의 총지불 거래 결산은 전년과 다를 바가 없다. 반면 89년 11월, 12월 두달간의 추이변화는 지불결산구조에 현저한 영향을 가져왔다.

89년도 동독과의 물품 및 용역거래 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서독이 현저한 우세를 보였다. 88년만해도 차변잔고가 4억 DM에 달하였으나, 89년에는 20억 DM의 흑자를 보였다. 이러한 큰 격차는 동독과의 용역사업, 특히 여행사업 분야의 신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동·서독 경계가 개방되자 동독 여행객들이 서독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에 따라 여행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동독인들은 연방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환영비”의 대부분을 서독에서의 상품구입에 소비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입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대응항목으로서, 동독으로의 이전지출을 들 수 있다. 동독 여행객들에 대한 지원비와 그 결과 증가된 여행수입으로 인해 재정거래 규모가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대차대조표상의 균형이 깨어지는 결과 따위는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지불통화” 면에서도 89년에 들어서 실제 변화한 것은 거의 없다. 89년도에 있었던 청산단위 지불거래(베를린협정의 일환인 “고정지불거래”(gebundene Zahlungsverkehr))는 소위 “자유통화”로는 13억 DM이 동독으로 유출되었는 바, 동독여행객들에 대한 실제 지불금과 동독에 대한 서독의 공공비용 지불금(통과료 및 기타 도로사용료)이 여기에 포함된다.

내독교역

지난 3년간 부진했던 내독교역은 89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89년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반출은 전년에 비해 12%, 반입은 약 6%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서독의 흑자

는 88년 2억 DM/VE에서 89년 6억 DM/VE로 증가하였다. 89년도 대동독 반출량 증가는 89년 가을부터의 정세변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교역구조의 발전추세에 기인한 것이다. 90년 1/4분기에 들어서서는 대동독 반출량이 - 계절과 관계된 사항을 배제하였을때 - 다소 부진세를 보였다.

90년 4월과 5월중 이 추이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는데, 2월과 3월에 비해 반출량이 약 60%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90년 초부터 서독회사들은 베를린협정 지역 외에서도 물품을 동독으로 반출하였는 바, 이로써 장벽개방 후의 양 국가간 - 특히 베를린협정 지역 외에서의 - 교역량 증가치는 내독교역 통계에 전부 포착될 수 없었다.

동독으로 반출되는 총물품중 원자재와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국가와의 무역에서와는 달리 매우 높은 편이다(38%). 특히 지난해에 들어 동독은 서독으로 부터 비철금속(+38%), 제철 및 강철(+10%) 그리고 화학제품(+7%)들을 대량 구입하였다. 자본재 중에서는 전기제품(+22%)과 기계공업제품(+13%)의 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 동독산업이 투자품목을 절실히 필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동독으로의 총 반출량에서 이 부문이 차지하는 38%라는 비율은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종전과 다름없이 중앙통제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동독의 무역정책은 일반 경제 제분야에서 드러나는 수요불충족 현상만을 주로 서독으로 부터의 반입을 통해 해결하자는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 정책은 동독 주민들의 일반 소비욕구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 지난해 소비품목 반입량이 3.5% 감소됨에 따라, 이 품목이 전종목 총 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채 못되었다. 90년 초반 동독으로의 소비품 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그동안 동독정부의 물품 반입정책이 동독내 잠재수요를 얼마나 억눌러 왔던가를 여실히 입증해 보였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반입·반출이 이루어지게 된 90년 초부터는 소비품목 부문에서 현저한 신장이 엿보이고 있다.

90년 4, 5월간 식품 및 기호제품 판매는 전년에 비해 4배, 소비품목 판매는 2.5배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자본재의 증가는 24%에 머물렀다. 현재 동독에 내재하는 자본재에 대한 수요증대 추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서 현저한 반출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독으로부터의 반입은 6% 정도 증가하였는 바, 이는 동독으로의 반출 증가폭의 절

반에 해당된다. 반입·반출 품목의 불균형 구조는 89년에 들어 더욱 심화되었다.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반출증가폭이 10.5%를 기록함으로써 해서, 이 사업부문이 전체 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자본재(특히 전자 제품) 부문에서도 증가가 있었으나(+13%), 이는 서독으로의 총 반입량의 16% 정도에도 채 못미치는 수치이다. 동독 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한 물품의 제공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들이 질과 가격면에서도 국제경쟁력에 뒤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서독이 경기호황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시장세를 탈 수 없었다. 심지어 89년도 소비품 생산업체의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감소 현상을 보였다(-1%).

작년의 경우, 양독간의 통과무역에서는 현저한 교역량 증가가 있었는데, 이들 사업은 “자유통화”로 지불되었다. 서독측은 서독거래처가 외국으로 중개 판매한 동독제품에 대해 약 10억 DM를 지불하였다. 이들 품목은 주로 동독제 강철제품 및 식품들이었다. 반면 동독은 서독 통과무역상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대해 11억 DM의 반입비를 서독에 지불하였다. 이들 품목은 주로 곡물, 화학제품, 비철금속 및 기계제품 등이다. 이로써 결산상으로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1억 DM 정도가 유입된 셈이다.

용역사업 및 이전지출 결산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89년도 용역사업 부문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6억 DM의 적자를 내보였던 88년에 비해 89년도 동독과의 용역사업에서는 서독이 13억 DM의 흑자를 보였다. 청산단위로 지불결제된 용역사업 거래(Service transaction/Dienstleistungstransaktionen)에서는 약 2억 DM/VE의 흑자를 보임으로써 88년과 비교했을 때 (3억 DM/VE) 큰 변화가 없었다. 위탁 가공 수수료와 운송사업 및 금리지불 등에 따른 서독의 실수익은 수수료(Provision/Commission), 전시비용, 동독체신부와의 차액비용 조정을 위한 연방체신부의 지불금 그리고 서베를린과 관계된 지불금(오물 및 하수제거, 지하철 및 전철 협정) 등의 총 실제지출비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상호간의 용역사업 거래에서 서독이 흑자를 보이게 된 중요한 이유는 “자유통화”에 의한 지불 때문인데, 특히 서독측이 얻은 여행수입이 그 주를 이루었다. 이 수익금은 88년도에 5억 DM 였다가, 89년에는 27억 DM으로 급증하였는 바, 그중 24억 DM가 동년 제4분기 안에 획득한 금액이었다.

서독방문객들의 소비물품 구매가 동인으로 작용한 이 여행수입은 원칙과는 달리 대차대조표의 물품거래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응하는 결산상의 항목은 동독으로의 이 전지출로 정리되어 있다. 그 내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방단체에서 동독 방문객들에게 지불한 지원금은 88년도에는 4억 DM에 불과하였으나, 89년에는 약 24억 D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작년 “자유통화” 로 일괄 통과비 5억 2천 5백만 DM, 도로 사용료 5천만 DM, 체류허가 수수료 4천 5백만 DM이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이 밖에도 동독은 Genex-선물판매점에서만도 2억 5천만 DM의 수입을 거두었다.

반면 서독에 거주지가 있는 자들은 적립금 봉쇄-협정(Sperrguthaben-Vereinbarung)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동독내 은행구좌로부터 4천 7백만 DM를 서독으로 이전시킬 수 있었다. 89년도 전체 이전지출 결산에서 서독은 전체 33억 DM의 적자를 보았는데, 전년에는 13억 DM이었다(일괄적으로 계산된 동독에 대한 특별지불금은 화폐·경제·사회통합과 더불어 그 시효가 만료된다. 예를 들어 90년도에 8억 6천만 DM으로 인상된 일괄 통과비와 적립금 봉쇄 협정이 이에 해당된다).

동독과의 지불거래

통계에 나타난 89년도 동독과의 자본거래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88년에는 6억 DM이 유출됨). 서독측이 이용한 연방은행의 Swing 신용대부는 9천 7백만 DM 정도에 그쳤으나, 90년 상반기에 가서는 큰 변화를 보였다. 90년 6월말 동독은 약 5억 DM의 Swing 신용대부를 제공받았다. 통합조약내 협정에 따라, 이 최종결산 잔액은 고정지불거래 종료와 함께 동독측에 의해 정산되었다.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결산				
단위 : 10억 DM/청산단위(VE)				
항 목	1988	1989		
		이 중 :		
		총 액	고정지불거래 (gebundene Zahlungsverkehr)	자유화폐 (freie Wahrung)
I. 경상수지				
1. 물품 및 용역사업 거래				
a) 물품교역(보충품목 포함) :				
- 동독으로의 반출	6.5	7.3	6.4	1.0
- 동독으로부터의 반입	6.4	6.7	6.7	0.0
- 결 산	0.2	0.6	-0.3	1.0
b) 용역사업 :				
- 수 입	1.9	4.2	1.3	2.9
- 지 출	2.5	2.9	1.1	1.8
- 결 산	-0.6	1.3	0.2	1.1
이 중 :				
- 운송사업 :				
· 수 입	0.6	0.7	0.7	—
· 지 출	0.2	0.2	0.2	—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결산				
단위 : 10억 DM/청산단위(VE)				
항 목	1988	1989		
		이 중 :		
		총 액	고정지불거래 (gebundene Zahlungsverkehr)	자유화폐 (freie Waehrung)
- 여 행(1) :				
·수 입	0.5	2.7	—	2.7
·지 출	1.2	1.4	—	1.4
- 일괄지불 우편요금 :				
·지 출	0.2	0.2	0.2	—
물품 및 용역사업 거래의 결산	-0.4	2.0	-0.1	2.1
2. 이전 지출(무보상)				
a) 민간 부문 :				
- 서독으로의 이전	0.1	0.1	—	0.1
- 동독으로의 이전	0.3	0.4	0.0	0.4
- 결 산	-0.2	-0.2	-0.0	-0.2
b) 공공 부문 :				
- 서독으로의 이전	—	—	—	—
- 동독으로의 이전	1.2	3.0	0.1	3.0
- 결 산	-1.2	-3.0	-0.1	-3.0
이 중 :				
- 일괄 통과금	0.5	0.5	—	0.5
- 방문 동독인에 대한 지불(1)	0.4	2.4	—	2.4
이전지출금 합계 :				
- 서독으로의 이전	0.1	0.1	—	0.1
- 동독으로의 이전	1.5	3.4	0.1	3.3
- 결 산	-1.3	-3.3	-0.1	-3.2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불결산				
단위 : 10억 DM/청산단위(VE)				
항 목	1988	1989		
		이 중 :		
		총 액	고정지불거래 (gebundene Zahlungsverkehr)	자유화폐 (freie Waehrung)
경상수지 (서독의 적자 : -)	-1.8	-1.3	-0.1	-1.1
II. 자본수지 (자본 반출 : -)	0.6	0.1	0.2	-0.1
이 중 :				
독일연방은행의 Swing 대부	0.4	-0.0	-0.0	-
III.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결산 (동독으로의 자금유출 : -)	-1.2	-1.2	0.1	-1.3

주) (1) 일부는 추정액임.
합계상의 차이는 반올림으로 인함. 연방은행

2. 동·서독 화폐 통합 :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결단 *

본고는 1990년 7월 1일 부로 발효된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 및 화폐 통합을 주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¹⁾ 국가 통일은 독일 통합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제 통합이 실시된 지 불과 수 개월만에 달성되었다.

우선 1990년 초반의 동독 경제 실태를 간략히 개괄해 봄으로써 동독 경제의 붕괴 배경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양독간의 통계 자료 비교는 이들의 경제적 격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치 및 경제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경제정책상의 두 가지 대표적 경제 적응 방법들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이 모델들은 경제, 정치 및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각기 상이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적응 방안을 둘러싼 정당 간의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이론적 모델들을 소급해 봄으로써 정치적 결정에 의해 성급히 추진된 화폐 통합의 배경을 밝혀 보기로 하겠다. 연방은행의 자율성 문제를 간략히 살펴 본 다음, 끝으로 1948년에 실시된 화폐 개혁과 1990년의 화폐 통합을 비교해 보겠다.

2-1. 동독 경제의 실태

오랫동안 동독 경제는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동구 경제권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 평가만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 동독 정치 수뇌부는 수차례 걸쳐 동독이 세계 10대 경제 주도국에 속한다고 선전을 하였다 (Mittag, 1988년 참조). 서방 관측자들 역시 동독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다: 70년대 초반 이후 동독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 세계 경제 조건의 악화와

※ 이 자료는 Andreas Busch, Die deutsche - deutsche Waehrungsunion:

Politisches Votum trotz oekonomischer Bedenken, in: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 - Strategien - Kontroversen, Ulrike Liebert/ Wolfgang Merkel (Hg.), Leske + Budrich, Opladen 1991, pp. 185 ~ 207를 전문 번역한 것임.

문화 부문에서의 일부 퇴조에도 불구하고 - SED (동독 공산당)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 1986년 제10차 당 대회에서 SED는 성공적인 동독 경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Glaessner 1988: 11 참조).

서방 경제권에서 경제 성장의 척도로 사용되는 GNP 성장률, 취업 동향, 물가 상승률 및 정부 예산 운영 결산 등과 관련한 동독의 공식 통계에서는 동독 경제의 실질적 발전을 보여 주었다 (경제 감정 전문 위원회 1990: 11번 참조).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1989년 가을 정치적 대변혁이 진행됨에 따라 동독 경제는 걸잡을 수 없는 붕괴양상을 내보이게 되었는데, 이로써 지금까지 믿을 만한 자료로 간주되었던 동독 통계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이들 자료는 열악한 경제 상태를 교묘히 은폐시키는 알팍한 수단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요컨대, 동독 정치 체제 상의 위기란 그 핵심에 있어선 동독 경제의 위기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었다. 다음에서는 최근 10년 간 급속히 악화된 동독 경제 위기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70년대 초 '울브리히트 시대' 에서 '호네커 시대' 로 동독 정권이 그 장을 달리 하면서 경제 전략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 울브리히트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1963년에 시작된 '국민 경제 기획' 운영을 위한 신경제 체제' (NOeS: Neuen Oekonomischen System der Planung und Leitung der Volkswirtschaft)라는 경제 실험 단계 또한 끝을 보게 되었다. 경제 활성화가 기업들의 자율성 강화를 표방하였으며, '기간 산업' 에 대한 투자 증대를 피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구조 전환 정책을 시도하였던, 그리하여 중앙 계획 경제 체제를 뒷전으로 몰아 낸 이 실험 모델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호네커 집권 체제 하에서는 동독 경제가 다시 중앙 집권화되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DIW 1984: 37~48쪽). 그 당시 막 시작되었던 서방과의 긴장 완화 정책에 힘입어 동독측은 투자 대신 소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71년에 있었던 제8차 SED 당대회는 '국민 생활 개선' 을

‘주요 과제’로 천명하였다. 그 구체적 조치로 소비 제품 생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주택 건설 촉진과 같은 야심적인 사회 복지 방안 등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동독 경제는 1976~1980년 5개년 계획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은 동독의 대외 경제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수출 수익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석유 수입비로 소련에 지불해야 했으며, 1975년~1980년 5년 간의 대서방 외채는 두 배로 증가,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Haendcke-Hoppe 1989: 643). 따라서 1981~1985년 5개년 계획에서는 이 대서방 부채 감축 문제가 제 1 과제로 제시되었다.

1981년에 있었던 서방 은행에 대한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지불 이행 능력의 상실은 동독에 대한 신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구체적 일례로 동독은 더 이상의 신규 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서방 수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화 지불 수입품에 대해 감축 정책을 펼쳐야만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국내 물자 조달 사정이 악화되고, 성장 저하 현상이 초래되었는데, 동독 지도부는 이른바 독립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수해야 했다. 처음부터 동독은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동독은 한편으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역을 해 나가긴 했지만 그 밖에는 - 특히 서방으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 자립 경제 (Autarkie: ‘경제적 독립성’ Haendcke-Hoppe 1989: 645 참조)를 표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써, 동독은 금속 가공 산업의 부품 중 5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였다 (반면 서독의 부품 자체 생산 비율은 17%이며, 나머지는 수입을 함 (Hoffmann, 1990)).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국제 분업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된 동독은 이같은 자급 자족 경제 방안을 에너지 경제 정책에도 적용,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다: 석유를 국산 갈탄으로 대체시킴으로써, 갈탄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절약 조치에 의해 국내

석유 소비를 1978년 1천 8백만 톤에서 80년 대에 들어서는 1천 1백만 톤으로 억제시킬 수 있었으나, 전체 석유 수입량은 계속해서 연간 2천 3백만 톤의 규모로 유지되었다.

제품과 원유는 석유 가격이 높아질 때 나머지 석유를 서방에 수출하였는데, 이런 방법으로 동독은 무역 적자를 상쇄시킬려고 하였다 (Cornelsen 1990: 75). 그 규모는 다음 수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71~1975년간 동독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석유 제품의 비중은 3.4%에 불과하던 것이, 1976~1980년 제 5 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9.0%, 심지어 1982년에는 28.7%로 증가하였다 (DIW 1984: 401, 도표 52).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가난의 표시였다. 이로써 동독 경제는 개발도상국 수출 구조의 양상을 내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이는 환경을 대가로 하여 취약한 경제 구조를 은폐시키는 처사로서, 갈탄 소비 증가에 따라 엄청난 환경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어렵게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국민 소득 성장의 대부분이 경상 수지 (Leistungsbilanz) 개선에 투입되었다: 1981~1985년 평균 국민생산소득은 4.3%의 성장을 보인 반면, 이 국민소득의 지출율은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같이 제한된 여건 하에서도 동독 정부는 가급적이면 국민 소비에 대한 타격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 소비는 2.2%, 사회 소비 (주택 건설 방안)는 0.9%의 소폭 증가를 보일 수 있었다. 동독 정부는 가격 보조 정책 (Preissubvention)을 통해 개인 소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경제 발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86년도 정부 예산 중 19.4%가 가격보조정책방안에 사용되었다 (1980년에는 10.5%).²⁾

이같은 국민 복지책은 그 대신 다른 부문, 즉 투자 부문에서의 절약을 강요 하였다: 그리하여 투자 부문 예산은 연평균 5.3%의 감소를 보였다 (Cornelsen 1990:77). 80년대 중반기에 석유 가격이 인하되자 동독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입 제한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동독 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5 개년 계획 목표 달성은 점점 더 요원한 희망사항이 되고

말았다.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1970년 이후로 점점 줄어들었다 (1970년: 16.1%, 1975년: 14.8%, 1980년: 12.4%, 1985년: 8.1%). 급기야 이는 총생산자본의 노화현상을 초래하였다 (Cornelsen 1970:77). 바로 여기에 동독 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놓여 있다. 1 DM 어치의 수입을 위해 급기야는 4.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동독의 생산성 저하가 어느 정도나 심각하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Kromphardt/ Bruno 1990:312). 1980년에만 해도 1 DM에 대해 2.40 동독 마르크를 지불하면 되었었다 (DIW - 주간 보고서 14/1990:173).

요컨대 이로써 동독 정치 지도자들의 경제 정책이 완전 실패작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소비 부문에 대한 자금 재편성을 통해 정권을 유지·구축시키려다 동독 경제의 기반만 약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그릇된 정치를 위장하기 위해 실시된 조치들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파괴시키고, 국민 경제 자산을 축내고 말았다. 이 밖에도 실 생활수준은 동독 주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였다. 이같은 생활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동독 체제 비판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동독 국민 경제의 낙후 상태는 서독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 시설의 약 85%가 1965년 내지는 그 이전의 서방 상태 수준 밖에 안 된다고 한다.³⁾ 다음 통계가 동독 생산시설의 노후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⁴⁾

시설 사용 연수	동독	서독
5년 미만	27 %	40 %
10년 이상	50 %	30 %
20년 이상	21 %	5 %

양독간 경제 구조 또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시장과의 경쟁을 차단함으로써 동독 내 노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산업 업종별 비중은 1967년 당시의 서독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현재 경제구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독의 경우 제품 생산업 (제조업, 농·임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의 비중이 더 큰 반면 (58% 대 45%),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들은 비대한

정부 행정 인력들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독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25% 대 36%) 나타나고 있다 (Gerstenberger 1990:15).

이 수치들은 양독간 경제 격차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해 준다. 따라서 동·서부 독일 간의 경제 균등화 달성이란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근 15년간 OECD 국가들의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 비교적 미미한 - 문제점들을 상기해 보았을 때, 동독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2-2. 통화 정책 모델 : 태환 방안 (Konvertibilitaetsloesung) 대 즉각적인 화폐 통합 방법

동독 대변혁 이후 점점 더 드세어졌던 통일에의 요청은 경제 균등화 조치가 절실한 사항임을 분명히 말해 주었다. 1989년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도 이주 물결은 ⁵⁾ 그칠 줄 몰랐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대거 서독으로 이주함에 따라 동독은 경제 부흥에 필수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으며, 서독 역시 재정 및 사회적 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동독 경제 상황 개선을 겨냥하는 정치적 결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특히 통화 부문이 큰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이는 화폐 개혁이 갖게 될 상징적 효과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동독 통화 정책의 실패와 이로 인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통화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새 통화 정책으로서,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들이 거론되었다:

- (비 태환성 동독 마르크와는 다른) 태환 가능한 동독 자체 통화 설치 모델과,
- 즉각적인 화폐 통합, 즉 D-마르크를 동독의 새통화로 도입하는 모델.

이 두 방법들을 주장하는 데에는 당연히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물론 이들은 단지 시기 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배척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통일에의 염원이 압도적이었던 당시 정치 상황에선 통화 부문에서도 방법 상의 이론은 있었을지언정 그 목표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드디어 동독에 ‘동지애를 발휘할 때’ (Stunde der Genossenschaft) 가 왔다고 생각한다면⁶⁾, 아니면 ‘진정한’ 사회주의 구축을 위해 ‘제3의 방법’ 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소수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따라서 경제·정책 상의 논의에서는 화폐 통합의 전 단계로서 잠정적으로 마르크를 태환 화폐로 변형시킬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다. 도입 지지자들은, 동·서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 동안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변 환율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통화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님은 너무나도 자명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천차만별인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못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방안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 (예: Leibfritz/ Thanner 1990; Goetz-Coenenberg 1990). 다음에서는 이 두 모델들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도표 1 참조), 사안의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경제적 측면 외의 다른 측면 또한 동시에 고려토록 하겠다. 이를테면 화폐 통합 문제는 동독의 주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밖에 분배 문제를 둘러 싸고서도 여러 견해가 오고 갔다. 여하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독 정부의 조속한 화폐 통합 결정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 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각적인 화폐 통합은 ‘crash programme’ (OECD 1990: 47) 내지는 ‘강력한 방법’ (harte Weg) (Goetz-Coenenberg 1990: 26)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이 방법은, 경제 및 가격 개혁 또는 기타 자유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동독 기업들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 시장과의 경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는 낙후된 기술 및 생산성, 시장 경제에 대한 경험 부족 그리고 동독 주민들의 서독 제품

선호 성향 등에 힘입어 동독 경제의 전반적 와해라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구체적으로 동독은 과거 대외 수출의 70%를 차지했던 COMECON 지역 시장들을 잃게 되었다. COMECON 국가들로서는 만성적 외화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동독 제품들을 D-마르크로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 백만 명에 이르게 될 집단 실업의 위험이 도래하였으며, 실업, 연금 및 사회복지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서독으로부터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급속한 화폐 통합은 인플레이 현상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보통 DM 총 통화량이 잠재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동독 경제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특히 더 높아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 화폐 통합은 동독 경제 개혁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았으며, 조속한 개혁을 강요하였으니, 사실 이는 연방 독일 법률의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이로써 동독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금융·화폐 정책 차원에서는 연방주 (Bundesland)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Pohl 1990: 10). 따라서 정치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동독의 개혁과 서독과의 국가 통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 되고 말았다.

반면 동독 마르크를 태환 화폐로 잠정 변형시키는 방법은 '점진적인 전환 방법'으로서, 국제 시장 적응에 따른 (필수적인) 구조 전환을 가능케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이 방법 역시 개혁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통화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환 통제와 국내 경제의 자유화 (가격 개혁)가 선결되어야 했다. 저환율은 화폐통합 방법과는 반대로 동독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완충 역할' (Schutzwall)을 하게 된다: 즉, 수입품 가격은 비싸지는 반면 수출품 가격은 낮아지게 됨으로써 동독은 판매 시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구조 전환으로 초래 될 실업자 수는 소규모로 그칠 것이며, 설사 해직 사례가 생긴다 해도 급작스럽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용시장 측면에서도 이 방법은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 즉, 노동 쟁의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생산성 증가율 이상의 임금 인상이 있게 되었을 때,

환율가를 유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내 물가 galien 추세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독의 주권은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채택하였을 때보다 더 확대된다. 이를테면 동독은 자율적인 환율 책정을 통해 경제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서독 정부 정책과 상이한 경제 정책을 펴 나갈 수도 있게 된다. 설사 환율가가 고정된다 할지라도 이때 처하게 되는 상황은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실제로 오지리는 15년간 DM에 대한 고정환율 통화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서독과는 별도의 국내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Scharpf 1987). 물론 거대한 구조 전환 상의 어려움에 처한 동독이 필수불가결한 변혁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 개혁이 늦어질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장기간 동안 서독의 재정 원조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두되는 또 다른 커다란 문제는 서독과의 국경 개방으로 인해 동독 경제 부흥에 없어서는 안 될 우수 인력들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화폐 통합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이같은 위험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환성 방식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독에서 취업하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액은 동독에 남아서 일할 때 받게 될 임금보다 몇 배 이상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안들이 제시되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사민당 위원 안드레아스 뷰로스 (Andreas v. Buelos)의 제안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동독주민들의 서독 입국을 5년 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였다.⁷⁾ 이는 또 다른 장벽의 설치로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서독이 주도한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이 요청은 당연히 거부되었다. 또 다른 예로서, 동독 사민당은 기민당과의 연합정부 구성 협정 방안으로 다음을 주장하였다: (신탁청을 통한) 국민 자산 지분을 최고 80% 까지 가격을 낮춰 동독 국민들에게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급된 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매매를 중지시키고, 서독 이주시에 이를 반환토록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동독 경제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분의 가치는 현저히 상승될 것이며, 이는 다시금 이 지분소유자로 하여금 동독에 남아 있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⁸⁾

이 밖에 다른 여러 경제학자들도 개인 재산 형성이 동독 잔류에 미치게 될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주택 소유권을 동독주민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Leibfritz/ Thanner 1990). 10년 간의 주거 임대세 지불을 통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가능케 하고, 이주 시에는 소유권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소기업 소유권은 임직원들에게로 이전시키고, 국영 기업 (VEB)은 주식회사로 변경, 주식의 50%를 직원들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Gros/ Steinherr 1990).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요약해 보자면, 즉각적인 화폐 통합 모델은 통합과정을 가속화시키며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통일' (Einheit)이라는 패러다임 (Paradigma)을 따르고 있다 (Goetz-Coenenberg 1990: 13). 이 밖에 독일의 통일을 소련측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유리한 국제정치상황 역시 이 방법을 뒷받침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즉각적인 화폐 통합으로 인해 동독 주민들은 순식간에 복지 향상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 예치금의 가치가 올라 갈 것이며, 소득에 따른 구매력 역시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제품의 구입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물론 이 때 분배상 불균형이 생기는 단점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격보조금의 폐지에 따른 초반의 파급효과로서, 기본 생필품들의 가격은 급격히 인상되는 반면, 고급 상품의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이같은 발전 추세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보유, 급격한 소득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 전환 과정에서 실업자가 되었거나 또는 사회 보조금 수혜자와 같은 저소득층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감수해야만 한다 (Mueller-Krumholz 1990: 294).

이와는 달리 태환성 방법은 통합 과정을 서서히 진행시켜 나갈 것인데 따라서 이는 '접목 과정' (Zusammenwachsen)이라는 패러다임을 따르거나 (Goetz-

Coenenberg 1990:3), 아니면 서독의 대 동독 감독 포기를 의미하는 참여 정치 양상 (Partizipatorisches Politikbild)을 내보이게 될 것이다. 전환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연대적' 해결 방식이라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조속한 복지 상승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외제 상품의 공급은 용이해지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는 국내 제품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는) 이 두 통화정책 방법들은 경제적 대표 지수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져 올 정치적 파급 효과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두 방법들에 대한 선호도 역시 달라질 것이다.

도표 I: 두 통화정책 모델들의 특징

	태환성 방식	즉각적인 화폐통합 방식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적응에의 압력 완화 - 국산제품에 유리하게 구매력 발전 - 환율을 통해 국내 가격구조로 인한 국제 경쟁력약화를 방지 - 점진적인 적응과정은 대량 실업사태 방지 - 경제개혁과정의 부진 우려 - 우수인력 이주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 (가격 개혁 등)의 즉각적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과정없이 세계 시장과 경쟁상태에 돌입 · 동독경제의 전반적 와해 · COMECON 판매시장 상실 - 대량 실업 우려 - 기업들의 청산 문제
정치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 - 동독의 경제정책 상의 주권 유지 - 서독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정치적 의사 표현 - 동독의 통화 및 경제 정책상의 자율권 포기 - '독자적 방법' 포기 - 서독의 즉각적인

	필요	대규모 보조 필요
	- 완만한 정치적 통합 속도	
분배 상의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인 복지상승의 포기 - 외제 상품의 구입이 용이해진 대신, 그 가격은 높아짐. - 초반 임금 수준이 낮은 대신 긍정적인 경제 발전시 급속한 소득 향상이 예상됨. - 연대적 부담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을 위한 고소득층의 상대적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치금 등의 실질 가치 인상에 따른 즉각적인 복지 상승 - 저렴한 가격으로 외제 상품 구입 용이 - 빈민층, 실업자 등의 소득 저하 · 고소득층의 소득 향상

2-3. 화폐 통합을 둘러싼 논쟁: 견해 차이 및 수정

연방의회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 잉그리드 마테우스 - 마이어 여사는 1월 중순에 있었던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동독과의 즉각적인 화폐 통합을 제안하였다⁹⁾ (Matthaeus - Maier 1990). 연방 재무부와 경제성은 이 제안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이는 너무 성급할뿐만 아니라 동·서독 경제 발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1990년 1월 26일 연방 경제장관 하우스만은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만병통치약'으로 보는데 대해 반대하며, 동독 개혁 과정에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과 현실감각"이라고 언급하였다. "... 동독 경제가 기본적으로 서독 경제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한 화폐통합은 동독에뿐만 아니라 안정된 서독 D-마르크에도 피해만 안겨다 줄 것이다. 경제가 우선 탄탄해져야 화폐통합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¹⁰⁾ 이어 2월 6일, 하우스만은 화폐통합에 대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동·서독간 경제·화폐통합을 EC 내수시장이 시작되는 1993년 초까지 완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PA 11/90: 2).¹¹⁾

제 1단계에서는 서독으로부터의 신용대부 지원과 경기안정 장기융자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동독 경제 전환과 동독 마르크의 부분적 태환을 가능토록 하였다. 제 2단계에서는 전 제품에 대한 가격의 자율화와 동독 통화의 완전 태환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 3 단계에서는 양독 경제정책들을 일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동 통화로서 D-마르크를 동독에 도입시킬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하우스만은 고정 환율제 하에서도 현저한 평가절하를 통해 환율 변경을 가능케 하는 태환성 방법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바로 그 이튿날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1990년 2월 7일 쿨 연방수상은 내각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동독측과 즉각적인 경제 및 화폐 통합에 대한 협상을 벌일 것을 지시하였다 (PA 11/90:1; PA 44/90:2). 연방 재무장관 바이겔과 경제성장관 하우스만은 경제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독 정부는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주장하는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¹²⁾

첫째, 동독의 현재 상황은 항의 시위와 서독으로의 끊임없는 이주 물결로 인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 서독 정부측으로서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동독주민들에게 희망의 신호를 보내야 할 때이다.

둘째, 화폐통합은 동독으로의 서방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화폐통합과 이의 근거가 되는 국가조약은 정치적 통합을 더 이상 저지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밖에 서독 법규의 도입으로 정치적 통일에의 압력이 증대될 것인 바, 이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성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방 정부가 화폐통합쪽으로 그들의 입장을 변경시킨 반면 야당인 사민당은 자체 내에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¹³⁾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이 제일 먼저 즉각적인 화폐통합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곧 이어 사민당 수상 후보자였던 라퐁탱은 이를 '매우 그릇된 판단' 이라고 비난하였다. (Spiegel 22/1990: 28)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은 화폐통합을 지지하는 이유로 - 연방 정부의 주장과

같이 동독 경제의 위기와 서부로의 이주 물결을 언급하였다. 특히 화폐통합을 통해 동독 경제의 구조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Mattaues - Maier 1990; 1990 a). 반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화폐통합을 통해 연방 정부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점진적인 통합과정을 추구코자 하였다: “화폐통합을 실시하여 이 보다는 훨씬 힘든 정치적 국가통일에의 너무 성급한 요청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Mattaues - Maier 1990 a 65).

사민당 내 반대파인 라퐁탱은 이 화폐통합 방식을 반대하였다. 그는 화폐통합으로 말미암은 동독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며, 우선 사회복지보험제도, 노사 공동계약제도 그리고 재무행정제도부터 구축시키고 나서, 동독-마르크를 태환 가능한 통화로 만들어 대외경제적 적응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갑론을박의 상황에서도 조속한 화폐통합이 겨냥하는 목표에 대해서만큼은 제 정당들 간에 큰 의견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경제 감정 전문가들’ (oekonomischen Sachverstands: 경제 5현)과 정책 자문인들은 이 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태환성 방식과 점진적인 적응방식을 선호하였다.

연방은행도 처음에는 즉각적인 화폐통합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2월 6일 포엘 (Poehl) 연방은행장은 이같은 방식을 “시기 상조”라 지적하며, 이런 류의 제안들은 “매우 허황된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PA 11/90: 1f). 그러나 동독과의 화폐통합이 결정되자 연방은행장은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¹⁴⁾ 물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오로지 연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결정 그 자체는 연방 정부의 정치적 결정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연방 정부가 져야 한다” (PA 12/90: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 일부 중앙은행 자문위원들도 즉각적인 화폐통합에 반대하는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화폐통합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 (Noelling, PA 25:4f) 이라고 하는가 하면, 화폐통합은 약

3~5년 간의 '시간을 두고'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Hesse, Frankfurter Rundschau, 90년 2월 20일)라고 주장하며, 점진적인 태환방법 (Kroenungstheorie)¹⁵⁾ (Storch, PA 26:6f)을 원하는 자도 있었다. 이같은 비난들은 또한 연방은행의 '해결사적' 간여를 인정치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연방은행이 화폐통합으로 인해 물가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며, 만약 실제로 이같은 위험이 도래할 경우, 엄격한 통화 및 신용대부 억제 정책으로 대응할 것임을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Schlesinger, PA 32: 1f.).

경제감정자문위원회와 같은 주요 경제정책 자문기구와 세계경제연구소 (Institut fuer Weltwirtschaft)와 같은 경제문제연구소들은 결정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경제감정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특별평가서에서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반대하는 대신, 동독 마르크를 D-마르크에 연계 (Bindung) 시키는 태환성 방법과 한시적 외환거래통제를 주장하였다 (Sachverstaendigenrat 1990: 32-40). 또한 경제감정자문위원회는 콜 연방수상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즉각적인 화폐통합이 불러 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며, 재차 태환성 방법을 변호하였다.¹⁶⁾ 이 밖에도 DIW-연구소장 호프만 (Hoffmann 1990), 국제경제 연구소장 호스트 지버트 (PA 23/90: 7f.; PA 28/90 5f.), 경제 5천 중의 한 사람인 류디거 폴 (Pohl 1990: 1990a)과 기타 여러 유럽 경제학자들 (Collier 1990)이 앞으로의 경제발전 추세를 우려하는 진단과 회의적인 입장들을 기술한 보고서들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 중 1/3에 달하게 될 실업을 (2백 5십~3백 만명의 실업자)은 동독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는 연방독일로부터 장기간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본 생활 필수품의 가격의 인상에 따라 실제로는 소득이 감소되어,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루르(Ruhr) 공업지역과 자르 (Saar) 공업 지역의 석탄 및 철강산업 위기 그리고 북해 연안 및 남해 연안의 조선업 위기 내지는 소위 국경 근접지역들 (Zonenrandgebieten) 에서 드러나고 있는 구조적 실업위기는 장차 양 독일 국가 간의 급작스런 통일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구조문제와 이에 따른 정치적 동요에 비교하면 한낱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Hoffmann 1990:15).

즉각적인 화폐통합이 가져 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동독지역뿐만 아니라 서독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독 연방 주무부처들도 처음에는 이를 우려했음) 서독 정부가 이 방법을 선택한 데에는 분명히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에서는 그 이유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2-4. 연방 정부의 결정 동기

여당 정치가들의 행동을 설정하는 이론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Budge/Keman 1990: 10ff; Alesina 1989: 59f):

첫째, ‘정치적 경제 이론 (Oekonomischen Theorie der Politik)’의 전통 (Downs)과 ‘national choice’라는 가설에 입각한 이론. 이에 따르면 정치가와 정당들은 오로지 정권획득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office-seeking),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어 가능한 많은 유권자 확보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policy pursuit’설에 입각한 이론으로써, 이는 정당의 이념 내지는 정책방안의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이론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호보충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각 정당은 자신들의 정책 이미지를 분명히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나아가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때 정치가가 관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 방안을 - 특히 이에 대한 각 정당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 관철시키기가 보다 용이해 진다.

동독과의 조속한 화폐통합을 결정한 연방 정부의 처사에는 이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즉 조속한 화폐통합은 연방정부 지도자와 그 정당의 인기를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주요 정책 방안의 관철을 가능케도

하였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는 그 반대인 정치적 이점을 위해서는 당연히 감수되어질 수 있었다.

2-4-1. 화폐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와 경제적 기대

1990년 초반에만 해도 동독 보수파들이 국민의회선거 (Volkskammerwahl)에서 승리할 확률은 매우 적었다. 이들은 세 분파 (CDU, DA 및 DSU)로 갈라져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점 외에도 수 십년 간 SED와의 제휴정당으로 있었다는 기민당의 과거 문제가 또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반면 사민당의 승리 가능성은 라이프치히 청소년 연구소의 설문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매우 높았다: 2월 초순에 실시되었던 이 조사에 따르면, 사민당이 59%, 사회민주당 (PDS: SED 후속 정당)이 12%, 기민당이 11%, Neues Forum이 4%, 자유민주당 (LDPD)이 3%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민당 당수이자 연방 수상인 콜의 주도 하에 동독 보수당들은 ‘독일 연합당’ (Allianz fuer Deutschland)이라는 명칭 하에 통합되었으며, 이어 이틀 후인 2월 7일 콜 수상은 조속한 경제 및 화폐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D-마르크는 독일연합당의 선거 슬로건이 되었다.

즉각적인 화폐통합 안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호응은 대단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동독으로의 D-마르크 도입을 독일 통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 4월 동독 주민들의 90%가 이를 찬성하였으며,¹⁷⁾ PDS 당원들의 67%가 D-마르크 도입을 ‘좋다’ 라고 평할 정도였다.

통일이 가져다 줄 주요 이익으로써 동독 생활수준의 향상 (39.7%)과 경제 부흥 (25.1%)이 지적되었다.¹⁸⁾ 화폐통합과 통일에 따른 부수현상으로서 경제구조상의 심각한 적응 문제들이 또한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동독 주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들은 화폐통합과 통일의 큰 단점으로는 실업 (40.5%)과 사회복지감소 (27.8%)를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시기 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반에는 통일로 인한 장점 (17.4%) 보다는 단점 (41%)이 더 많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점 (4.8%) 보다는 장점 (54.8%)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 서독인들은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를 그렇게 어둡게 보지는 않았다.

통일에 대한 기대	동 독	서 독 ¹⁹⁾
- 초반		
· 장점	17.4%	12.0%
· 장·단점	37.4%	37.0%
· 단점	41.0%	48.0%
- 장기적으로		
· 장점	54.8%	46.0%
· 장·단점	38.9%	38.0%
· 단점	4.9%	11.0%

이상의 수치와 통일 1년 후인 1991년에 거는 개인들의 기대 조사 결과를 살펴볼 것 같으면 동독 주민들이 통일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들 중 49.6%가 1991년에는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4%만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통일연합당 지지자들의 기대는 매우 큰 편이었으며 사민당과 자민당 지지자들의 기대치는 매우 낮았다.

서독인들은 통일에 따른 단점으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조세인상 (41%), 일반적인 경제부담 (18%), 실업 (16%).

2-4-2. 주요 정책 방안 관철

정부 여당인 기민당으로서는 조속한 경제·화폐 통합 방안이 동독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살뿐만 아니라 차후 선거에서 승리에의 발판이 되었다는 점 외에도 기민당의 주요 정책사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는 또 다른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선거정책 분석에 따를 것 같으면 기민당 정책목표의 주요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Klingemann 1987: 296f.): ‘기독교적 가치의 고수 (adherence to christian values), 민주적 입헌정치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자유 사회 질서 (liberal social order),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social market economy), 유럽 통합 (European unity), 독일 통일 (reunification of Germany)’.

기민당은 화폐통합이 경제정책에 가져 올 파급효과를 노려 동독에 사회적 시장 경제의 도입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로는 이같은 방법이 성공할 경우 서독 내에서 기민당은 정치적 프로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로써 화폐통합문제를 둘러싼 사민당과 자민당과의 논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구분지을 수 있게 된다는 전략을 지적할 수 있다 (Klingemann 1987: 310). 동독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소지가 높아지자 기민당으로서는 국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독의 경제 사회가 서독 모델과 너무 동떨어진 방식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였다. 서독 법 체계의 광범위한 적용이 이를 보장해 주었다.

동독 주권의 제한은 독일 국가통일을 가속시켰다. 이로써 기민당의 또 다른 정책 목표인 통일이 바로 눈 앞의 사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2-5. 연방 은행 - 자율권 상실?

화폐통합과 교환율 문제를 놓고서 연방은행과 연방정부는 심한 의견차와 갈등을 보였다. 연방은행은 ‘처음부터 양 정부 간의 회담과 조약협상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연방은행의 주요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었음’ (PA 45/1990:2)을 1990년 5월 31일 중앙은행자문위원회가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 수상의 화폐통합에 대한 협상 결정 그 자체는 연방은행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려졌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로써 연방은행의 자율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결과로 연방은행의 자율권이 계속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화폐통합을 위한 협상은 내각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콜연방수상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는 형식적으로는 연방법 제13조 3항인 ‘통화정책상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될 경우’ 연방은행장을 참여시킬 것을 요하는 규정 (Deutsche Bundesbank 1987:113 인용)에 위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의미 상으로는 이 법의 기본 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처사는 아니었다. 이밖에 환시세 책정 내지는 통화권 확장과 같은 문제는 연방정부의 소관사항이지 연방은행이 담당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등은 환율이 고정된 상태인 Bretton Woods 체제 하에서는 빈번히 발생하였다 (Sturm 1990: 264 ff). 변동 환율 체제로 바뀐 1973년부터는 대외 경제와 관련한 연방은행의 기능이 매우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연방은행은 독자적인 기준 하에 외환시장의 운영에 간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통화권 확장은 연방정부의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연방은행의 자율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같은 연방은행의 통화정책 상의 자율권은, 사회집단 간의 이해 관계를 초월하는 반(Kontre)-정부인 연방은행에 일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견규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연방은행법과 이에 따른 자율권은 원칙적으로 단순 과반수 지지 (einfache Mehrheit) 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자율적인 중앙은행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독에서는 어떠한 정부도 이를 진지하게 시도하지 않았었다.

화폐통합문제가 전개되기 전에도 연방은행과 콜 정부 간의 관계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연방은행측 의견이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주요 사안을 둘러싼 결정에서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협력에 관한 독일 - 프랑스 협정 (Sturm 1989:7f) 체결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법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발권은행에 대해 인사조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Caesar 1987: 527; Sturm 1989, 1990). 앞으로도 중요한 인사조치가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압력이 특히 가중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독 5개 주들은 그들의 주립 중앙은행장들을 중앙은행 자문위원회에 참석시킬 것이며, 연방은행 이사회 회원 수는 증가될 것이다 (Heemann 1990). 따라서 이처럼 눈 앞에 닥쳐 있는 중앙은행 자문위원회 인사 이동과 더불어 독일 통화정책의 결정기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지고 있다.

요컨대 형식적으로 화폐통합 결정 과정에서 연방은행이 차지하는 독자적 권리는 침해받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에 놓여 있다: 연방은행은 타협적 통화정책 (akkommodierende Geldpolitik)을 통해 역경에 처한 독일 국가의 과제 (실업률 상승, 기업 파산, 물가 인상)의 해결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긴축통화 정책을 통해 타협없는 물가안정을 추구하느냐 라는 두 정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2-6. 1948년의 화폐개혁과 1990년의 화폐통합 간의 현저한 차이

여러 관점에서 볼 때, 1990년 초 동독의 상황은 1948년 당시의 독일 상황과 유사하다. 그 당시 양 독일에는 생산기획, 가격관리 등을 전담하는 중앙행정 경제체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이 누적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차후 서독 연방지역에서는 이같은 경제적 문제들을 1948년 화폐개혁 조치에 의한 경제개혁을 통해 해결하였다.²⁰⁾

동독 경제의 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1948년도의 상황이 자주 비교대상으로 거론되었다: 이를 통해 동독은 서독 '경제 기적'의 선결조건이자 도화선으로 간주되고 있는 화폐개혁에 대한 신화를 자신들의 화폐통합계획 실시를 위한 선전수단으로 이용코자 하였다.²¹⁾

연방 정부 역시 이같은 비교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독일 경제기적의 아버지인

루드비히 에어하르트가 1953년에 발표한 기사 한 편을 정부간행물에 다시 한 번 게재함으로써 그의 지원을 다짐하였다: 이 글에서 에어하르트는 통일에 따른 경제문제들을 논의하였으며, 그같은 상황에서 발생될 문제들을 1948년도 상황에서 그것들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그는 “소련 감독 지역의 통화질서 재조정, 다시 말해 서독 통화체제로의 도입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ebd.).

“양독 간의 경제격차, 특히 생산성 격차는 이로써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 두 경제권 구조가 유사해질수록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균등화과정은 그만큼 조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ebd.:16).

그러나 1953년부터 양 독일 국가 간의 생산성 격차 (이로써 적응과정 상의 문제 역시)가 현저히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여러 기본 여건들이 그 당시와는 양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현 동독의 경제상태는 전후 피해는 없었다하더라도 1948년의 서독 상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그만큼 성공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1948년 화폐개혁 당시와 1990년 화폐통합 당시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948년에 실시된 화폐개혁은 한 통화권의 내부 경제 관계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고정환율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adjustierbare) 환율이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1달러에 대한 D-마르크 환율은 1949년 4.00 DM에서 4.20 DM으로 조정되었다. 반면, 화폐통합의 경우, 이같은 환율적용방법은 불가능하게 되며, 대외경제관계와 관련된 수치 또한 고칠 수 없이 확정되게 될 것이다.
- 서독은 1948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D-마르크 평가절하정책을 펼쳤다. 다시 말해 환율이 구매력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말이다. 그 결과는 수출에 대한 지원과 수입품 가격인상으로, 이는 외세에 의한 성장주도전략 (Strategie des aussengeleitete Wachstums)을 용이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경제기적을 이룬 일본과 한국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Goetz-Coenenberg 1990:34). 반면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통합은 동독마르크 가치의

실질적인 격상을 의미하였다.

- 또 다른 큰 차이점으로서, 1989년의 경우, 경제적 면이나 사회복지 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입장에 있었던 서독에로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이다. 양 지역 간의 생산성 격차는 동독 지역의 취약한 생산자본시설에 그 주원인이 있는데, 이는 서부로의 이주현상을 초래케 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서독의 경우, 화폐개혁 이후 15년 간 동부로부터의 막대한 인력 이주를 감당해 내야만 했었다. 이로 인한 노동력 초과현상은 생산성에 대한 노조측의 허상 (Produktivitaetsillusion; Riese)과 맞물려 타협적인 임금정책의 실시를 가능케 하였다. 반면 동독에서는 인력 부족 사태와 서독과의 임금격차를 이유로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가는 임금인상 요청이 관철될 수도 있는데, 이는 투자와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마지막 차이점으로, 나치 정부와 공산당 치하에서의 명령경제 (Kommando-wirtschaft)만이 실시되었던 까닭으로 현재 동독의 '시장경제적 사회간접 시설'은 1948년도의 서독상황보다 훨씬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의 평가에 따르면, 시장경제 도입은 "동독 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도전으로서, 이는 2차 대전 직후의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더 급격한 구조적 및 인간 행동의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represents a much greater challenge for the GDR economy and requires greater structural and behavioural adjustments than was the case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the Federal Republic" OECD 1990: 49).

2-7. 결 론

동독에 대해 조속한 경제 및 화폐통합을 제안한 콜 연방수상의 결정은 연방정부 여당의 인기를 급상승 시켰을뿐만 아니라, 기민당의 주요 정책목표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결정이 용이해졌던 것은 연방은행과 같은 다른 결정 담당기관들과의 의견을 일치시킬 필요없이 연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행정부의 독자적 관장 하에 처리되었다. 정치적으로도 연방정부의 입장은 유리했었다.

조속한 화폐통합에 대한 제안은 사실 야당인 사민당 측이 먼저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분열되어 있었다.²²⁾ 이 밖에도 야당은 협상이 시작될 때, 이를 저지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첫번째 국가조약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에 연방참의회 (Bundesrat)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사민당은 내분과 통일 반대자라는 오명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 이상 화폐통합을 막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고용주와 노조단체 같은 공공 사회단체들 역시 이 계획을 저지시키지 못하였다. 사용자 측은 “동독의 복지 수준을 하룻밤 사이에 서독 수준으로 인상시킬 수 있는 요법은 없다” (Necker 1990: 65)라고 강조하며, 이 결정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명히 지적하였다.²³⁾ 그러나 이들 역시 화폐통합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노조단체 역시 화폐통합에 찬성하였다. 처음에는 ‘제3의 길’ 지지자들로부터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결국 실리론자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동독이 저임금 지역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1의 교환율을 지지하였다 (v. Beyme 1990; Kuechle/Mueller 1990).

경제학자들의 저항은 여러 저명학자들의 출판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대중성을 얻지 못하였다. 정계에서는 이같은 학자들의 반대에 대하여 “상아탑이라는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 앉아 이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인정, 이를 “연구 자료 상의” 새로운 이정표로 수용할 것을 충고하였다.²⁴⁾ 이 밖에도 연방정부는 화폐 통합에 관한 특별 평가서 작성을 지시, 이를 통해 정부 입장을 굳혀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독일경제연구소 1990).

연방은행은 화폐통합 및 교환율 책정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기는 하였지만, 정부 결정 사항에 따라야 하는 의무감과 결정권 부재로 인해 활동 상의 제한을

받았다. 연방은행이 이같은 패배를 인정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연방은행이 통화억제정책을 고수한다면 독일통일에 따른 경제적 난제들은 보다 더 첨예화 될 것이다.

주) _____

- 1)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간의 화폐·경제·사회 통합 달성에 대한 조약'은 1990년 5월 18일자 연방정부 관보 (Bulletin) 63/1990 호에 발표됨.
- 2) 1990/77 연방통계청 자료에 의한 자체 계산
- 3) Goetz-Coenenberg 1990, P. 22.
- 4) 동독 자료에 대한 통계는 Becher 1990:687, Siebert: 독일연방은행 공보기사에서 발췌 (앞으로는 PA로 인용) 29:5, 서독 자료에 대한 통계는 1989년도 통계연감, p. 565. F.Heinrich: Das schwere DDR-Erbe: Ein veralteter Kapitalstock, in: Handelsblatt, 30./31.3.1990 참조.
- 5) 1989년 제4분기에 서독으로 넘어 간 동독인들은 2십 4만명, 1990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7만 4천명과 6만 4천명이었음 (OECD 1990, P.47.).
- 6) Iring Fetscher in: Heine u.a. 1990: pp. 229-234.
- 7) Der Tagesspiegel. 1990.5.20 P. 2 이하 비교.
- 8) '기민당(CDU), DSU, DA 및 자유당 (DFP, BFD, 자민당)과 사민당 간의 1990년 4월 12일자 연합 협정에 대한 기본원칙', 29a, 29b. 1990년 4월 17일자 Handelsblatt 비교.
- 9) 동독측 역시 이와 비슷한 제안을 당시 드레스덴 시장 Berghofer의 주도 하에 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 회의에 콜 수상과 모드로우 총리도 참석했었다. 이때 4:1의 교환 비율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 10) DAS PARLAMENT 6/1990, P. 1 이하 인용.
- 11) 시기적으로도 유사한 단계적 모델을 연방독일 상공회의소 (BDI) 회장인 Necker (Necker 1990) 역시 제안한 바 있음.
- 12)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회 (Bundesrat)에서 첫번째 국가조약 (Staatsvertrag)이 조인됐을 때의 연설 비교. Bulletin 66/ 90 및 바이겔 연방재무장관의 글 비교: PA 20/1990: P. 1 이하.
- 13) 이 글에서는 지면상 사민당 입장만 기술하였다.
- 14) 연방은행법 (Bundesbankgesetz) 제12조에 의하면, 연방은행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 15) 이는 유럽 화폐통합에 관한 토의 중 나온 표현이다: Monetaristen (동일한 이름의 경제정책 학파와 혼돈하지 말 것)은 조속한

화폐통합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점진적 태환론' 지지자들은 우선 다른 경제정책 상의 조치를 통해 경제통합을 실시한 뒤, 화폐통합을 끝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연방은행은 유럽 통화정책 토론에서도 항상 후자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 16) FAZ, 1990년 2월 15일자, 19쪽.
- 17) 모든 수치는 Mannheim 소재 선거연구단체로부터 제공받음.
- 18) 다음의 자료는 1990년 5월을 기준으로 함.
- 19) 1990년 6월 수치
- 20) 1948년의 화폐개혁은 베를린 장벽을 유발한 도화선이자 양 독일 국가들의 구축을 가능케 하였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통합 실시전의 화폐통합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21) 1948년의 화폐개혁 실시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Hampe (1989년) 참조. 서독의 경제부흥에서 차지하는 화폐개혁의 비중에 대해서는 Buchheim 저서 참조.
- 22) 1990년 5월 22일 연방참의회에서 조약 승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토론에서 바이겔 연방재무장관이 화폐통합 방안의 원조가 사민당이었음을 다시 한 번 인정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 23) PA 27/90: P. 4 및 34/90: P. 6 비교.
- 24) 경제 자문 위원회, 연방 경제성 자문 위원회 및 경제문제 연구소들 앞으로 보낸 경제성 차관 Schlecht 의 서한. 이는 Handelsblatt 지에 발표됨.

3. 화폐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전환과정상의 위기*

3-1. 원인 분석

구동독의 정치적 붕괴와 더불어 경제적 위기가 곧 들이닥쳤다. 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기술하였다. 이는 150년 전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독일이 겪은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였다. 이는 변형과정상의 위기로서, 구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마저 미처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동.서 진영' 간의 진공상태에서 옛것이 와해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동부독일의 유권자들은 물론 서부독일의 위정자들도 점진적인 전환을 원치 않았다. 피할 수 없던 변혁은 과거와의 날카로운 단절을 가져왔다. 세계사를 통털어 이같은 변혁의 예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의 경제전환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평을 듣고 있는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나라들도 자본주의로 전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경제 전문가들과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을 받고 있는 폴란드의 바웬사 대통령조차도 폴란드가 너무 빨리 서방체제에 접근해가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1929~32년의 세계경제 공황과 같이 일시적 현상으로서, 경제구조와 기구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전통적인 경기침체와 작금의 변형과정의 위기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또한 업종별 경기부진과도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그동안 서유럽은 광산업, 제철업, 조선업, 섬유산업 등과 같은 특정업종 내지는 각 산업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경기부진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 이 자료는 Priewe, Jahn/Hickel, Rudolf: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i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Frankfurt a.M. 1991. pp. 56-114 를 전문번역한 것임.

종류의 경기부진은 범위가 제한된 것으로서, 전체 경제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이라는 대 과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경제학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 경제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경제학은 자본주의 구조에 내재하는 업무 수행력과 시장경제를 극구 찬양해마지 않으면서도, 계획경제체제를 - 특히 사회적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 변환시키는데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았다. D-마르크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믿음, 사랑, 희망 만으로는 이 변형과정을 극복할 수 없다. 변화과정상의 경제위기는 옛 경제구조를 계속 파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현존 사회주의 대신 경제취약지역을 만들어 놓을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국경의 완전개방, 세계시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구동독 경제의 급작스런 자유화 및 준비없이 실시된 새통화의 도입으로 인해 동부독일의 기업들은 시장경쟁이란 충격을 겪게 되었다. 개별업종, 개별기업 및 각 생산제품들은 밤새에 세계시장제품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가격지원제 및 물품세(Produktabgabe)가 폐지되고, 복잡한 새 조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거대한 국가기구의 유지 재정원이 더이상 과거규모로 보장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상응 정부행정기구가 축소됨과 동시에 연방재무장관의 관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들은 다음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

1. 동부독일 제품의 사용가치는 서부독일 및 외국 제품들의 사용가치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품질불량, 수 십년 간 억눌려 있던 소비욕구, 소비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막대한 양의 세분화된 제품공세의 기습적 효과 등이 눈에 띄이기 시작하였다.
2. 소규모에 달했던 구동독의 업종구조는 취급품목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품질 불량, 제품공급의 독점화 그리고 제품들 간에 다양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품목을 자체 생산할 수 있었던 '완전한' 국민경제로

특징지워졌다. 동독경제와 국제경제간의 분업협력관계 역시 부진했던 편으로 이는 주로 경제기술면에서 재개발 상태에 있던 COMECON 국가들과의 협력에 치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독의 전 산업구조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소규모 경제구조나 세계 시장으로 뻗쳐있는 대규모 경제구조는 구동독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3. COMECON으로부터의 탈퇴와 이에 따른 DM으로의 전환은 전적으로 소련과의 교역에 주력하였던 동독경제의 수출구조를 위축시켰으며, 소련경제의 붕괴와 소련내 불안정한 정세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상당한 부분에 달했던 “비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위해 국가의 막대한 보조가 있었으며, 이 보조가 중단되자 비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동독의 대외경제구조는 어차피 구시대적인 것으로서 국제경쟁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것이었다.
4. 태환이 불가능했던 동독통화를 1:1의 비율로 교환시킴으로써 동독마르크는 실제 가치면에서는 약 3배 가량, 생산성면에 있어서는 약 2배 가량의 상승을 보게 되었다. 반면, 한 자주적인 국민경제가 급격한 경쟁상태 돌입에 직면하여 취하게 되는 통화정책상의 “정상적인” 반응은(대부분의 동구라파 국가들에서 볼 수 있었던)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로 인해 수출력은 강화되는 반면 수입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화폐통합 이후, 이론상으로는 통화의 가치하락 대신 생산성에 상응한 제품의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그 결과로 동독제품의 경쟁력이 확보되었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는 급격한 임금인하를 초래하여 그 다음 단계로는 집단이주란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부독일의 경제를 서부독일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는지가 비교적 분명해졌다 : 통합된 경제권 및 국가영역 내에서는 자유왕래로 인해 서로 연결된 단일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바,

이는 자율적 시장법칙에 의하여 임금구조의 점진적인 형평을 빚어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한시적이거나 전적으로 시장의 영향력권 내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노동력의 이동에 의해 경제구조가 와해되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보다 임금부터 우선적으로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 시급해지게 된다. 물론 구조변화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화폐통합에 따른 통일은 결과적으로 파괴적 경쟁(ruinoeser Wettbewerb)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파괴적 경쟁은 점진적인 적응과정에서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 구동독의 주요 경제분야를 붕괴시키고 있다. 경제정책이 화폐 통합에 따라 예정된 정면충돌을 총력을 기울여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구조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부분적으로 회생 가능한 동독경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성급한 화폐통합과 경제를 서둘러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는 물자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의 통제란 부산물을 낳게 되었다 : 경제구조 전환, 인간의 습득능력 및 변혁의지는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압력, 이주, 임금적응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폐통합 1년 후에 나타나고 있는 파괴적 결과는 그리 놀라운 것이 못된다.

연방정부, 신탁청 그리고 신설5개주의 관련 정치인들은 1991년도 파국적인 동부 독일의 경제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몰락한 동독 공산당 국가가 남긴 유산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과실과 태만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모든 것에 대한 죄를 짊어질 제물이 찾아지게 되었다.

연방경제장관은, 화폐통합이 결정되었던 1990년 봄까지도 동독의 경제가 어느 정도 부패되어 있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제성의 전 차관이었던 오토 슐레히트(Otto Schlecht)는 “동독경제가 실제로 어느정도나 부패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¹⁾”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독 경제 실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 다만 연방정부는 그 당시 ‘국가의

이익' 과 시장법칙만을 선호, 현실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무시하였다. 다른 한편, 책임을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에만 전가, '귄터 밀탁(Guenter Mittag : 동독경제담당 정치국원 : 역자 주)의 유산' 을 과소평가 하려는 자들도 있다.

동부독일의 변형 위기에 대한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

첫째, 구동독 국민경제의 상태

둘째, 성급한 화폐통합과 서독수준으로의 도달을 위해 사용된 통합조약에 근거한 충격요법

셋째, 수많은 오차와 실수로 점철된 연방정부의 통합 및 경제정책. 이 밖에는 재정정책, 지역구조정책과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시장정책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탁청의 정책 역시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정책에 속하는 바, 이는 동부독일 기업들의 구조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신탁청은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매체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바로 신탁청에서 사실상의 기업청산과 탈산업화 정책이 집행되었다.

3-2. 동독경제의 실태

80년대 말의 동독경제 실태를 놓고 수많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서독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다수의 국제연구기관들이 수십년전부터 동독경제를 연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더욱 특기할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물론 동독측이 제시한 통계자료가 극히 빈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동독정부는 가급적이면, 동독 경제를 비밀에 붙이려 하였다. 이 밖에도 80년대 통계는 관계자들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듯이 '미화' 된 것이다²⁾. 어쨌건 이제부터는 동독경제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도표 III.1 참조).

도표 III.1 : 1980~89년도 동독 및 서독의 총 국민경제 수치(1)

	동	독	서	독
○ 1980~89년간 국내총생산 성장율	3.8%		1.9%	
○ 국내 최종 소비율 (개인소비, 국가소비, 총투자)	2.6%		1.4%	
○ 개인소비 성장율	3.2%		1.5%	
○ 총시설 투자설비 성장율	1.9%		1.2%	
○ 1989년도(1980년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총투자율(2)	25.6% (31.1%)		22.5% (23.5%)(3)	
○ 1989년도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초과율	2.9%		4.1%	
○ 1989년도 국내총생산(단위 10억 DM)	3,532억 동독마르크		2조 2,356억 DM(4)	
○ 1989년도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	21,539 동독마르크		35,827 DM(4)	
○ 1989년도 1인 취업자당 국내총생산	36,796 동독마르크		80,588 DM(4)(6)	

(1) 이른바 “비교가격” 인 동독마르크 단위로 계산됨.

(2) 기존 변동사항을 제외했을 경우 : 1989년 23.3%

(3) 국내총생산 기준

(4) 현행가격 기준

(5) 1980년도 가격 기준

(6) 취업자 일인당

[자료출처 : 연방통계청 : 동독 사회생산고 집계, 1990년

Wiesbaden, 24쪽 : 자체계산 : SVR, Jahresgutachten 1990/1,

도표부록]

3-2-1. 노동생산성

동독경제의 노동생산성(취업자 일인당 사회 실질생산고 내지는 산업생산고) 평가는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 첫째, 서방통계와 비교할 수 있는 사회생산고 내지는 산업생산고를 파악해 냄에 있어 방법 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 동독마르크가 적용되는 동독제품들을 DM으로 환산함에 있어 적정 환율책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로, 동독제품과 용역사업은 질적차원에서 국제수준과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서독 대비 동독 국민경제의 생산성은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30%에서부터 80%까지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최근 연구(1991년)에 의하면,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49%로 평가되는데, 이는 연방 정부가 1987년 발표한 '국가 현황자료'의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 1990년 연방 통계청이(구동독 중앙통계국과의 협력 하에) 서방의 방법을 도입하여 집계한 80년대 동독 국내총생산은, 동독마르크 대 서독 D-마르크의 환율을 1:1로 가정 하였을 경우 서독의 46% 정도에 달하고 있다.³⁾ 동독마르크의 구매력 또한 DM보다 낮았기 때문에 실제 동독국민경제 생산성은 46%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DIW의 조사에 의하면, 산업부문(제조업)에서의 생산성은 서독의 53%에 달하는데, 이는 1970년(45%)과 비교하여 약간 상승한 수치이다(도표 III.2 참조).⁴⁾ 생산성은 업종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일부 업종은 이보다 훨씬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자기술, 정밀공업, 광학' 업체의 생산성은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DIW 집계에 따르면 80년대 중반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COMECON 국가들에 비해 20% 정도 높았던 편으로, 이는 소련의 수준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였다. 동독의 생산성은 체코슬로바키아 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었으나, 폴란드에 비해서는 60% 높은 수치였다.

반면, 동독은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 부문에서는 다른 생산성 비교부문 보다는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전체주민에서 차지하는 취업인구 비율이 서독보다 높기 때문이다 : 동독마크 대 서독 DM 환율을 1:1로 잡았을때 1989년도 동독의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 은 서독의 60%에 달한다(도표 III.1 참조). 이러한 수치는 여성취업율(그리고 일반화된 고령자 취업)이 높는데 기인한다. 1989년도 주민 1인당 개인소비는 - 동독마크 대 서독 DM의 환율가를 1:1로 하였을 때 - 서독이 67%에 달한다.

이로써 생산성 비교에 있어서 정확성의 한계를 재차 확인하게 된다. 자동차, 투자제품, 소비제품, 식품 또는 건축물 등 동독제품들의 거의 대부분이 - 불품 없는 'Styling' 디자인, 포장부문 등에서의 격차는 차지하여도 -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독의 내수시장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완전 차단되어 있었던 관계로 제품들의 질이 낮고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판매될 수 있었다. 사실 이 제품들은 국제시장에서는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았으며, COMECON 국가들에서만 취급되었다. 그 규모와 정도에 대해서는 추정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와 동독을 방문했던 주의깊은 서방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독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다.

도표 III.2 : 동독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서독 기준)

	1970	1980	1988
화학, 광유, 합성수지, 고무(1)	34	45	50
금속제조 및 생산	39	44	35
암석 및 토양	39	41	42
철강, 기계, 차량건설(2)	43	46	56
전자기술, 정밀공업, 광학	41	47	63
섬유업	53	56	56
경공업	54	56	57
식품 및 기호품 산업	56	45	43
제조업(3)	45	48	53

(1) 칼리 및 암염 채광, 기타 광산업 포함

(2) 금속가공 및 제조 포함

(3) 일부 광산업 포함

[자료출처 : B.Goerzig, M.Corning, 동독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

In : DIW 구조연구보고서 1991/121호, 27쪽]

3-2-2. 투 자

동독의 투자활동에 대한 해석 또한 간단치 않다. 1989년도 투자비율 - 국내 총생산에 대한 총 명목투자 비율(아파트 건축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 포함) - 은 25.6%로써, 이는 서독보다 약간 웃도는 수치이다(도표 III.1 참고). 그러나 이는 1980년(31%)과 비교하여 급격히 감소된 수치로써, 80년대 이후 동독경제의 생산력 감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DIW 자료에 의하면, 국가소득에 대비한 생산분야에서의 투자비율은 1970년 16%였던 것이 1988년에는 10%로 급격히 떨어졌다.⁵⁾ 특히 취약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에너지 경제(갈탄광산업, 석탄 화력 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전체 산업투자의 1/3에 해당된다.⁶⁾ 이 밖에도 거액의 자금이 Megabyte-Chip 개발과 같은 개별 유망 투자부문이나 아파트 건설부문에 집중 투자·사용되었다.⁷⁾

1987년도 투자액의 절반가량이 남아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이미 폐쇄된 산업체 생산시설의 수리비용으로 지출되었다.⁸⁾ 광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 시설 평균 사용시간(건축기간 포함)은 26년이다(서독은 18년).⁹⁾ 상당부분의 시설들이 완전히 낡아빠져 벌써 오래 전에 대체되었어야 하는 것들이었다(1980년에는 시설들의 20% 정도가 이미 해당되었다). 산업체 시설의 21%가 20년 이상 된 것들이었다(1989년). 반면, 서독기업의 경우는 약 5.4%에 그치고 있다(아파트 제외). 서독의 경우, 10년 미만의 시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인데 반해, 동독은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¹⁰⁾ 보수 및 납품상의 차질로 인한 빈번한 휴업상태는 공장 가동력을 떨어뜨리고, 업무 결손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3-2-3. 초과 인력

IfO 연구소의 집계에 의하면, 기획·운영 미비로 인해 7% 가량의 인력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서방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이 밖에도 사내 유치원에서부터 사내 스포츠단체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과 정치적

과제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수는 순수기업 업무를 이행하는 종사자들의 수와 동일하였다. 물론 다양한 업무활동들을 이처럼 구분짓는다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이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회사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해졌다. IfO 연구소의 조사에 따른 '은폐된 실업', 다시 말해 이 두 업무 분야에서의 초과인력은 전체취업자의 15%(140만명)에 달한다.¹¹⁾

3-2-4. 연구 잠재인력

현대 국민경제에 있어서 경제능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연구 및 개발에 따른 잠재력(Forschungs-und Entwicklungspotential)이다. 동독의 R & D 잠재력은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잠재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했을 뿐이다. 학자들은 제대로 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국제적 과학·기술 교류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전공과 관계없는 것에 투입되곤 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1989년도 R & D 지출액은 서독과 동일한 2.8%였다. 19만 6천여 R & D 인력 중의 1/3가 경제분야에 종사하였다. 제조업체 종사자 1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R & D 인원은 1989년 28명이었다(서독은 34명). 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기업과 계획경제의 그늘에서 이룩한 연구성과는 경탄해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독연구의 강점은 혁신적인 개발에 있다기 보다는 과거 일본과 현재 일부 아시아 주변국들에게서 보여지는 모방과 새기술의 혼합에 있었다.¹²⁾

화폐통합 일년 후, 8만 6천여 산업체 연구인들 중 1/4만이 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년 사이에 동독 기업, 대학 및 학술연구소 R & D 연구원에 대한 인원 감축은 약 70% 정도에 달하며, 10%는 이주하였다.¹³⁾ 분명한 사실은, 동독의 연구잠재력이 보통수준 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기술혁신에 불리했던 한정된 경제체제와 정치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변혁'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보통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능력을 국제수준의 척도로 재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동독 공산당 수뇌부는 교육계획 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학발전의 자율화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기술혁신 과정에 있어서 학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이들은 전문직 근로자 육성에만 주력하였다. 1984년 전체학생 중 10.8%만이 Abitur를 수료하였으며(서독은 28.5%), 주민 1천명 당 대학생 수는 서독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다른 COMECON 국가들에 비해서도 동독의 대학생 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 더군다나 대학졸업자의 64%가 사무/행정분야에 종사한 반면(서독에서는 12%), 연구·기술분야에는 23% (서독 43%) 만이 투입되었을 뿐이다¹⁴⁾(도표 III.4 참조). 동독의 경제 및 교육정책은 전문직 근로자 중심의 생산구조에 주력, High-Tech 생산부문은 소홀히 취급하였다. 도입 및 성장단계에 있는 동독제품들은 23% 밖에 안 되는 반면, 침체 및 긴축단계에 있는 제품들은 67%에 달한다. 서독의 경우 이에 대한 비율은 48:52이다.¹⁵⁾ 만약 동독이 국제시장에 진출해 있었다면, 개발도상국 내지는 과거의 저개발 산업국들과의 경쟁관계에 있었을 것인 바, 이러한 경쟁관계는 저임금과 이에 상응한 소비수준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동독은 70년 중반부터 첨단전자산업 부문과 관련된 새로운 기초 테크놀로지를 습득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단지의 Ford 회사식 집단생산기술이 주도를 이루었다. 동독 공산당 수뇌부는 많은 경비를 투자하여 독자적인 첨단전자기술 개발에 진력하였으나, 결과는 기껏해야 우물안 개구리식의 해결책(Inselloesung)에 불과하였다. 동독은 1988년까지 시범경제사업인 Megabit-Chip을 만들어 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대량생산활동에 있어서는 국제수준에 비해 4~6년간 뒤진 제품에 불과한 데다, 개발비용 또한 엄청나게 높았다¹⁶⁾. 데이터 뱅크와 시스템 전신망 또한 낙후된 상태였으며, Software 보다는 Hardware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COMECON 국가들 간에 개발협력체제가 없었던 것 같다. 다른 한편 COCOM 규정으로 인해 서방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불가능하였다. 첨단전자산업의 미개발은 전 산업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비교적 기술개발이 잘 이루어 졌다고 하는 기계건설업종에 대해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기술 상의 낙후는 점점 더 심화되었다. 실례로, 투자 및 소비 제품에 있어서의 에너지 소비는 서독의 30~50% 이상이었다.¹⁷⁾ 가장 낙후된 분야는 일반 사회간접시설 부문으로서, 교통 및 통신·통화 분야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제대로 작동되는 전화시설이 효율적인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3-2-5. Management

동독경제의 또다른 취약점 중의 하나는 기업내 Management 인력의 부족이다. 비록 많은 수의 기획운영기구가 있었으나 - 중앙기관과 구역 및 지역 행정·기획 운영기관 종사자는 3만 2천 5백여명에 달했음¹⁸⁾ - 이는 서방의 Management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앙에서 기획운영된 계획경제는 기업별 자체 Management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장애요인이었다. 동독경제가 이러한 의도적인 기획운영과 극단적인 사무행정상의 지시제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나마 가동될 수 있었던 것은 '2진' Management의 역할 덕택인데, 이들은 유동성 있는 조직, 실리적 운영, 그리고 즉흥적인 대처방안을 펼쳐나가는 등 실제 상부의 지시를 여기면서까지 살림을 꾸려 나갔다 : "중앙계획경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자라면 대부분의 기업업무 활동들이 상부에서 지시된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다".¹⁹⁾ 이들 중간단계 Management 들의 능력은 동독경제의 중요한 잠재력에 속하나, 이러한 잠재력이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거의 적용되지 못하였다.

3-2-6. 국제경쟁력

대외무역관계 자료의 대부분이 비밀사항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대외 교역구조에 대한 고찰은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최근 DIW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동독경제와 대외교역 관계는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동·서간 수출을 비교하기 위해 대체루블에 대해 4.67 동독마르크가 적용되었으며, 4 동독마르크 대 1 DM이라는 수치상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후자는 '외화소득' (외화수익)에 소요된 경비(공장가격 기준)의 비율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동독의 수출 및 수입비율 (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출 및 수입률)은 약 25%(1980)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DIW의 조사에 따른 1988년도 수출비율은 39%로써, 이는 서독(32.4%)²⁰⁾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도표 III.3 참조).

이러한 수출입 비율은 동독과 같은 소국가로서는 적은 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자주경제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동독에서는 국가의 대외교역 독점 및 대외무역 정책을 통해 보호주의 및 중상주의가 실시되었다. 수출의 44%가 COMECO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1/3이 소련으로 수출되었다.

이 교역은 상호교역 협정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동독은 주로 원자재, 기초 자재 및 제조품을 수입하였으며, 투자 및 소비제품을 수출하였다. 총 수출의 절반이 서방을 대상으로 하였는 바, 이 중 대서독 수출은 21%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 대 소련 및 서독 수출이 총수출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대서방 수출과 더불어 동독의 국제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로써 동독경제의 실제 경쟁력이 판명되게 되었다. DIW 조사에 의하면, COMECON 국가들을 상대로 한 수출가는 생산비용, 생산공과금(매상반출)과 약간의 수익 정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대서방 수출에서는 이보다 수출가가 낮았다고 한다. 4:1의 환율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서방 수출의 40%가 국내매상 수익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는 특히 제철제조업, 석유제조업, 일부 화학산업, 전자기술산업 및 목재가공업 분야에서 심하게 드러났다.²¹⁾

80년대 들어 이들 분야에서 공격적인 수출전략이 펼쳐졌다 : 취약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을 꾀하기 위해 국가의 보조하에 보다 많은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방에 수출되었다. 1985년에만 해도 1 Valuta-마르크(즉 1 DM)를 벌어들인데 든 국내비용이 2.90 동독마르크였는데 반해, 1989년에는 4.40 동독마르크로 상승하였다.²²⁾ 그 이유로서, 한편으론 80년대 초부터 급격히

증가된 동독의 대외부채와 1981년 폴란드의 경제불황 이후 동독에 대한 외국 은행들의 용자제공 기피현상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첨단기술제품 생산을 위한 막대한 수입증가와 사치성 소비품의 수입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알렉산더 샬크-골로드크브스키가 관장하였던 외국 소재 동독 대외교역 회사인 Koko 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권터 밀탁의 진술에 따르면²³⁾ Koko가 비합법적 수단까지 동원하여 벌어들인 외화는 연간 15~30억 DM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1988년 대서독 수출고가 약 70억 DM인 것에 비추어 볼때, 엄청난 금액임에 틀림없다.²⁴⁾ 본 서 제II장 2에서 언급한 쓰레기 수입을 통해서만 연간 10억 DM을 벌어들였다.

동독 마르크 대 DM의 환율을 4:1로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의 대 서방 수출제품들이 전혀 시장성이 없었음이 이로써 분명해졌다. 이미 1989년 말, 1990년 초에 이 사실이 밝혀졌으며 연방정부도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독 산업의 경쟁력을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진 막대한 공과금 부담을 참작해야 한다. 기업에서 지불해야 하는 여러 공과금들이 바로 국가예산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이 공과금은 매상고의 29%에 달하였으며, 임금비용보다 4배나 많았다.

다른 한편으론 산업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을 감가상각해야 한다. DIW 추계에 의하면, 공과금을 폐지할 경우, 산업제품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한다(선급부원가제품에 대한 공과금 역시 공제하였을 경우임). 이로써 많은 산업업종들이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획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⁵⁾ 이 때 물론 제품의 품질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임금 및 임금부대비용 역시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단일화된 독일노동시장과 법적으로 규정된 높은 임금부대비용에 당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선 물론 현실적이지 못한 것임에 틀림없다.

80년대 중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였던 동독 제품들의 비중은 약 1.3% 정도였던 반면,²⁶⁾ 서독제품은 10~11%에 이르렀다. 이로써 동독은 세계순위에서 16번째에 해당되며, COMECON 국가들 중에서는 소련 다음인 2위를 차지하였다. 80년대 말

동독의 주민 1인당 대외무역수지(수출+수입)는 서독 시장의 40%에 그쳤다.

3-2-7. 국가 부채

취약한 동독산업체의 경쟁력과 막대한 '외화수요'로 인한 대외부채가 급격히 증가, 80년대에 들어서는 급기야 1,520억 동독 마르크에까지 달하였으며, 반면 대외 청구권은 360억 동독 마르크에 그쳤다. 통화 개혁 후의 실제 대외부채는 약 200억 DM에 달했으며, 이에 덧붙여 국내부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는 바, 이 사실은 극비사항에 속했었다. 동독의 마지막 재무장관은 1989년도 국가부채를 1300억 동독 마르크로 발표하였는 바, 이에는 서방국가들에 대한 부채 650억 동독 마르크가 포함되어 있었다.²⁷⁾ 국내 부채증가는 특히 소비제품에 대한 보조비 증가(1988년도 국가지출의 18%)와 국민 경제에 대한 지원에 기인한 것이다. 이같이 막대한 국가예산이 보조비 - 80년대 들어 소비자 가격 지원은 3배나 증가하였다 - 로 지출되는 바람에 기술혁신 및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서방 국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독의 국가부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문제는 서방국에 대한 부채로써, 이는 80년대 들어 보다 더 심각해졌다. 대외 부채 삭감을 위해 그렇지 않아도 감소되고 있는 외화를 소모시켜야만 하였다. 동독 해체 이후 고위급 동독 경제정책담당관들과 매니저들은, 동독의 지불이행불능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할만큼 대외부채를 심각하게 여겼었다.

도표Ⅲ.3 : 1988년도 동독의 대외교역

	수 출 (단위 : 10억 동독마르크) Valuta 현재가치	비 율	수 입 (단위 : 10억 동독마르크) Valuta 현재가치	비 율
총 수 출	135.3	100.0	141.7	100.0
이 중 :				
COMECON 국가 :		43.8		40.4
- 소 련		24.8		24.3
- 체코슬로바키아		5.8		5.0
비사회주의 국가 :		52.1		54.8
- 서 독		20.8		17.6
- 프랑스		4.3		3.9
- 스웨덴		3.0		2.1
- 오스트리아		1.6		5.2

	동 독	서 독
1988년도 수출율	39.1(1)	32.4(2)
1988년도 수입율	40.9(1)	26.6(2)

(1) 수출/수입은 국내총생산(단위 : 동독마르크)에 대한 동독마르크 Valuta 현재가치 기준

(2) 수출/수입은 국내총생산(단위 : 서독마르크)에 대한 현행가격 기준

[자료출처 : B.Goerzig, M.Gorning, 동독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

In : DIW 구조연구보고서, 121/1991.17쪽, 52쪽]

3-2-8. 후진성의 원인 : 제도 부실

구동독은 국제수준의 기술발전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적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쇠퇴한 산업국가였다. 동독의 경제구조는 정도상의 차이만 있었지 경직된 상태였으며, 산업분야와 용역사업분야를 발전시킬 구조개혁의 여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88년의 동독 경제는 60년대 서독의 경제구조와 비교할 수 있는 바, 일인당 수입에 있어서도 동독은 서독에 비해 20~25년 정도 뒤쳐져 있었다.

그렇다고 동독은 일부 주제넘는 서독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도상국이나 '문턱 경제국' (Schwellenland)은 아니었다. 일인당 수입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한국,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개도국들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동독의 산업전통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전문직 근로자 분야에서는 선진 공업국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높은 기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무자격 종사자 비율은 5.4% 밖에 안 되었는데, 이는 서독에 비해서도(16.1%) 훨씬 낮은 수치이다. 또한 전문직 근로자와 장인 - 전문직 자격자의 비중은 서독보다 훨씬 높았던 반면, 대학졸업자의 비중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미미하였다 (도표 III. 4 참조).

도표Ⅲ.4 :

1988년도 동.서독의 전체경제와 산업분야에서의 직업교육 및 활동분야 구조

	서 독 동 독		서 독 동 독	
	전 체 경 제		산 업 분 야	
직업교육 비이수자	16.1	5.4	17.4	6.0
직업교육 이수자	53.6	61.0	57.6	66.1
장인 및 전문직 자격 이수자	16.7	23.3	16.3	20.6
대학졸업자	13.5	10.3	8.7	7.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제 조	34.9	32.9	56.5	47.2
연구/기술	5.4	4.1	8.0	5.4
운 송	5.4	9.6	4.8	7.6
상 업	11.4	6.7	7.3	2.2
가 계(Hauswirtschaft)	3.9	2.0	1.6	0.9
사무/행정	23.6	30.8	16.7	31.1
운영/자문	3.2	4.3	3.8	4.4
교육/보육	12.2	9.6	1.3	1.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출처 : B.Goerzig, M.Gorning, 동독의 생산성과 경쟁력. Berlin, 1991. 42쪽]

이같이 동독의 경제개발 상태가 서독보다 훨씬 뒤쳐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제도면에서의 개발 여지는 완전히 고갈되었는가? 아니면 체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잠재개발성을 발굴해 낼 수 있었는가?

실사 동독 경제의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동독의 출발조건이 서독보다 훨씬 열악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²⁸⁾ 동독의 직접 전쟁피해는 서독에 비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으나, 소련 주둔세력에 의한 시설 철거는 극심하였다. 산업분야에서의 공장해체율은 26% 정도로 추정되었다. 1945년 5월과 6월에만 460여개의 베를린 회사들의 시설들이 분해되어 소련으로 '이전' 되었다. 게다가 아데나우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동독과 서방의 주요 납품업자들과의 사업관계가 단절되었다. 반면 서독은 서독 연방정부의 서방적응 정책과 마셜 플랜, 그리고 막대한 미국의 직접투자의 도움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세계최고인 미국의 기술수준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었다.

반면, 동독은 지리학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련세력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동독의 수뇌부들도 기꺼이 소련의 지시에 따랐다. 전쟁전까지만 해도 별 차이가 없었던 일인당 GNP는 1950년에 이미 서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었다. 게다가 동독주민의 약 10%인 190만명이 50년대에 서방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이 고급 전문인력들이었다. 반면 50년대 서독의 주민 수는 약 5백만명이 증가하였는 바(10% 증가), 이로써 고급 잠재노동력도 증가하였다.²⁹⁾ 그 당시에 이루어진 수준 차이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 밖에도 GNP 대비 군비지출은 서독의 2배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항이 동독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동독 경제가 충분한 역동성을 보유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경쟁의 부재'와 경제 형평 자율공간(oekonomische Dispositionsspielraeume)에 입각한 개인 이니셔티브의 결여에 있었다. 대부분의 제품업자와 용역사업자들은 국민 경제기획의 지시에 의해 독점적인 사업활동을 펼쳐 나갔는 바, 이들은 국내의 다른 경쟁상대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었으며,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대외

무역독점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다. COMECON 국가들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일반 대외교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산된 제품을 처리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일부 기업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가며 불량 제품을 만들어 낸다거나, 신개발품을 생산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처벌규정이나, 매니저들과 종업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만한 대책이 서 있지 않았다. 제품가격이라는 것도 대부분 정치적 의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실제로는 물질적 자원(인원 분배, 자재, 기계 등)에 대한 수치만 집계되었기 때문에 쓸만한 소요경비계산서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대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제품가격의 자체 물가조정역할을 중앙 집권적 사무행정이 대신 맡았다. 동독의 계획경제는 정도의 차이뿐이지 자연 현물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자원의 분배가 자금과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자금, 시장 및 자본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자금, 시장 및 자본의 법칙에 의한 물가조정장치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해 보일 수 없었다. 이 조정장치가 사회복지와 환경차원에서 어느 정도나마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공공자금, 일부 에너지 경제 분야와 같은 분야에서는 물가조정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물가조정기능은 현대의 기술혁신적 분업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이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밖에도 중앙은행과 일반시중은행으로 구분되는 2원적 은행제도의 포기는 화폐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가치를 떨어 뜨렸다.

동독 경제의 역동성 미비의 두 번째 원인은 국내·외적으로 노동의 분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동독은 소국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제품품목을 자체 생산하였다. 상당한 분야에 있어서 평균 기업규모는 최적 규모 이상이었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의 수는 서독의 배에 달했다.³⁰⁾ 개별 업종에서는 잉여제품들이 수출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는 동독 자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또는 아예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들을 수입하는데 사용되었다. 방대한 생산품목은 제품의 규격화, 다양성의 미비, 모델의 단조로움이라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는 바, 이는 특히 투자제품 산업에 점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써 생산성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독점업체로서의 기업은 규격제품을 생산하면서, 이러한 대량생산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필요 선급부원가 제품들도 '한 지붕밑에서' 생산되었다. 중앙에 의해 관리·운영된 126개의 콤비나트와 지역단체에 의해 운영된 96개의 콤비나트들은 과대한 생산설비와 인력을 보유한 '공룡'들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규격화된 제품의 대량생산면에서는 그런대로 장점이 있었으나, 유동성, 신속성, 제품의 다양성 및 급속한 제품혁신이 중요시되는 '후기-포드주의적' 생산력 발전과정의 시대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였다.

이 밖에 소국가인 동독은 양 진영 사이에 끼여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다. COMECON 내에서는 상호주의와 중앙집권주의 때문에 적절한 국제적 노동분업화를 이룰 수 없었으며, 서방과의 노동분업화는 동독의 전체 경제 체제가 뒤바뀌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였다. 물론 '냉전' 시절 서방의 수출 금지 정책과 그 후의 COCOM 명단에 의한 동구로의 기술 수출 금지조치가 동독으로 하여금 국제적 노동분업화에 대해 아예 등을 돌리도록 역작용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동독이 겪게 된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경제적 고립에는 서방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동독 경제의 세 번째 문제는, 거대한 중앙행정주의였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와 경제를 중앙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70년대 말 구축된 거대한 콤비나트를 통해 종합운영(Kombinationsleitung)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는 바, 실제로는 중앙집권주의만 거대화시켰는 바, 그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콤비나트들을 관리하기가 보다 더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기획·설립된 산업계획이 80년대 초에만 해도 '단지' 80 여건에 그쳤으나, 80년대 말에는 200건으로 증가하였다. 사소한 결정권조차도 상부로 '위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상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운영되었다.

정치·경제의 중앙집권주의, 이로 인한 사회 정치·경제에서의 다원론과 경쟁의 부재는 기업, 연구인, 개인의 주도성에 제동을 걸었으며, 오착에 대한 수정 또한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체제는 사회적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을 옳아매는 사슬이 되었다. 공개성, 자유의사교환, 민주주의라는 생산력은 금지사항이 되었다. 장기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독재에 의해서는 결코 경제활동이 역동적으로 펼쳐질 수 없음이 당연지사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동독경제몰락의 3대 원인들은 경제제도상의 구조에 기인한 것들로서, 그 체제 자체 내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였다. 집을 새로 단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을 새로 지어야 하였다. 따라서 동독 경제는 개혁불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계획경제의 범위내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었던 제도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임의적 결정, 기본 자재품에 대한 과도한 보조책, 환경 오염, 구건물 방치, 중소기업 도태, 자국 갈탄을 국가 에너지원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일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샬크 - 폴로드코브스키 경제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 바, 이들은 결국 피폐한 정치 제도의 결과였다.

과거 수십년 간 이어 온 동독의 경제정책상의 그릇된 발전과정은 생산성을 떨어 뜨리고 경제를 경직시켰는 바, 화폐통합에 따라 갑작스런 경쟁상태에 처하게되자 단시간 내에 그 실상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1990~92년의 경제변형위기 상태를 야기시켰다. 물론 20년 정도 낙후된 경제가 수년안에 만회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발전추세와 결과가 증명하듯이 서독경제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제도상의 잘못과 제도자체 내의 결함들을 1989/90년 당시 서독 위정자들이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이들은 이러한 결함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놓쳐 버렸다. 따라서 이전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었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독일의 '현존 - 사회주의'의 멸망을 '현존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은 동독 경제의 결합을 강조하면서도, 1천만 동독 종사자들로 구현되는 거대한 경제개발잠재력을 동독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였다. 물론 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는 장기적이고 신중한 정책이 요구된다.

3-3. 화폐통합

3-3-1. 통화충돌과 그 결과

국경의 개방과 베를린 장벽 붕괴를 서두로 한 양독간의 결합과정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동·서독간 빈부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일부 주민들은 서독으로 이주, 서독 경제체제에 동참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서독의 노동시장과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었으며, 동독 전문인력들의 대거 이주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이유에 따른 이주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국경이 개방되고 동·서간 왕래가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취해질 수 있는 방법이란 동독을 취업과 수입이 보장되는 새로운 산업입지로 구축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혁은 처음부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한편으론, 구동독 경제제도의 잔재를 청산해야 함과 동시에 오랜 시간을 요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중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 시간에 쫓기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독일통일에 있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바로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속도의 사회경제의 형평개선은 단순히 경제이주민들이 서부독일로 대거 이주할 것을 우려해서 만은 아니었다. 연방정부를 선두로 한 위정자들은 당시 서독의 통화 및 경제제도 도입, 즉 동독 마르크와 동독 시장을 인수함으로써 서독의 수입 및 생산수준을 동독에도 달성시킬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실현되지 못한 기대는 혼란된 좌절감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로써 선거를 노린 '선거표 확보' 정책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데 있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제대로 일을 추진코자 한다면, 한편으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론 통일을 성사시키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딜레마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만 했었을 것이다.

국경개방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 '현존하는 동독의 경제 및 사회구조를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모델을 적용시켜 변경시켜야 하는가?'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상이한 모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첫째는, 동독을, 정치·경제의 변화에 대한 향방과 속도를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국가로 존속시키는 방법이었다. 이와 관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독 모델의 도입 대신 -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이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제3의 모델' 을 모색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지식인들이 이 '제 3의 모델' 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나, 동독의 정치·경제 정책의 실패와 이로 인한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제 3의 모델' 이 안고 있었던 정체상의 애매함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는 결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들테면, 이 모델이 적용되었을 때 시급했던 서독으로부터의 공공재정보조와 개인자본의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지는 당시로선 그 전망이 너무나도 불투명하였다.

두번째 모델로써, 국경 붕괴 후 서독 정치가들은 서독의 경제·사회제도를 완전 도입하여 동독의 정치·경제 및 기관을 해체시키는 방법에 몰두하고 있었다. 1991년 5월 18일 서독 및 동독 정부에 의해 체결된 '통합조약' 에는 공동 경제질서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 와 D - 마르크 통화체제 도입 (제1조)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구동독의 변혁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독의 경제·정치제도를 따르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구동독 변혁에 있어서의 실제 정책상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상의 기본입장 하에 학문과 정치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것은, 단지 시기상의 문제였다 : 즉, 서독 경제제도를 구동독에 도입·구축시키고 경제·환경상의 구동독 잔재를 청산하는데 있어 어떠한 순서를 밟아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론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경제 및 화폐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경제, 사회, 환경통합과 더불어 결국 서독의 경제·통화제도가 동독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이 때 강조되어야 할 것은, 경제개혁이 완전히 실시되고 난 뒤, 동독 마르크가 완전 태환이 가능해 졌을 때, 통화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단계적 경제·통화정책의 실행을 보장코자 하였던 이러한 점진적 모델은 J. Delors가 제시한 EC 경제 및 통화 통합의 방안과 비교할 수 있는 바, Delors는 단계적인 경제·화폐 적응과정을 통해 단일 통화권이라는 ‘작품’을 완성시키고자 하였다.³¹⁾ 학계와 정부기관에서 제시한 단계적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으며,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간략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러한 단계적인 방법과 완전히 상반되는 방안을 연방정부는 선택하였는 바, 동독정부가 ‘통합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결국 이에 동의, 1990년 7월 1일부로 화폐통합이 확정되었다. 바로 이날 동독 마르크는 서독 DM으로 대치되게 되었다. 알루미늄 동전들은 고철폐기장으로 보내지게 되었으며, 모든 부채와 청구권은 D-마르크로 환산되었으며, 임금과 봉급도 새 통화로 지급되었다. Karl Schiller가 지적하였듯이, ‘자유 운송자’라는 명목 하에 동독 계획경제의 비태환 동독 마르크를 밀어내었다.

D-마르크 도입 결정에 따라 서독 통화뿐만 아니라 경제제도 적용도 확정되었다.

‘통합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기본법상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동독의 통화정책 자율권은 상실되었다. 이로써 다른 모든 주권의 완전한 상실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90년 5월에 체결된 통합조약에서는 화폐통합으로 인한 경제적응상의 어려움이 완전히 과소평가되었다. 이 밖에도 경제·화폐·사회 통합이라는 3위 일치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전에 실시된 화폐통합으로 말미암아 경제 및 사회통합 달성을 위한 여지가 없어져 버렸으며, 정치는 더 이상 적극적인 정책수립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반대로 정부는 이러한 급작스런 화폐통합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만 맡게 되었는데, 작금 입증되고 있듯이 한정된 업무조차 연방정부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화 충돌은 처음부터 수행가능한 정치·경제적 대책없이 실시되었다.

3-4. 동독 경제 체제의 부실과 화폐통합의 결과

화폐통합이 실시된 지 수 개월도 안 되어 전체 동독경제에 대한 D-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에 의해 동독경제의 참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 D-마르크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거듭난 경제의 통화정책 소산이다. 서독 경제가 현재의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기 까지에는 수 차례의 구조적 위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제 시장 조건에 적응해야만 했었던 섬유 산업과 철강·제조업, 또는 전자산업(오디오, 비디오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물론 이들 업종의 장기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여건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D-마르크는 미국의 달러와 일본의 엔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통화로 간주되고 있다. 유럽 통화체제 안에서의 D-마르크는 이미 여러번 인용되었듯이 ‘구심점 역할’ (Ankerfunktion)을 하고 있다. D-마르크의 강점은 독일연방은행의 통화안정정책이 밑받침하는 서독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완전 차단되었던 동독 경제를 서독경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D-마르크의 도입을 통해 얻은 장점 중의 하나는, 이로써 양독간 경제체제의 능률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환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 반면 이로 인해 속일 수 없는 동독 경제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 동독 경제의 부실한 기반과 세계시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동독 제품들의 경쟁력 약화가 동독 경제를 특징짓고 있다. 대외교역활동은 국가독점사업이었다. COMECON 내에서의 대체루블 환율은 경제원칙에 입각하였다기 보다는 정치적 입김의 영향을 받았다. 동독과 소련과의 '불공평한 교환'이었음이 이제 밝혀졌다.

외부와의 단절과 국내 경쟁관계 포기로 인해 많은 업무분야에 초과생산가동력이 존재하였다. '국영 기업체' 간의 납품관계는 비용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 많은 분야에서 생산성저조가 팽배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써, 선박전자공학에서 부터 선박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배 한척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 품목들이 한 곳의 조선업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취약점들은 수 없이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에 D - 마르크를 도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간의 분단이 없었더라면 동부독일의 경제구조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한 예로, 규모와 구조가 특수한 동독 조건을 여실히 반영하는 로스톡 시의 해운산업분야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발전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³²⁾

D-마르크의 도입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하룻밤 사이에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로써 구조개혁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0년 7월 1일 통화교환이 실시되자마자, 국제경쟁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던 거의 전 종류의 제품들이 서독 및 외국과의 경쟁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서독 마르크로의 교환에 의해 동독 마르크의 가치가 300% 정도 이상 상승하였다. 서구라파에서 비교적 안정된 국가에 속한다는 나라라 해도 이러한 급격한 가치상승은 경제위기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이 밖에도 동독은 화폐 교환으로 인해 COMECON 내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90년 말로 적응보호 규정의 시효가 만료됨과 더불어 이제는 루블 대 D-마르크로 환산되는 COMECON

국가들과의 납품관계가 거의 단절되고 말았다. 동시에 국내 산업체 간의 납품 관계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의 전 부문에 걸쳐 제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서독제품에 대한 동독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서독 제품 '선호경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동독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제품들도 세련되지 못한 포장으로 인해 거부되었다.

이리하여 심지어는 동독 우유가 서부독일로 납품되어 그곳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다시 동부독일로 납품되었다. 종전의 정치체제와 더불어 모든 것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별 효력을 거두지 못하기가 십상이다.

카드로 세운 집이 무너지듯이 수요 격감은 짧은 시간내에 생산을 절반으로 감축시켰으며, 더불어 일자리도 앓아 갔다. 물론 화폐통합이 동독경제 '기반 붕괴'의 주범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였든 간에, 설사 '제3의 모델'을 채택하였더라도 동독경제의 취약성은 제거되어야만 했었다. 단지 화폐통합에 의해 이러한 구동독의 경제 및 환경이 남긴 '유산'이 순식간 폭발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제불황은 인쇄기 제조업과 같은 경쟁력있는 일부 예외 분야를 제외한 거의 전 생산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대거 없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이는 새로 마련된 일자리로도 상쇄할 수 없었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 결정사항이 실시되게 되었으니, D-마르크와 함께 서독의 사회경제구조가 동부독일지역에 적용되게 되었다. 서독 경제모델의 도입은 '재고정리' (Ausverkauf)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화폐통합 당시의 동독 정권 하에서의 생산성 와해는 서독으로의 재고정리 대매출과는 전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정작 중요한 사실은, 서독 및 외국 기업들이 신설5개주에서 제품들을 구입하여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을 동부독일에 유입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화폐통합결정과 더불어 구기업 및 신규기업들의 자본형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적극적 육성이 국가의 기본과제가 되었으나, 연방정부는 이 사실을 제 때에 인식하지 못했다.

이 같은 화폐 충돌 방식을 통한 경제·통합 결정을 차후에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여전히 현실성있게 제시되고 있다 :

- 다른 대책이 없었는가? 다시 말해 단계적 모델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였는가?
- 연방정부는 DM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였었는가?
- 재정·경제·노동시장정책의 개혁에 따른 과제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3-5. 화폐통합의 배경 - 대책없는 결정

이상에서 제기된 질문들은 간단치 않은 문제들로, 이는 단순한 역사적 의미 이상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오류는 현재 경제통합과정에 수반되는 재정·경제·노동시장정책의 수정에 교훈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연방정부가 화폐통합을 결정하기까지의 배경을 연대기 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 연방정부는 1990년 7월 1일부로 실시되는 화폐통합을 급작스레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단행은 동부독일의 사회·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측컨대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력과 기민당 내 지도급 정치가들이 선수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연방수상이 측근보좌관들과의 협의하에 경제적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단독결정을 내렸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결정이 동·서부 독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연구할 시간은 전혀 없었다. 이같이 부작용 투성이의 결정을 하게 된 당시 연방정부의 상황은 무대책, 기회주의적 정책 그리고 모드로우 정부와의 협상기피증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 문제의 화폐통합 단행전에 관련부처로 하여금 DM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검토토록 지시함은 불가능하였다. 1990년 1월 연방재무부는 사민당 원내 재무

대변인이 제출한 신속한 화폐통합 방안과는 구분되는 '동독경제의 회생을 위한' 10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0년 2월 8일 당시만해도 단계적인 '경제 및 화폐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바로 이틀 전에 연방수상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로 D-마르크를 동독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³³⁾

- 연방정부의 화폐통합에 대한 결정은 독일연방은행의 극구 반대 하에 이루어졌다. 연방정부는 정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연방은행을 설득시켰다. 당시 연방은행장은 연방수상의 화폐통합 '제안'에 대한 자신의 반대입장을 3일 후인 1990년 2월 9일에 철회하였다. 연방은행법에 의하면 통화정책상의 기본적인 문제는 연방은행 주요 소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행은 서독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였다. 온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벌어진 이같은 한편의 연극은 안정정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D-마르크에 대한 신뢰에도 큰 손상을 끼쳤다.
- 자문역할을 하였던 경제학계도 연방정부의 결의사항을 비난하며, 단계적 방안을 권고하였다. 1990년 2월 9일자 보고서에서 '경제 자문위원회' (Sachverstae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SVR))는 1990년 2월 9일자 연방수상앞으로의 서신에서 화폐통합에 따른 파국적인 결과를 분명히 경고하였다.³⁴⁾ 그러나 이러한 SVR의 비판은 연방정부가 화폐통합을 결정함과 더불어 곧 뇌리에서 잊혀지게 되며 처음에는 반대했던 결정사항을 이제부터는 정부측과 더불어 옹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부독일로의 신속한 D-마르크 도입은 기본적인 준비없이 기회주의적 정책결정의 분위기에서 성급히 결정되었다. 연방수상의 이같은 결정은 모드로우와 그 정부에 대한 반감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드로우는 Bonn 방문준비의 일환으로 150억 DM 상당의 재정지원을 연방정부로부터 요구하였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극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화폐와 정치가 통합되어야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물론 연방정부로서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동독 시위자들은 'D-마크크 즉각 지불'을 주요 이슈로 내걸었다. 따라서 지적인 비판은 화폐통합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이기 보다는, 이러한 노선을 취함에 있어서 그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데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기본 원칙상의 결정이 들끓는 비난공세를 당하게 되자, 결정 주체측의 무관심과 문제 회피는 그 심도를 점점 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야기된 변형과정상의 위기는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부실한 경제·금융·노동시장정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제품생산 감축에 따른 인원감축과 같은 심각한 변형 위기를 서독이 EC와의 협력 하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화폐 통합에는 다년간에 걸친 측면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했다. 이 사실을 연방정부는 너무 늦게서야 인식하였다.

화폐통합이 그 결과로 요청하고 있는 과감한 정책추진 대신 경제정책상의 문외한적 모험 시도들이 통일사업을 특징짓고 있다. 장기적인 구조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보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지원대책은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새로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구멍 메우기에 급급해 하고만 있다. 국가 및 통합조약, 동독 마르크+서독 마르크+소규모 공공 재정 지원이라는 환상만으로 경제통합이 결정되었으며, 결국은 이로 인해 독일의 통일비용만 상승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은 늦게서야 제시되었으며, 이 또한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되고 있다.

1990년 결정 과정의 마라톤³⁵⁾

1월 초 :

사민당 재무정책 대변인 잉그리트 마테우스-마이어는 1989년 말에 이미 선보였던 신속한 화폐 및 경제통합 계획을 재차 제안하였다. 이 계획서에는 동독 마르크 대 서독 DM의 환율을 5:1로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바이겔 연방 재무장관은 즉각적인 화폐통합 도입에 반대, '동독 경제의 회생'을 위한 10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통화개혁은 "저쪽편에 혼돈만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독·독 공동 통화지역을 구축한 다음 단일 통화를 도입할 것을 의도하였다. 이의 선결조건으로 우선, 동독의 물가보조금을 폐지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한 마디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1월 19일 :

바이겔 연방 재무장관은 재차 D-마르크를 기초로 하여 '인위적으로 접목된' 동독과의 화폐통합을 '위험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간주, 이를 반대하였는 바, 그 이유로 "우리의 통화가 약해지면 동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유럽의 화폐통합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할 것이라는"는 점을 들었다.

1월 24일 :

모드로우 정부는 자체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의 골자는, 양 독일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1992년까지 동독 마르크를 서독 D-마르크로 교환 가능토록 하며, 가격의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초기에 주장했던 동독 마르크의 부분적 교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화폐통합의 관철을 위해 연방수상에 의해 전문인위원회에 파견된 한스 디트마이어 차기 연방은행장은 TV - 인터뷰에서 성급한 양독 화폐통합을 경고하였다 : "문제는 동독 자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갈려는 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태환화폐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유동적인 환율가를 조성할 수 있느냐이다.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월 6일 :

피엘(Poehl) 연방은행장은 동독 국립은행장이자 모드로우 정부 경제장관인

들어, 감정 자문위원회처럼 단계적 방안을 채택하였을 것이다” .

5월 18일 :

끈질긴 협상 끝에 동독과 서독 정부는(제 1) 국가조약에 서명을 하였는 바, 이에는 D-마르크의 도입과 화폐통합 달성에 따른 교환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7월 1일 :

화폐개혁이 실시되는 날, TV-연설에서 연방수상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통일, 자유, 번영과 사회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아무도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독 주민들과 관련하여서는, 드 메지에 총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를 겪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편이 현저히 나아질 것입니다” . 서독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독일통일로 인해 서독인들이 희생을 치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앞으로 몇년간 거두게 될 추가수익의 일부를 우리의 동족인 동독인들에게 - 자력을 위한 도움으로 - 내어 놓게 될 것입니다” .

(1991) 8월 27일 :

연방은행과 연방수상간의 견해차에 대한 기록

독일 연방은행장 업무 인수식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 :

콜 연방수상 : “소급하여 볼 것 같으면, 1990년 7월 1일의 화폐·경제·사회 통합은 독일통일의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연방정부와 연방은행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인해 화폐교환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연방은행 - 특히 뢰엘 은행장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칼 오토 뢰엘 전 연방은행장 : “연방은행은 부속정부가 아닙니다. 본 기관의 자율성은 통화정책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방은행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입법자의 정치적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작년 연방정부가 동독에 대해

D-마르크 도입을 제안하였을 때 우리는 이 업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연방은행은 연방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최소한 통화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연방수상 각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연방은행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3-6. 화폐통합 외의 다른 방도가 없었나?

경제 적응을 위한 통화 번개 작전 외의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은 단순한 학문적 의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심각한 변형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통화·경제체계의 완전 도입이 단계적인 방안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통일작업을 무리없이 진행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단계모델은 막대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에서의 단련을 겪은 후, D-마르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계들, 그 중 ‘전체경제발전 감정 자문위원회’는 단계적인 방법을 옹호하였다.³⁷⁾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거의 제시되지 못했다. D-마르크의 즉각적인 도입에 반대했던 시장경제파 학자들의 일부 주장들은, 이 같은 방법에 의한 독일 통일은 지금까지의 서독의 안정된 통화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통일의 대가를 치루지 않겠다는 고루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특징지어졌다. 정치적 통합에 이어 경제적 통합도 달성해야 한다는 거대한 도전을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자문가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관계로) 이들의 유익한 조언을 빌리지 못하고 말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1990.2.8일 당시 연방경제장관은 경제·화폐통합을 위한 상세한 단계적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다.³⁸⁾ 이에 따르면 단일 경제·화폐통합의 완료는 1993년 1월 1일 유럽 단일시장의 출범과 때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동독의 일반 정치와 통화정책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단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에는 서독정부의 공공 보조 지원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통화로서의 D-마르크 완전도입은 1992년 말로 구상되어 있었다.

단계적 모델의 구상자들은 경제구조 전환과 국제시장으로의 경제 개방이 1992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져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또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동독이 '오스트리아' 모델과 마찬가지로 D-마르크에 대한 동독 마르크의 (하향 조정된) 환율가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은 완전히 상이한 경제수준, 계속적인 이주 우려 그리고 동독 마르크의 대거 D-마르크와의 교환 등과 직면하여 어떻게 환율의 안정을 보장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단계적 방안이 1990년 2월 동·서베를린 출신 독·독 경제학자 실무단에 의해 제시되었는 바,³⁹⁾ 이는 화폐·금융 개혁안을 수반한 단계적인 경제개혁의 실현(사회정책상의 측면지원 하에 가격형성 자율화, 임금책정의 자율화, 장기 투자시설 구입시 법적 장애요인 제거)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 마르크의 광범위한 태환성 획득을 위해 동독의 외화운영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다. 이 모델 역시 동독의 일반 정치 및 통화정책상의 자율성의 단계적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구상안을 실현시키려는 시도과정에서 이론과 정책실무가 조화될 수 없다는 모순이 드러나게 되었다. 단계적 방안은 '제3의 모델'과 달리 동독 경제를 서독의 구조에 적응시켜 나감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모델은, 갑작스런 화폐통합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구조 전환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토록 하자는 안을 내세웠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주로 시장요소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격차 제거에 관심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통화주권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환율은 국제경쟁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화폐통합은 실제경제 발전이 거의 동일한 선상에 도달하였을 경우 실시되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계모델은 논리적으로는 견고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경제학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러한 '왕도'의 실현이란 정치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동독이 자율권을 단계적으로 포기할 용의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동독에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D-마르크를 달라!"라는 목소리가 드세었는 바,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데에는 화폐통합이라는 번개 작전이 생활 조건을 신속히 개선시킬 것이라는 무분별한(정치가들의) 약속이 그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단계적 모델은 D-마르크 도입과 함께 서독 수준으로의 경제변영도 신속히 도래할 것이라는 정치적 구상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1990년 초의 정치적 상황은 - 실상이야 어떻든 간에 - 단계적 방안을 절실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단계적 방안을 실시하였을 경우 통화정책상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동독 자체의 통화체제는 설사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할찌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다. 칼 쉬러는 1990년 5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였다 : "동독 주민들은 현재 그들의 과거 체제와 통화를 거부하고 있다".⁴⁰⁾ 이미 국경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동독 통화의 태환성이 보장되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 동독 마르크를 다른 통화로 자유롭게 교환시킬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독간 어느 정도 안정된 환율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하였다. 이로 인한 결과가 동독 마르크로부터 안정성 높은 D-마르크로의 줄지은 피난길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되었다. 동부독일에서 벌어들이던 동독마르크는 즉시 D-마르크로 교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연방은행은 동독 마르크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D-마르크 매각 및 동독 마르크의 구입이라는 편법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D-마르크 홍수는 서부독일의 안정을 위협하였을 것이다. 신뢰가 밑받침되지 못한 통화는 결국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보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다.

단계방안의 일환으로서 동독 마르크는 D-마르크에 비해 현저한 가치하락을 겪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 가치하락은 취약한 동독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반면 동독으로의 서방제품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시급했던 투자제품 수입을 지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주민들이 선망하던 서부 소비제품들은 저임금하에서는 그림의 떡이었을 것이다. 서부독일 노동시장이 바로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임금은 계속 상승하였을 것이며, 기업의 투자능력은 보다 약화되었을 것이다. 막대한 잠재 인플레이가 발생, 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결국 단계적 방안은 '오스트리아 모델' 대신 - 그렇게 되기 위해선 경제가 어느 정도 건실해야 한다 - 급격한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를 동반한 '폴란드 모델' 이 되었을 것이다.

이 밖의 지적사항으로는, 단계방안이 경제구조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폐된 실업률' 감소를 위해 기업을 폐지하고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방법은 마찰만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가격보조 폐지도 단계적으로 실시 되었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 동독 내의 합법적인 민주 정부가 이 같은 경제구조 전환을 과감히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 개혁방안이 '과거 관계' 와 '그 무리' 들에 대한 거부와 반감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단계방안을 실시하였을 경우, 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적응과정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구조보전 대책으로 전락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까지도 경제통합이라는 번개 작전을 '비용 및 효율성' 차원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변형시켰을 경우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불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되고 있다. 화폐통합은 적응에의 압력을 극대화시키고, 적응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반면, 단계방안은 계속 지연되는 장기적인 구조 변경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채택한 방법 외의 다른 무리없는 선택의 방법이 있었겠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매우 회의적이다. 분명한 사실은 화폐통합의 결과가 무책임하게 간과되었으며, 그로 인해 정부의 대책없는 임시미봉책 업무활동만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화폐통합의 결정과 더불어 다음 사실을 미리 예견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 번개

작전의 결과로서 다년간의 공공 재정 이전과 개인 경제의 자본 이전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부로부터 동부로의 자금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방안이 필요하다. 재정문제는 현재 서부독일로 집중되어 있다. 동독의 정치적 자율권이 단계적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구조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주로 동독이 맡았을 것이다. 생산성있는 경제분야를 구축하기 위해 동독내 저축 및 투자율이 급격히 증가되었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서부독일로부터의 재정지원비는 원래 의미에서의 '자력을 위한 지원' 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다. 화폐통합과 통합조약에 의한 정치적 주권의 완전한 포기로 인해 동부독일의 경제구조 변형은 국가적 사업이 되어버렸다. 동부독일의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재정은 이제 서부독일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조세문제를 둘러싼 토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연방정부는 서부독일에서의 재정분담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았다.

연방정부에 대한 비판은 화폐통합 그 자체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이에 대한 과소평가, 다시 말해 통합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완전히 간과한 사실을 요체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 통독 비용 문제와 이와 관련 재정분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과, 또한 이러한 "화폐 충돌"을 야기한 정부의 정책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D-마르크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이제 다시 심각한 변형상의 위기를 예상하여, 경제 적응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경고한 비판자들을 배척코자 하며,⁴¹⁾ 이들을 독일통일을 망치는 무리로 낙인찍고 있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 경고자들의 비난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다 : 통일론자들의 '마르크와 시장' 이라는 환상은 변형위기가 들어닥친데다 부채체증에 시달리는 빈약한 국가 재정문제까지 합세하게 되는 바람에 얼마 안 가서 물거품처럼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국가조약과 1990년 12월 연방의회선거 이후 체결된 통합조약에 명시된 '단순·소박한 통합 조항' 들이 대거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형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기본적인 과소평가는 아직도 서부독일 정치를 특징짓고 있다.

3-7. 정치적 임의에 의한 교환비율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

화폐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다음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 지금까지의 동독 마르크를 D-마르크로 교환시키는데 어떠한 비율을 적용시켜야 하는가? 이 결의 사항은 단순히 D-마르크 수입에 따른 통화 기술상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D-마르크의 교환비율 책정 문제는 동독경제의 실태, 특히 생산성, 국제 경쟁력 및 소득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했어야만 하였다. 왜냐하면 화폐교환은 동부독일 경제의 개시 대차대조표로 결정하며, 동시에 새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교환비율책정 문제로 잠시나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서로 간의 갈등은 정치적 타협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금, 저축예금, 기업의 부채와 임금 및 봉급에 대해 각각 상이한 교환율을 적용한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있어 연방정부는 사전에 누설되어 많은 이들이 거부감을 보인 연방은행 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⁴²⁾ 동독 주민들의 현금에 대해서는 1:1의 비율로 교환해 주도록 국가조약에 명시되었다. 반면, 개인 가계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다른 비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연히 예치자들은 1:1의 교환 비율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독주민들은 이 같은 '새출발 자본'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동독의 마지막 재무장관인 발터 롬베에그는 이같은 예치자들의 요구사항과 관련, 이 자금을 대한 사용을 시기적으로 제한하여 허락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소한 저축 예금의 일부분 정도는 종전까지의 국민재산의 지분(주식) 내지는 국채에 참여를 하라하자는 제안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국민자본주의' (Volkskapitalismus) 모델은 사회주의적 '국민소유' (Volkseigentum)를 대체시킬 수 없었다. 독일연방은행은 저축예금 교환비율을 2 동독 마르크 대 1 D-마르크로의 책정, 다시 말해 저축예금의 50% 가치 격감 정도는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방은행은 이를 통해 과거 물품공급의 제한으로 발생되었던 초과자금이 전부 D-마르크로 교환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동부독일의 생산자본과 관련, 연방은행인들은 통화량의 급격한 신장을 우려하였다. 연방정부는 결국 동부독일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각각 상이한 교환비율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저축예치금은 원칙적으로 2:1 비율로 교환되었다. 동독에 통상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정액수에 한해(연령별 기준) 1:1로 교환해 주었다 (14세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2,000 DM 까지, 15세에서 59세까지는 4,000 DM,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6,000 DM). 이로써 현재 자료를 기초로 하였을 때, 저축예금성 새출발 자금은 1,234억 DM로 줄어 들었다 : 평균 교환비율은 1.475 동독 마르크 대 1 D-마르크였다. 저축예치금이 즉시 인출되어 지출되리라는 우려는 기우로 판명되었다. 일부 인출금액은 이윤이 높은 투자성 사업분야에 사용되었다. 여하튼 이러한 저축예금의 '적정' 교환율을 둘러싼 시비는 상이한 이해집단간에 어떻게 타협점이 찾아질 수 있었느냐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동독 금융제도와 관련된 부채교환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였다. 내국인들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2:1의 비율이 책정되었다. 1990년 5월자 자료에 따르면 이로써 기업들의 부채는 2,317억 동독 마르크에서 1,158억 D-마르크로, 주택업계의 부채는 513억 DM으로 조정되었다. 물론 이 부채더미는 아직까지도 생산경제의 구조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재정비과정에서 이 잔재를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은 통합조약의 커다란 오산이었다(이 기업부채가 신탁청에 의해 그리고 청산과정에 있는 동독 국가은행제도 하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서 98쪽에서부터 기술하겠다).

국가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의 D-마르크로의 교환을 간략히 요약 검토해 보았을 때, 전체 금융, 다시 말해 모든 부채와 청구권의 교환은 평균 1.83 동독 마르크 대 1 D-마르크의 비율로 이루어졌다(도표 III-5 참조).

고정 수입, 특히 임금 및 봉급의 교환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임금·봉급·연금의 1:1 내지는 2:1로 교환되느냐에 따라 종사자들과 연금자들의 출발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러 제안들 - 그 중에는 일부 의심적인 모델들도 있었음 - 이 제시되었다. 각 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너무도 분명하였다. 임금 수령자들은 1:1 비율을 고집한 반면, 기업주측 입장에서는 동·서독 기업간의 생산성 격차를 지적하여 최고 2:1의 비율을 주장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1:1의 비율로 교환되는 동부독일 근로자 일인당 명목상의 임금 및 봉급액은 서부독일 수준(4인 가족 기준 실수입의 56%)의 1/3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2:1의 교환비율을 책정하였을 때, 서부독일에 비한 동부독일의 근로 수입은 절반으로 격감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사전에 누설된, 즉 임금, 봉급, 연금에 대해 2:1 교환비율을 적용하자는 연방은행의 제안은 격렬한 반대를 사게 되었다. 이같이 열띤 분위기로 인해 간과된 사실은, 연방은행측에서 2:1의 교환에 앞서 보조금 폐지에 따른 임금조정과 사회보장보험금의 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가상 계산에 따르면, 임금조정을 감안하여 월 명목임금 1,300 DM을 2:1의 비율로 교환하였을 때, 실제 임금은 851 DM으로 줄어 들었을 것이다.⁴³⁾

2:1로의 교환비율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근로 및 연금 수입을 둘러싼 개시조건 규정은 밤 사이에 정치적 현안 사항이 되어버렸다. 동부독일의 시위는 1:1의 교환률을 요구하는 현수막으로 일색을 이루었으며, 총파업을 하겠다고까지 위협하였다. 동부독일인들은 새로운 독일을 이룩하는데 소득 문제로 서부독일인들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격렬한 압력에 못이겨 결국 근로수입 및 연금 수입을 1:1로 교환하기로 국가조약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투성이의 교환이 기업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어쨌건 이로써 화폐통합을 실시하는데 있어 일단 어려운 단계는 극복되어진 것처럼 보였다. 1990년 7월 1일 화폐교환 이후 실제수입은 독일 연방은행이 제시한 모델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 주민들의 격렬한 압력으로

인해 1:1이라는 교환율이 국가조약에 명시되는 대가로 국가조약상의 차액보전 지출규정(Regelung von Ausgleichszahlungen)이 포기되어져야 되었다. 차액보전 지출이 포함된 연방은행의 2:1 교환안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1:1 비율의 정책적 타협안이라는 이 눈가리기 수법은 얼마가지 않아 큰 회근으로 판명되었다. 국가의 지시에 의한 D-마르크 개시 실질임금은 처음부터 임금정책에 큰 짐이 되었다. 국가가 거부한 것을 노조의 임금정책이 쟁취하였다. 노조는 제1차 임금 협상에서 보조금 폐지 및 인상된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차액보전지출금의 지불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재량 변수, 다시 말해 동독국립은행의 부채 및 청구권과는 달리 고정 지급에 대해서는 1:1의 교환비율이 적용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기업은 생산비용과 지금까지 적용되던 임금 및 봉급을 D-마르크로 지불해야만 되었다. 양 독일의 통화가 계속 존재하였을 경우, 이 교환비는 1:1이라는 환율과 상통한다. 그러나 동독 통화는 교환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비율을 책정할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화폐통합시 양 독일통화 간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환율을 책정할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Saarland 주가 1958년 서독으로 가입하였을 때의 상황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 Saarland 주의 통화적응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환율에 기반을 두었다.

동독의 공식적인 교환비율은 경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정치에 의해 1:1로 책정되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었는데, 서독인들에 대해서는 3:1의 교환 비율이 적용되었다. 대외무역의 범위 내에서의 Valuta 지급 회전은 형식적으로는 1:1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4.4:1로 계산되었다. 은행제도의 총대차대조표상에 실제 비율과 형식상의 비율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방향계수조정금' (Rueckstellungen fuer Richtungskaeffizienten)을 만들어야 하였다. 이는 구서독을 포함한 동독에 대한 외국이 갖는 통화정책상의 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암암리에 형성된 외환율의 대치물로서 암시장 환율이 있었는데, 이는 화폐통합 직전까지 10 동독 마르크 대 1 D-마르크 이상의 환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동·서독에서 각각 상이한 통화가 사용되었을 경우, 그 교환환율이 동·서독간의 생산성과 경제안정성의 격차를 여실히 나타내 주었을 것이다. 생산성에 근거했을 때는, 3:1의 환율이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치였을 것이다. 생산성 격차의 단계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율을 1:1로까지 발전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독경제는 D-마르크에 대한 동독 마르크의 근 300%나 되는 가치상승으로 인해 '1초' (logische Sekunde) 만에 서독 및 외국과의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독 수출제품가격은 3배가 인상되었으며 수입품 가격은 3배나 하락하였다. 이러한 화폐가치상승에 따른 충격을 이겨내었을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환비율은 경제적 측면에서 최악의 상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의해 관철되어졌다. 그 결과 오로지 정권의 고수를 위해 채택된 이러한 결정이 가져 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제·재정·노동시장 정책의 수립이 어느 시점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화폐통합 실시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업무활동이 서로 상이하게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D-마르크 도입은 수치상 완벽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연방은행에 의해 실시된 반면, 재무정책 담당자들은 새로운 경제지역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중장기적 방안을 개발하는 대신 무관심, 배타심, 선거를 겨냥한 기회주의적 정책이 우세를 보였다.

연방은행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화폐통합문제를 둘러 싸고서 연방은행의 제안과는 정반대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은행은 전적으로 D-마르크 수입에 따른 기술상의 처리문제와 금융정책상의 선결조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수리학적 대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지폐인쇄기와 주화 제조기는 수 주 내에 약 250억 D-마르크를 생산해 내기 위해 완전가동상태에 들어갔다. 비밀 노선을 통해 이 화폐는 15개의 지점과 100여개 이상의 현금출납소로 운송되었다. 현금 지급업무는 아무런 사고없이 진행되었다. 이 현금 일시지불액

이상의 D-마르크에 대해서는 연방은행의 직접통제가 불가능하였다. 현금 외에도 당장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일람불 예치금(구좌 비치자금), 해약 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저축예금, 4년 이하의 적립금 등이 총통화량(규정상통화량 M3)에 속한다. 물론 D-마르크의 도입에 따른 통화량을 추정하는데 불확실한 점이 없지는 않았다. 1:1로 교환된 저축예금 예치자에 대한 연령별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구동독 금융제도의 고객들이 화폐교환 이후 즉시 그들의 예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능하였다. 연방은행은 서독 통화량의 약 10%에 달하는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로써 화폐공급은 서부독일 대비 동부독일의 생산잠재력 추정치 - 약 10% - 에 상응하였을 것이다. 이는 서독 총통화량의 15%에 해당되는 것이었다(Ⅲ-1 비교).

그러나 동부독일의 편입에 의한 통화량 증가는 곧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저축예금은 이윤이 높은 자본투자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통화량 과다로 인한 안정정책의 위험은 일단 극복되었다. 결과적으로 D-마르크 도입은 기술·수리학상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실제 화폐증가도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는 않았다.

연방은행법에 상응하는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동부독일 금융제도의 구조전환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전환을 간략히 다루기로 하겠다. 최소적립금을 연방은행에 예치시켜야 되는 금융기관의 의무규정은 이미 1990년 8월에 도입되었다. 리파이낸스 사업 및 개방시장 사업의 테두리 내에서 기타 금융정책상의 제도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 한시적인 특별규정에 의해 마련되어졌는 바, 이를 통해 동부독일 은행들은 연방은행이 제공한 유통자금을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⁴⁴⁾

도표 I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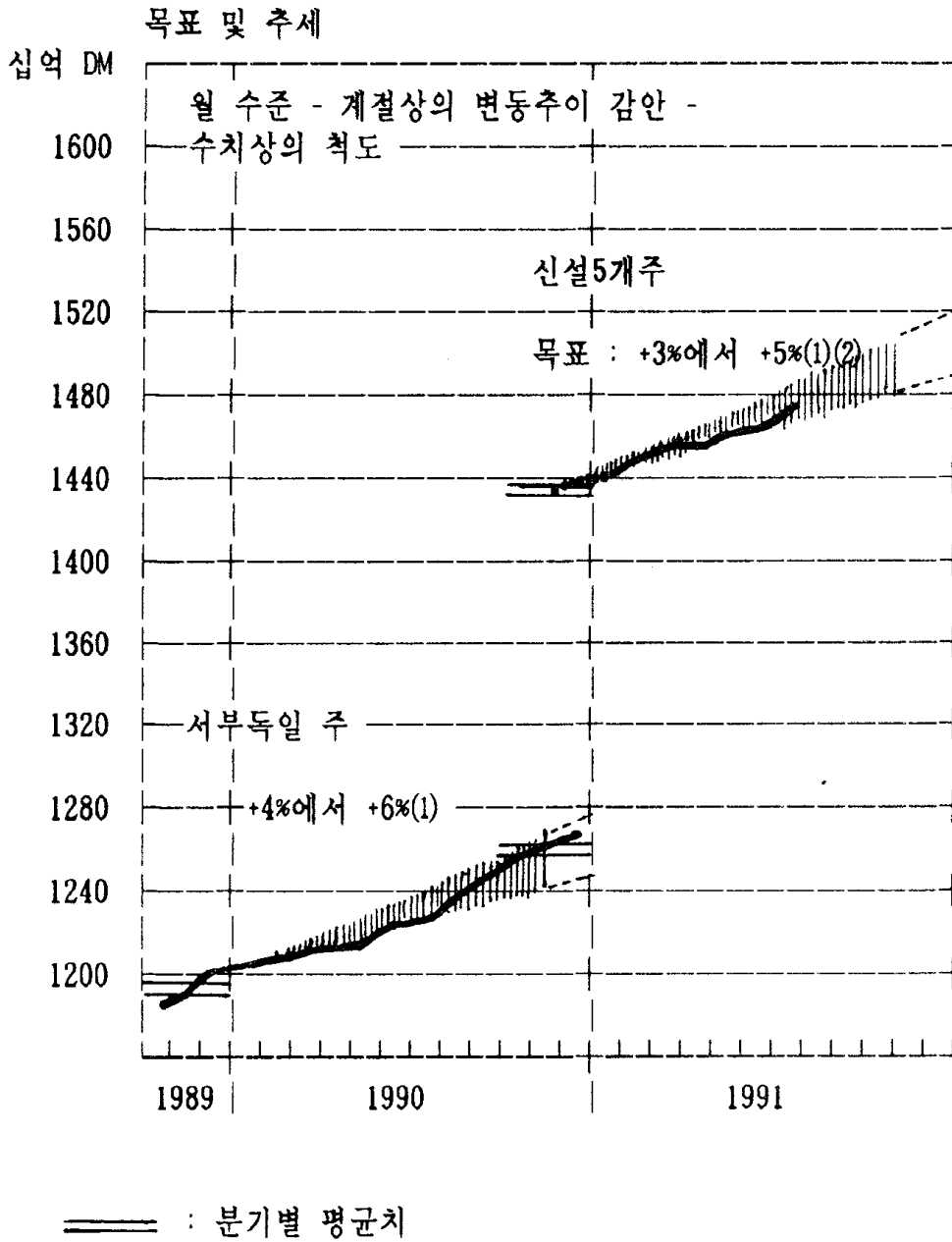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마르크화의 서독 DM으로의 교환대비 가상 대차대조표*)					
근거자료 : 1990년 5월 31일자 작성 동독 금융체제 통합 대차대조표					
자 산	십억 동독마르크	십억 DM	부 채	십억 동독마르크	십억 DM
1. 국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부 합계	397.4	180.7	1. 국내 비금융기관의 예치금 합계	249.9	156.6
이 중 :			이 중 :		
- 기 업	231.7	115.8	- 기 업	57.0	27.8
- 주택부분	102.6	51.3	- 민간인	182.1	123.4
2. 대외 채권	45.0	36.3	2. 대외 부채	152.5	55.6
			이 중 :		
			- 대외부채 청산 준비금(1)	96.4	—
3. 자본 출자	1.1	1.1	3. 유동 현금 (은행잔고 제외)	13.6	6.8
			4. 누적수익 (accumulated profits)/ 준비금(reserve funds)/ 보증금(guarantee fund)	23.4	23.4
4. 기타 자산	3.1	1.5	5. 기타 부채	7.2	3.6
합 계	446.6	219.6		446.6	246.0
자산 조정항목	—	26.4	부채 조정항목	—	—
총 계	446.6	246.0		446.6	246.0

주) *) 상기 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4 참조.

(1) 이는 원래 국가에 대한 은행의 부채로서, 부채란 1번에도 해당 가능함. 2번의 대외부채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동독 마르크로 낮게 책정된 대외부채의 "가치조정" 이 불가피했기 때문임.

연방은행

그림Ⅲ.1 : 총 통화량 M3 성장



* 5일간의 은행주간 기일에 계산, 이때 최상선은 절반만 계산에 넣음.

(1) 전년도 4/4 분기부터 올해 4/4분기 때까지

(2) 1991년 7월의 통화량 목표 조정에 따름.

3-8. D-마르크 은행제도 구축 : 서부독일 은행들로서는 절호의 기회 - 국가로서는 부담스러운 과거 유산

D-마르크는 오랜 역사를 거쳐 성숙한 통화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부독일의 화폐 및 신용공급은 1958년도 연방은행법과 수차 수정·보완된 신용대부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원적 은행제도는 개인재산보장과 이윤 극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업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실시된다(신용대부 제공, 예금 유치 등). 물론 이러한 사업활동은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은행은 일반 은행들의 상부기관으로서 화폐 발행 및 통화공급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연방은행은 오로지 일반 시중은행들을 통해 통화를 공급한다. 연방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자금유통에 관여함으로써 이들 은행들의 신용대부발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이원화된 은행 제도는 뚜렷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연방은행은 '은행 중의 은행'으로서, 통화 공급을 관리하고, 일반 시중은행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펼쳐 나간다. 자유로운 화폐 및 자본시장의 구심점은 은행들로서, 이 시장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현대 자본주의 생산경제의 주요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중앙 계획주의라는 동독 모델의 통화제도와 통화공급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기반에 입각해 있었다. 화폐 및 자본시장들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 국영화된 경제분야(주택사업 포함)의 재정문제는 동독 국립은행을 통해 처리되었다. 저축은행, 조합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등은 고객들이 입금시킨 예치금을 기업들에 대한 신용대부 제공을 위해 즉시 국립은행으로 이양하였다. 서독 금융기관들이 갖추고 있던 일반인들에 대한 상업상의 용자제공 권리가 이들 동독 금융기관에는 없었다. 이들 지점들은 단지 소규모에 달하는 특수 목적의 용자,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 대한 용자 등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기업들은 업무 계획에 따른 한정범위 내에서 용자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외국과의 지불

거래청산과 농산물 생산조합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독일무역은행과 농·식품업 은행과 같은 특수기관이 담당하였다.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사항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운영은 구태의연하고 불안정한 통화체제 하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는 금융경제는 계속해서 동독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개인주도 사업과 시장 경제 개발, 특히 D-마르크 도입과 더불어 동독의 통화 체제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이원화되어야만 했다.

1990년 7월 1일부로 D-마르크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동독의 재래식 은행제도도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부문에 있어서 세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해결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새로운 통화가 서독 모델에 따른 2원화 은행제도로 기존 동독 은행제도의 구조전환 구축을 해 나갈 것을 강제하였다 :

- 신설 5개주의 최고 통화기관 업무는 독일 연방은행이 관할하였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동부독일 자체의 국립은행에 대한 기대는 단일 통화권 수립과 더불어 완전히 그 기반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른 당면한 귀결은, 통화정책 실시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둘 수 없다는 점이다. 화폐통합 이후 첫 몇 개월 간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도 했던 연방은행법은 이제 전 독일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 서부독일의 은행들과 유사한 일반 시중은행들을 동부독일에 구축시키는 작업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 동독 은행체제하에서의 금융기관들은 일반 시중은행들로 전환되었다. 특히 서부독일의 대은행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존의 동독 은행조직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반 하에 지점들을 설립, 신속하게 지점망을 구축시킬 수 있었다. 서부독일 은행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화폐 및 자본시장 구축을 통해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는 즉각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D-마르크의 도입과 이로 인해 가속화된 2원화 은행제도의 구축은 아직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한편으론 직접적인 화폐교환에 따른 부채부담과, 다른 한편으론 과거 체제 하에서 동독 주민들의 예치금으로 이루어진 기업, 주택 사업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용대부가 아직도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과거 부채의 청산 문제는 국가 외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이자 및 부채 상황에 따른 국고, 특히 연방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이하의 기술과 도표 III.6 참조).

국립은행제도의 구조 전환

동독은행제도의 구조전환상의 문제와 화폐통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과거부채는 구동독 국립은행제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화폐통합이 실시되기 이미 수 개월 전에 2원제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업무가 실시되었다. 도표 III. 6의 '화폐교환 이후의 (1990년 8월) 은행제도 - 과거 부채 및 청구권 처리' 자료는 동독 은행기관들과 이들의 자산 및 부채항목 그리고 이의 관계를 비용대차대조표 형태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⁴⁵⁾ 동시에 이 자료는 청산되어야 할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은행, 저축은행 및 신용조합단체들을 '일반 시장금융기관들' 에 포함시켰는 바, 국립은행의 후속 기관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가장 비중이 큰 부채항목은 각 가계별 은행예치금이다. 자산항목에서는 국립은행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된 대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7월 1일부로 실시된 화폐교환은 '일반 시중은행' 들에 있어 차액 조정이란 문제를 야기시켰다. 왜냐하면 청구권(자산 항목)은 2 동독 마르크 대 1 D-마르크로 교환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의 저축 예금 (1990년 5월 31일자 자료 기준 : 1,821억 동독마르크=1,234억 D-마르크)은 평균 1.475 : 1 비율로 교환되었다. '일반 시중 은행들' 의 대차대조표상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이들에 대해 약 250억 DM에 달하는 차액청구권(Ausgleichsfor-derung)을 발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표Ⅲ.6 : 화폐통합 직후의 은행제도(1990년 8월)
과거부채 및 채무의 처리(단위 10억 DM)

자산		“신용기관들” (1)		부채
○ 주택업계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부	10	○ 개인가계의 은행예치금 (유통 현금 포함)	130	
○ 대외 자산(대외 청구권)	30	○ 기업들의 은행 예치금	10	
○ 기업들에 대한 신용기관들의 신용대부	135	○ 대외 부채	50	
○ 실제 차액 청구권	25	○ 은행 고유자본(2)	10	
	200		200	

자산		국립은행(청산과정중)		부채
○ 국가에 대한 은행 신용대부	15	○ 국가의 은행 예치금	5	
○ 신용은행들에 대한 신용대부	130	○ 국가의 지분참여	5	
		○ 기업들에 대한 신용기관들의 신용 대부	135	
	145		145	

자산		신용은행 주식회사(청산과정중)		부채
○ 주택업계에 대한 은행 신용대부	40	○ 기업들의 은행예치금	20	
○ 기업들에 대한 신용대부	115	○ 국가의 지분참여	5	
		○ 국립은행의 신용 대부	130	
	145		145	

(1) 은행, 저축은행, 신용대부조합 : 베를린 국립은행 및 신용은행주식회사 제외

(2) 기타 항목 포함

[자료출처 : R.Pohl, 동독 기업의 과거부채 :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 :

In : DIW - 주간보고서 36/90]

채무자는 연방으로서, 이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차액보전기금(Ausgleichsfond)을 설치하였다. 신용기관들은 상이한 화폐교환율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유이자 차액청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는 연방은행과의 리파이낸스 사업에도 사용될 수 있었다. 화폐교환에 따른 차액보전기금은 채무청산기금(KAF : Kreditabwicklungsfond)에 포함되는 바, 채무청산기금은 이 밖에도 동독 국가예산의 총부채(280억 DM)와 대외부채 및 채무 청산에 따른 이자액 차이와 대체루블까지도 커버하였다. 연방채무부의 추정에 따르면 그 사이 KAF의 청구권은 최고 1600억 DM에 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신탁청에 의한 기업 청산과정에서의 총 동독부채액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KAF 범주 내에서의 기업부채는 현재 최소한 350억 DM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⁴⁶⁾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무제한 신용대부발급이 예정되어 있다. 연간 이자상환은 현재 연방과 신탁청에서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동 이자 상환을 위해 신탁청은 원래 기업의 재정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업사유화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과거 부채와 관계된 이러한 의무적 지급액들은 청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DM 상당의 신탁청 신용대부와는 별개의 것이다.

1994년부터는 새로운 법에 의해 기금의 부채 부담이 다음과 같이 분담된다 : 신탁청의 재산 수익 잔여금이 허용하는 선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그 나머지는 연방과 신설5개주에서 각각 반반씩 분담한다. 앞으로는 국가의 총부채액을 발표할 때,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설립된 기금들의 부채뿐만 아니라, 이 채무 청산기금에 의한 부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정확한 액수가 밝혀지지 않은 이 기금의 부채 상환비 역시 독일통일비용에 속하기 때문이다.

2원화 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90년 봄 동독 국립은행은 인위적으로 베를린 국립은행과 독일신용은행(Deutsche Kredit AG (DKB))이란 두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국립은행에는 '일반 신용기관' 으로 대표되는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간의 중개업무가 맡겨졌다.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일반 신용기관들'의 적립금이다. 이 적립금은 일반 신용기관들의 청구권으로써, 과거 이들 기관들이 국립은행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해 준 신용대부가 그것이다.

동독 은행체제의 결산대차대조표는 (현재의) '일반 신용기관들'이 동독 국립은행에 적립시켜야만 했던 예치금을 이른바 은행간 적립금(Interbank - Einlagen)으로 간주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은행들이 이 적립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립은행이 신용대부를 대여받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독일신용은행으로 이양된 거액의 신용대부는 실상은 기업부채의 이전으로서 이는 현 상황으로서는 얼마간 더 존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뒤에는 신탁청 산하 기업들이 깔려있다.

신용기관들의 적립금 인출이 증가할수록 국립은행의 라파이넨스도 보다 증가될 것이며, 이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날 것이다. 국립은행은 최소한 저축은행과는 적립금 인출증지 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용기관들은 일부 예치금을 국립은행으로부터 인출하지 않을 수 없었는 바, 이들 신용기관들의 고객들이 자신들의 예치금을 소비지출 내지는 고율 재산형성을 위하여 찾아 갔기 때문이다. 조합은행들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자수익 만을 노려 예치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독일조합은행(Frankfurt a.M.)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일반 신용기관들의 예치금 인출로 인한 결산상의 구멍을 막기 위해 Berlin 국립은행은 국가 보장 채권(국고 증권, 유동 및 확정 이자 대부)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1년 5월까지 이와 같은 차액보전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끌어들인 신용대부금은 약 800억 DM에 달한다.

(작금) 일반 신용기관들의 독립에 따라 베를린 국립은행이 부담해야 될 부채상환업무의 일부가 독일 신용은행을 통해 신탁청으로 이전되었다. 왜냐하면 신탁청에서 소속 기업들의 과거 부채를 떠맡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올해 신탁청이 신탁청 소속 기업들의 부채상환의 일환으로 독일 신용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상환액만 약 70억 DM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의 과거 부채가 베를린 국립은행의 대규모 신용대부에 의해 독일 신용 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신탁청이 100% 소유하고 있는 독일 신용은행의 현재 과제는 바로 이 과거 부채를 조속히 청산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독일 신용 은행의 과제는 기업들의 과거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으로써, 부채가 완전히 상쇄되면 독일 신용은행도 해체되도록 되어 있다. DKB 대차대조표에 제시된 1,150억 DM에 달하는 과거 부채는 현재 통합조약에 명시된 방법대로 청산되고 있지 않다. 기업의 매각과 재정비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하여 신탁청은 많은 기업들의 과거 부채를 인수하였다. 신탁청은 이러한 부채인수액을 다름 아닌 자체소유 DKB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통합조약에 명시된 신탁청에 의한 과거부채 청산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다시 말해 오산이었다는 점이다. 자체 재정 충당책의 일환으로 사유화에 의한 신탁청 수익금을 과거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사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이 부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기 위해 신탁청은 자금 대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쇄되지 않은 부채의 대체 기입은 채무청산기금이 넘겨받도록 되어 있다. 일반 신용기관들에 지급되는 국립은행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살펴보면, 국고 - 신탁청 포함 - 의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잘 알 수 있다 : 예컨대, 9%의 연 이율을 적용할 경우, 이지지불에만 연간최고 120억 DM이 소요된다.

현재의 기업들은 신탁청이 대신 지불한 이 이자들을 앞으로도 상당기간에 걸쳐 갚아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부채인수에 따른 이 이자상환 과제는 결국 신탁청과 연방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이지지불 역시 결국에는 국가 예산을 통해 사회가 부담해야 될 독일비용에 포함된다. 물론 이 이자는 국립은행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새로 설립된 시중은행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과거 부채가 이처럼 은행에 의해 이용됨으로써 자금분배 역현상이 일어난다 : 국가예산이 과거 은행제도에서 분리된 일반 시중은행으로 유입된다. 이에는 - 살펴본 바처럼 - 과거 국립은행체제의 구조전환 초기에 받을 들여 놓았던

일부 서부독일은행들도 참여하고 있다.

구동독 채무와 부채에 대한 상이한 교환율, 개인 신용기관들의 국립은행으로 부터의 적립금 인출 그리고 비수익성 기업 부채 청산(주택사업 포함) 등은 연방 예산 (신탁청 포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출처별로 따지면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

- 일반 시중은행들의 차액 청구권
- 일반 시중은행들의 적립금 인출에 대응하는 베를린 국립은행의 신용대부도입
- 구동독 기업들이 진 부채의 상환

연방정부의 예산 부담은 현재 여러 관련 기금의 설립으로 인해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들 기금의 부채상환비용만큼 통일 비용 또한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경제 통합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D-마르크의 도입과 이에 따른 서독 은행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도 지불하는 자와 이득을 보는 자의 차이가 생겼다 : 연방 재정과 신탁청은 지불자에 속한다. 이로써 화폐통합의 실시비용은 '사회 공유물' 이 되었다. 반면 서부독일의 대은행들은 청산과정에 있는 독일 신용 은행을 통해 신설5개주내에 재빨리 유리한 기반을 구축해 놓았다. 화폐통합 전에 이미 독일은행(Deutsche Bank)과 드레스덴 은행은 열악하나마 동독 국립 은행의 지점망을 이용하고 DKB의 직원을 인수하기 위해 제 각기 DKB와 공동 협력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이 두 서부독일 신용기관들은 제2차 대전말까지 그들의 소유였었던 은행건물의 일부를 다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동부독일에서 신속한 사업활동을 펼쳐 나가고 과거 국립은행의 직원들을 인수한 서부독일 은행들의 업적은 부인하지 않는다. 허나 이 두 대은행들이 DKB를 등에 업고 동독의 금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다른 신용기관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이 두 은행들이 구 부채 삭감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가예산에 의해 상쇄되어야 할 사회공동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동부독일 진출이 험값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다시 말해 다른 기관들에 대해 적용된 적정 구매가격을 이들이 교묘히 피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독일 통일로 인한 이익 분배상의 불공평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3-9. 진퇴양난의 임금 정책

임금정책의 결정적인 변화는 1990년 7월 1일부로 D-마르크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임금 및 봉급을 2:1 비율로 교환하고, 이른바 동독의 '제2의 임금봉투'로 지칭되는 주요 생활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 폐지와 관련 일회에만 한한 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독일연방은행의 제안은 동독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샀다. 동부독일의 총파업 위기에 직면한 연방 정부는 국가의 보조비 폐지에 따른 보상비 지급 대신 근로수입을 1:1 비율로 교환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화폐통합과 더불어 임금 및 봉급 수령자들의 초임이 결정되었다 : 화폐교환 전까지만 해도 산업체의 월 평균 명목임금은 서부독일이 4,214 DM 인데 비해, 동부독일은 1,322 DM 이었다. 물론 이러한 임금차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과 사회공과금을 제한 서부독일 산업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2,250 DM 밖에 안 된 반면, 동독의 경우 임금과 봉급에서 염출되는 공과금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통합과 더불어 동·서독 임금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다. 따라서 화폐교환의 실시 이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근로수입의 발전 추이문제였다. 그러나 임금정책은 이와 관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

- 첫째,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수입이 조속히 인상되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 구매력 보장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1991년 말로 예정된 대다수 제품들에 대한 국가보조비 폐지에 따라 근로자들의 시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게 됨에 따라 노조측은 임금인상을 통하여 구매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둘째, 통화권이 개방되고 제품공급이 동등한 상황에서는 동·서독간 임금 격차가 조속히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수입격차는 서부독일로의 계속 이주 내지는 원거리 통근자들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동부독일의 생활상태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실망과 사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었다.
-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금비용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임금 지불과 이익 배당은 기업의 가치창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임금지불은 한편으론 기업의 생산성(근로투입에 따른 가치 창출)과 관계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아무리 높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산 제품이 시장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으면 기업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없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저생산성과 판매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의 어려움 등은 노사공동협약에 의해 결정될 임금 및 봉급문제가 서부독일식 모델에 의해 극복되어질 수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 딜레마는 단순히 임금정책만 갖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조 전환으로 말미암은 위기 상황하에서의 임금정책은 신탁청을 중재자로 한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1990년 7월 1일 이후 노사 공동 협약 당사자들은 그들의 능력 한도내에서 이러한 딜레마에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노조측은 협상 개시부터 화폐통합의 기초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 가격 보조금 폐지 및 공과금 부담을 인상에 따른 일시불 보상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1991년 상반기 임금협약정책에서 다시 미래로의 중요한 교량이 놓여졌다.⁴⁷⁾ 협약의 대부분의 목표는 장기간에 걸쳐 임금 및 봉급 수준 그리고 기타 노사협약 사항들(휴가기간, 휴가비, 연특별수당, 재산형성수단(vermögenswirksame Leistung))을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데에 있다. 치열한 협상끝에 금속노조는 1991년 3월 1일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 선구적인 노사협약을 관철

시켰다.⁴⁸⁾ 임금 및 봉급의 단계적 인상에 대한 체계적 방안은 다음 도표 (III.7)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도표 III.7 : Mecklenburg-Vorpommern 주 금속산업체의 노사공동협약에 따른

임금 및 봉급의 인상안(Schleswig-Holstein 주의 노사공동협약 기준)

	근로자 (임금그룹 6)	사무원 (봉급그룹 4)	기준
91. 4. 1일 부터	62.6	58.6	91. 3. 31
92. 4. 1일 부터	71	69	92. 3. 31
93. 4. 1일 부터	82	80	93. 3. 31
94. 1. 1일 부터	82	80	93.12.31
94. 4. 1일 부터	100	100	94. 4. 1

[자료출처 : WISI - 노사공동협약 기록부. In : WSI - 보고서 8/1991, 469쪽]

동부독일에서 체결된 노사공동협약은 당면한 경제침체상태로 보아서는 처음부터 너무 높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임금문제를 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노사공동협약에 의해 임금 및 봉급 수준이 단숨에 서부독일의 60 ~ 7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는 주장은 들어맞지 않는다. 1991. 6. 30일자 Bayern 주 대비 Sachsen 주 금속산업체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이러한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도표 III. 8. 비교) : Sachsen 주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계약상 시간당 기본급은 Bayern 주의 동료들의 54.2%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비교치(58.6%)보다 낮은 수치로써, 그 이유는 Sachsen 주 여성근로자들의 월근무시간이 (아직) 높은 데 있다. Bayern주에서 적용되는 노사공동협약상의 기본보수와 휴가 및 임금협약 외의 수당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Sachsen 주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Bayern 주에 비해 39.9% 밖에 되지 않는다.⁴⁹⁾

도표Ⅲ.8 : Bayern 주 대비 Sachsen 주 금속업체 여성근로자 노사협약 임금기준
(시간당 기본수당) (1991년 6월 30일 기준)

임금협약의 총 보수	Sachsen 주	Bayern 주
월 기본급	1,455.00 DM	2,482.- DM
업무 수당	72.75 DM	372.30 DM
재산형성 수당	—	52.- DM
월 합계	1,527.75 DM	2,906.30 DM
X 12	18,333.- DM	34,875.60 DM
휴가비	—	2,140.73 DM
연간 특별수당	305.55 DM	1,427.15 DM
임금협약상의 총 보수(1)		
- 연	18,638.55 DM	38,443.48 DM
- 월	1,553.22 DM	3,203.62 DM
Bayern 주 대비 Sachsen 주 임금수준	1시간 기준	1달 기준
임금협약상의 기본급(2)	54.2%	58.6%
임금협약상의 기본급	44.8%	48.5%
- 휴가 및 노사협약임금의 10%에 달하는 Bayern 주의 특별수당 참작	39.9%	43.1%

- (1) 야간 및 교대근무, 초과근무 등에 대한 기타 추가수당 및 추가할증금 제외
(2) 노사공동협약서에 언급된 62.6% 수준(월 기준)은 1991년 4월 1일부로 유효한 Sachsen 주 노사공동협약 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임. 서부독일의 임금은 1991년 3.31일자 Bayern 주 금속업체 노사공동협약 보수를 기준으로 함 (다시 말해, 1991년 4월 1일부로 유효한 6.7%의 임금인상이 있기 전의 임금 수준이 적용됨).

[자료출처 : R.Bispinck/WSI - 노사공동협약 기록부, “장벽들이 모두 허물어 졌는가?”
- 신설 5개주의 노사공동협약정책, In : WSI - 보고서 8/1991, 474쪽]

동·서부독일간의 수입격차를 평가함에 있어서 각 가정의 가계 수입을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부독일에서는 아직도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가계수입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취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실제 수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매력 격차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연금수혜자 가계의 수입은 1990년 1/4분기 때만해도 서독의 64% 수준이었는데 반해, 연말에는 60%로 줄어 들었다. 전체 근로자 가계의 1/3에 해당되는 상위권 소득자들의 수입은 1991년 1/4분기때 서부독일의 75%에 달한 반면 연말에는 68%에 그치고 있다(도표 III, 9 참조).⁵⁰⁾ 서부독일 대비(실질)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이유는 1991년 연말로 폐지된 가격보조비에 주어져 있다. 임금정책에 의한 소득향상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1991년 연말까지의 연금수혜자 및 근로자 가계의 소득상태는 악화되었다.

노사공동협약체제의 굴레 안에서는 임금 정책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조측이 임금 및 봉급을 단계적으로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한 것은 올바른 처사였다. 이로 인해 경제 불황이 보다 더 심각해졌다든지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경기침체의 장본인이라는 데 노조비난주장은 동부독일 경제문제에 대해 기본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기부진의 잘못을 노조측에 돌리는 이러한 편파적인 태도는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경영상의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하여 구매력을 보장하는 것이 임금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면, 이의 또 다른 과제는 판매부진으로 인해 현재 임금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판매시장을 개척코자 하는, 구조전환과정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시적 임금보조를 통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베를린 대학 경제학자들은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동적 임금보조 제도' (sich selbst ueberwindendes flexibles System von Lohnsubventionen)를 제안하였다.⁵¹⁾ 이 구상안의 주요 관심사는, 전체 경제(국가 사업 및 농업 제외)의 임금비용을 75% 정도 줄이는 것이다. 이때 보조비 감축은 서부독일 수준으로 임금상승속도와 연결되어, 임금이

인상되면 동시에 보조비도 감축되도록 하였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최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같은 임금보조 모델 실시에는 비용은 1,650억 DM으로, 취업에 따른 추가 수입과 절약을 공제하였을 때의 실제 비용은 1,340억 DM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다.⁵²⁾ 물론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버클리 모델의 실시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 : 이 임금보조방안은 노동집약적인(arbeitsintensivere) 기술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낙후해 있을 경우에 한해 이 방안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임금보조조치는 가격 경쟁에 악용될 수도 있다.⁵³⁾

원래 임금보조에 반대하였던 독일경제연구소가 신탁청 산하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보조 방안을 제안하였다.⁵⁴⁾ 이 방안은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 대부분의 대책들이 동부독일 내에 개인 기업들의 자본형성에 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동안에 기업들은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자금 결산에 필요한 충분한 유동성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 성공 여부가 장기간의 '성숙기' 를 지나서야 밝혀지게 될 자본형성 보조방안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단기적 효과가 있는 근로비용 감축대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DIW는 임금보조의 단계적 감축을 3~4년 내로 완전히 종결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계속해서 시간당 노사공동협약 임금이 적용되는 기일을 D-데이로 하여 50%의 감축실시를 개시하기로 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임금보조 대책 하에서는 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1992년도의 보조액은 약 150억 DM에 달할 것이다.

본격적인 구조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 직접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임금보조는 시기적으로 제한되어야 효과적이다. 동부독일의 임금정책 상황을 서부독일의 기준으로 측정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전환기에 있어서는 정치도 구조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 및 봉급을 서부독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도표III.9 : 1991년도 1/4분기 및 4/4분기 동.서부독일 주 실소득 비교

가계	소득		신설5개주내 상대적 구매력(1) 비율	구매력 차이를 고려한 동부독일 소득 (단위 DM)	실제소득자 (서부 100 기준)	
	서 부	동 부 (단위 DM)			1/4분기	4/4분기(3)
전체 연금수령자 가계	2794	1298	137	1,781	64	60
전체 근로자 가계	4437	2738	129	3,546	80	73
전체 근로자 가계중 1/3 상위 소득권자 가계	6864	3976	129	5,122	75	68

(1) 서부독일주의 D-마르크 구매력 대비 신설5개주의 D-마르크 구매력

(2) 1990년도 평균 수치

(3) 추 계

[자료출처 : DIW 및 IAW 계산 : DIW/IAW, 동.서부독일 주 개인가계의 소득 및 소비.]

In : DIW - 주간보고서 29/1991. 411쪽]

주)—————

- 1) Wirtschaftswoche: 1991.5.3 자 p.41.
- 2) Schürer, G.: Die Bilanz ist gelogen. in: Wirtschaftswoche Nr. 30/1990 참조
- 3) 연방통계청 발행 Zur Sozialproduktberechn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iesbaden 1990 에 근거하여 계산함.
- 4) Görzig, B./Gornig, M.: Produktivität und Wettbewerbstätigkeit der Wirtschaft der DDR. in: DIW-Beiträge zur Strukturforchung. Heft 121. Berlin 1991, p. 27.
- 5) Cornelsen, D.: DDR-Wirtschaft: Ende der Wend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trä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 1-2/90. 1990.1.5 자 및 동일저자의 Die Wirtschaft der DDR in der Honecker-Ära. in: Vierteljahre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Heft 1/1990, p. 70 이하 참조.
- 6) Maier, H./Maier, S.: Vom innerdeutschen Handel zur deutsch-deut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gemeinschaft. Köln 1990, p. 81.
- 7) Görzig, B./Gornig, M.: Produktivität. 앞의 책 p.81.
- 8) Görzig, B./Gornig, M.: Produktivität. 앞의 책 p.38.
- 9) 앞의 책
- 10) Institut für Angewandte Wirtschaftsforschung(Hg.): Wirtschaftsreport - Daten und Fakten zur wirtschaftlichen Lage Ostdeutschlands. Berlin 1990, p. 57.
- 11) Vogler-Ludwig, K.: Verdeckte Arbeitslosigkeit in der DDR, in: ifo-Schnelldienst, Heft 24/90, p. 7.
- 12) Schwarz, R.: Über Innovationspotentiale und Innovationshemmnisse in der DDR-Wirtschaft. Wissenschaftszentrum Berlin. Berlin 1991 참조
- 13) Wissenschaftszentrum Berlin 의 Frieder Naschold 제공자료에 따름. Frankfurter Rundschau 1991.7.27 참조
- 14) Görzig, B./Gornig, M.: Produktivität. 앞의 책 p.42.
- 15) Maier, H.: Integrieren statt Zerstören. Für eine gemischtwirtschaftliche Strategi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eiträ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B 29/91 1991.7.12 자 p.10.
- 16) Maier, H./Maier, S.: Vom innerdeutschen Handel zur deutsch-deut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gemeinschaft. Köln 1990, 앞의 책 p.78.
- 17) 앞의 책 p.81.
- 18) Merkel, W./Wahl, S.: Das geplünderte Deutschland.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m östlichen Teil von Deutschland von 1949 bis 1989, Bonn 1991, p. 81.
- 19) Maier, H.: Integrieren statt Zerstören. 앞의 책 p. 11.
- 20) 동독 Mark 로 환산한 GDP 기준 수출액의 Valuta 가치. Görzig, B/Gornig, M.:

Produktivität. 앞의 책 p.17 & 52. 자체 계산임.

- 21) 앞의 책 p. 84.
- 22) DIW: DDR-Wirtschaft im Umbruch. Berlin 1990, p. 29.
- 23) Der Spiegel Nr. 37. 1991.9.9 자 p. 29.
- 24) Koko 외환이윤이 어느 정도로 내국교역의 지출에 포함되어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25) Görzig, B./Gornig, M.: Produktivität. 앞의 책 p.59, 72, 84 이하.
- 26) 독일연방의회 발행 Materialien zur Lage der N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87, Bundestags-Drucksache 11/11. 1987.2.18 자 p. 598.
- 27) DIW: DDR-Wirtschaft im Umbruch. 앞의 책 p. 23.
- 28) Hübner, K.: Warum die DDR ökonomisch scheitern musste. in: Deutsche Postgewerkschaft, Gewerkschaftliche Praxis. Heft 3/1991, p. 14 이하 참조
- 29) Merkel, W./Wahl, S.: Das geplünderte Deutschland. 앞의 책 p. 14 이하 참조.
- 30) Härtel, H.-H./Krüger, R.: Aktuelle Entwicklungen von Marktstrukturen in Ostdeutschland aus wettbewerbspolitischer Sicht. HWWA-Report Nr. 86, Hamburg 1991, p. 6.
- 31) 이에 관하여 Arbeitsausschuss zur Prüfung de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Delors-Bericht), Bericht zu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in: Bofinger, P.: Der Weg zu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in Europa - Analysen und Dokumente. Wiesbaden 1990 참조
- 32) 1990 년 가을에 작성된 다음 연구를 참조. Heseler, H./Hickel, R.: Der maritime Sektor im Umbruch - Wirtschaftsstrukturelle und beschäftigungspolitische Vorschläge für Rostock. in: PIW-Studien Nr. 6 Bremen 1990 참조
- 33) Haussmanns Plan zu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mit der DDR. in: BMWI-Tagesnachrichten. 1990.2.8 자 Nr. 9507
- 34) 1990.2.9 자 연방총리에게 보낸 경제자문위원회의 편지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SVR)" in: SVR, Jahresgutachten 1990/91, Bundestagsdrucksache 11/8472, p.306 이하
- 35) Deutsche Bundesbank: Auszüge aus Presseartikeln Nr. 5-30/1990 에서 모든 시기를 인용함.
- 36) 독일연방은행 Pöhl 총재가 Modrow 정권의 경제장관 Christa Luft 가 서독을 방문했을때 자신의 애당초 관점을 수정한 후, 호텔에서 그녀에게 화환을 전달토록 할 때 정치가 경제이성을 이겼다는 자필 메모를 첨부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음.
- 37) SVR 의 앞의 편지 참조
- 38) 앞의 책 Haussmanns Plan 참조
- 39) Flassbeck, H. u. a.: Reform der Wirtschaftsordnung in der DDR und die Aufgaben der Bundesrepublik. in: DIW-Wochenbericht 6/1990.
- 40) Schiller, K.: Die Welt 1990.5.21 자

- 41) 이미 1990년초 연방정부의 통일노선에 관한 특별비망록의 일환으로 제출된 다음과 같은 비판을 참조. 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 Sozio-ökologisches Sofortprogramm - Risiken der deutsch-deutschen Währungsunion auffangen. in: Memo-Forum 16/1990
- 42) Deutsche Bundesbank: Vorschläge des Zentralbankrats zu einem Umstellungsgesetz (vom 2.4.1990). in: Auszüge aus Presseartikeln Nr. 28/1990
- 43) Kutscher, G.: kein schlechter Reallohn - Überlegungen zum Umtauschverhältnis 2:1. in: Handelsblatt 1990.4.10 자 참조
- 44) 동독에 있어서의 통화정책적 경과조치는 다음 논문 참조. Deutsche Bundesbank: Ein Jahr deutsch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in: Monatsberichte der Deutschen Bundesbank 7/1991, p. 21 이하 참조
동독 은행제도의 구조에 관한 일별에는 다음 논문 참조. Deutsche Bundesbank: Die Wä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hang 3. in: Monatsberichte der Deutschen Bundesbank 7/1990
- 45) 이에 관하여는 Pohl, R.: Alt-Schulden der DDR-Betriebe: Streichung unumgänglich. in: DIW-Wochenbericht 36/1990 참조
- 46)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Altschulden in Ost - Eine schwere Last. in: DIW-Wochenbericht Nr. 39/1991, p. 7.
- 47) Bispinck, R.: "Alle Dämme gebrochen?" - Die Tarifpolitik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m 1.Halbjahr 1991. in: WSI-Mitteilungen 8/1991, p. 466 이하
- 48) 앞의 책 p. 469.
- 49) 앞의 책 p. 474.
- 50) Mitarbeiter des DIW/IAW: Einkommen und Verbrauch der privaten Haushalte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in: DIW-Wochenbericht 29/1991
- 51) Ackerlof, G. A. u.a.: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1991
- 52) Flassbeck, H. u.a.: Allgemeine Lohnsubventionen - kein Ausweg aus der Beschäftigungskrise in Ostdeutschland. in: DIW-Wochenbericht 36/1991 참조
- 53) Ders.: Kritik 앞의 책 p. 512 이하 참조
- 54) Ders.: Subventionierung und Privatisierung durch die Treuhandanstalt: Kurswechsel erforderlich. in: DIW-Wochenbericht 41/1991

4. 경제 및 화폐통합에 대한 하우스만 계획¹⁾

4-1. 동독과의 경제 및 화폐통합 추진 방안

화폐통합은 단지 시장 및 급진적인 경제 개혁 하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또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동독 내에서의 확고부동한 시장 경제적 개혁이 화폐통합에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동시에 화폐가치 안정 및 긴축 예산 정책을 목표로 하는 경제 및 재무정책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물론, 화폐통합을 실시함에 있어 양독간의 경제력을 사전에 억지로 균등화시킬 필요는 없으며, 이는 또한 - 설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통화정책상의 통합과정은 상당한 주권의 이전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현재 D-마르크가 점하고 있는 그 국제적 위상 (두 번째로 중요한 예비통화: Reserve- waehrung, 유럽 통화권 내에서의 안정 기반)과 관련하여 D-마르크의 위력이 약해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독측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화폐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독이 자국 통화정책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독일 연방은행에 이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 공동체 국가들 간의 경제 및 화폐통합 조치의 일환으로서 서독 역시 자국의 자율권 (Autonomie) 을 언젠가는 유럽 공동체 발권은행으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 시기는 이 은행이 창설될 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여하튼 연방 정부는 유럽 공동체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할 것이다.

전반적인 동독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하루라도 빨리 실시되어야 하며, 이 전환과정은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이 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 영업의 자유

1 1990년 2월 8일자 연방 경제성 발행 일일 홍보 자료, 제 9507호

-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권 인정
- 자율적인 민간 사업의 확대
- 가격 형성 및 경쟁에의 자유
- 통화 긴축 정책
- 은행제도의 이원화
- 자본시장 구축

바로 이같은 개혁들을 통해서만이 민간자본의 대거 투입이 가능해질 것인 바, 이러한 투자가 없이는 동독 경제 발전은 요원한 희망사항으로만 그칠 것이다. 동시에 기업차원에서 추진하는 직접 투자의 일환으로서, 현대적 생산시설과 기술 및 경영상의 know-how를 동독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 때 이같은 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화폐통합의 제 1단계에서 외국인들에게 제한적 태환성 (Auslaenderkonvertibilitaet)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활발해질수록 외국인들의 투자 역시 늘어날 것이다. 이로써 안전성을 겸비한 유동적인 환율체제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적 선결조건으로 동독 경제 및 통화에 대한 신뢰성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때 양독 화폐의 교환비율은 절대적으로 현실성 상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양독간의 지불능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으로선 가격, 임금 및 연금에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자본거래에 이르기까지 미치게 될 개혁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독 마르크의 환율을 하향 조정해야 함을 뜻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율 안정을 위한 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연방 정부는 경기 안정 대책용 장기융자방안을 입안 '실시하여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현실적인 환율책정은 동독 마르크의 신뢰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동독 기업들에게는 이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터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동독이 과도기간 동안 환율을 하향 조정하여 동독 마르크를 - 경우

에 따라서는 법적 의무조항을 설치하여 - D-마르크에 일반적으로 묶어 놓는 “오스트리아” 모델을 도입한다면, 이같은 긍정적 효과는 보다 강화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의적 결속 (Selbstbindung)을 반드시 법률상의 주된 상실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오스트리아와 서독간의 경우와는 달리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도 다른 두 국민 경제 체제가 어떻게 서로 적응·통합해 갈 수 있는지가 문제시된다. 이 때 이주물결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환율안정을 위한 모든 시도들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D-마르크나 동독 마르크간의 현실적인 환율책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동독에서 시장개혁이 실시되기 전에는, 다시 말해 앞으로의 가격 및 생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이를 미리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수출이 증대되고 이로써 동독 마르크의 화폐가치가 격상될 경우, 외국인들의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다. 통화안정 정책을 펼친다면 국내 물가에 대한 전반적 통제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4-2. 3단계 방안

시기를 정해 놓고 일을 추진시킬 경우 개혁 속도는 빨라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동·서독간의 경제 및 화폐통합을 유럽공동체 단일시장이 발효되는 1993년 1월 1일 전까지 완결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해 볼 수도 있다.

가. 제 1 단계

동독 내에 시장경제적 개혁 방안을 도입함.

그 요체는,

- 영업의 자유
-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권 인정

- 외국인들에 대해 자유로운 투자 허용
- 경쟁관계 구축
- 완만한 가격인상 및 임금 자율화
- 세법 및 기타 공동 사회보장법 개혁
- 동독 국립은행의 개혁
-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 활동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원적 은행제도 구축을 통한 신용 대부 제공
- 통화 긴축 정책과 신용대부의 간접 규제 (통화량 조절, 금리)
- 실업보험체제 구축
- 대외 교역 독점권의 폐지
- 초과 구매력 해소
- 지정 환율가 (Wechselkursregimes)의 변경과 이에 따른 시장가 환율의 전환 (제한적 외국인 태환성: Auslaenderkonvertibilitaet)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서독측 지원방안:

- 주로 즉각적인 지원과 사회 간접시설 구축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지원
- 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부제공 (ERP, 중소기업, 관광산업)
- 상거래 규제 완화
-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장기 융자 방안
- 경제 및 금융정책 상의 자문

나. 제 2 단계

- 경제안정정책 실시 및 예산의 긴축운용
- 전 제품가격의 자율화
- 은행 및 보험제도를 경쟁체제로 전환 (민영·공영 기관 병행)
- 자본 시장 구축
- 단일 내수 시장 구축

- D - 마르크를 안정기조로 하는 동독 마르크의 자의적 결속 (Selbstbindung)
- 긴축재정운용과 제 개혁 입안들의 달성
- 완전 태환성과 자본거래의 자율화

다. 제 3 단계

- 경제 정책의 수립
- 경제 및 화폐통합의 제도화 및 단일 공동 통화로서의 D-마르크 도입

4-3. 독일 경제 기반의 안정 유지

연방정부는 시장경제적 개혁정책을 통해 서독의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 같은 시장경제 정책이 일반적으로 지속되어야만 동독에서의 개혁 또한 가능해질 수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서독은 추가 성장 및 취업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의 과제는 기본 여건의 지속적 향상을 통해 서독이라는 경제임지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5. 연방 수상 앞으로 보낸 '90. 2. 9일자
경제자문위원회 (경제 5현)의 공개 서한²⁾
(동·서독 화폐통합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수상님!

동독과의 화폐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근의 고려들에 대해 저희 경제감정 자문 위원들은 염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7일에 있었던 내각 결의를 계기로 삼아 본 위원회는 조속한 화폐통합에 대한 저희의 유보적 입장을 이같은 공개 서한 형식으로 통지코자 합니다.

본 서한에서는 동독 (발권은행) 마르크를 D-마르크로 대체시키는 화폐통합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동독이 이 같은 화폐통합에 동의한다는 것은 화폐 및 통화 정책상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저희들은 조속한 화폐통합을 통해서 동독인들의 대거 이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생활수준이 곧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동독 주민들에게 불어 넣어, 그리하여 이들을 고향땅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독측이 이를 겨냥한 분명한 의지표현을 해야 함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체를 정의하자면, 이는 광범위한 경제 개혁의 즉각 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방안들은 특별 평가서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화폐통합과 경제 개혁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연방 내각의 성명서는 무리없는 화폐통합에의 길을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2 Brief des Sachverständigenrates vom 9. Feb. 1990
an den Bundeskanzler: Zur Frage einer Währungs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in :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472 S. 306-308.

것은 어떠한 순서로 이 전환과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절대 화폐통합부터 먼저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수십년간의 부실경제로 말미암아 동독은 통화초과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 마르크를 D-마르크로 교환시킨다면 그렇지 않아도 필요 이상으로 높은 마르크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화폐통합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경제체제의 유산을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활용 가능 자본을 새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사인줄 생각합니다. 지난 번 제출한 특별 평가서에서 우리는 초과통화의 해소방안으로, 우선 동독 국가 소유 재산을 예금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이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DM의 도입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화폐통합과 더불어 생활수준 역시 서독과 균등해 질 것이라는 그릇된 착각을 갖도록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요원한 소망사항일 따름입니다. 소득은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쳐져 있습니다. 물론 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 임금 및 연금 또한 곧 현저히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를 위한 실질 경제 분야에서의 선결조건들이 사전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폐통합을 통해서 이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 단일 통화는 양독간의 소득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줄 것입니다. 동독 주민들은 곧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요구해 올 것이며, 서독으로서는 이를 쉽사리 물리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명목 임금은 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독의 산업입지란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로써 시급한 서방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득 (임금 및 연금) 격차를 “결핍 재정 보전” (Finanzausgleich)을 통해 해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연방에 대한 압력은 가중될 것이며, 이로써 국가가 짊어질 부담은 급격히 증가될 것입니다. 그 결과, 세금인상이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공 이전 자금이 소비성 용도에 지출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 사회간접시설 사업 부문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자체능력향상만이 동독 경제를 살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자금 결핍 현상이 동독 주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비가 아니라 개인 및 공공투자가 늘어 나야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이전은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화폐통합이 동독에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은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동독 통화의 안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급격한 투자증대란 실제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동독 가격 구조 체제가 왜곡되어 있으며 투자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화폐통합을 실시할 경우,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독의 입지조건은 서독 지역보다 점점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화폐통합에 기대를 걸었던 자들은 - 의도와는 달리 -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냉정한 현실이 도처에서 기세를 떨치게 될 것이며, 바로 그때부터 이주 물결은 드세어질 것입니다.

2.

조속한 화폐통합은 동독의 생산과 취업상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독 제품들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마르크라는 태환가능한 통화를 취득하게 된 소비자들은 서독

내지는 서방 외국제품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동독 경제의 구매력은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동독 기업들은 순식간에 국제경제와 경쟁 관계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현재 동독의 경쟁력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이러한 경쟁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독 기업들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동독산 제품판매가 예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 생산량과 생산성은 점점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소득과 취업율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D-마크 도입과 함께 서방제품 구입이 가능해 졌다는 순간적 이점 이면에는 동독 주민들의 소득이 서방 물자 구입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자신들의 소득의 기반을 오히려 갉아먹는다는 맹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곧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대규모의 이주 움직임이 또 한차례 불어 닥칠 것입니다.

사전에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을 다져 놓았을 때에야 이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소의 전제조건은 시장의 요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업자유 (Gewerbe-freiheit)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선결조건으로서 신규기업의 시장 개척을 가능케 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3.

선 화폐통합 구 가격개혁 방안은 동독 내 제품거래에 막대한 비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는 다방면에 걸친 국가의 간섭으로 인해 생산비용과 제품가격간의 균형이 맞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폐통합을 실시한다면, 교역추이는 왜곡된 가격구조를 심분이용하고자 들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독 기업들은 외국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제품을 생산 하면서도, 정부의 지원덕택에 경쟁력을 획득하여 제품을 싼 값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가 종전보다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높은 공과금을 지급 해야 하는 경우, 설사 동독에

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곡된 가격구조가 빚어낸 이같은 수출·입 정책은 다시 말해 대외무역에서 이익 대신 손해만을 가져 올 것입니다.

동독에서의 가격개혁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경제가 이같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품가격은 국민경제 비용에 맞추어 나갈 수 있어서, 왜곡된 가격구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격장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우리는 화폐통합이 양 독일 경제의 적응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출한 특별 평가서에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태환제를 실시토록 하고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태환을 가능케 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화 정책이 동독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맥락을 달리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화정책을 조금씩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밖에도 이는 자발적인 경제 정책상의 노력없이도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독내의 개혁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5.

그렇다고 화폐통합을 반드시 양 독일국가 간의 경제적 적응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초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가격 형성에 대한 개혁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격구조가 세계시장 조건에 적응하였을 때, 그리고 시장경제 조건에 맞는 은행 및 신용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그 밖의 개혁 방안들 역시 점차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때, 비로소 과감한 통화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독 발권 은행으로서 이으로써 DM에 대한 고정 환율 필요조건을 충족, 태환제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여건을 조성하고 난 다음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협상해 나아가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화정책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은 기대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 동독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미래에의 확신을 공공히 다져나감으로써만 동독주민들의 이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조건은 동독 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질서 체제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이 개혁에 대해서는 특별 평가서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진정한 새출발의 신호로 간주될 수 있는 변화가 아직까지 동독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Joint-Venture-법과 같이 마지못해 채택된 방침들은 현재 동독의 지도부들이 아직까지 실제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주 물결이 계속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울 바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은 개혁방안들이 화폐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동독 경제체제의 근본적 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화폐통합을 우선 추진 하겠다는 정책은 자율적인 경제기반의 구축은 커녕 자금만 낭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물결을 장기적으로 억제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열거한 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동독의 경제 개혁이 우선 추진되어야지 화폐통합을 먼저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서독에서는 이주민들의 수용 (Aufnahmeverfahren) 증지와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에 대해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같은 방법을 통해 이주 물결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같은 조치는 아직까지 이주를 망설이고 있던 동독 주민들까지도 이주쪽으로 종용하는 결과를 자아낼 것입니다. 이로써 이주물결이 약해지기 보다 오히려 더 세어지게 될 것입

니다. 이와 반대로, 서독이 동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일단 동독에 남아 앞으로의 사태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간동안 개혁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 때 사람들은 계속 동독에 남아 있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수상님, 저희들의 경의어린 일언을 널리 헤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

경제 자문위원회 회장

Hans K. Schneider 교수 올림.

6. 화폐교환법에 대한 중앙은행 자문위원회의 제안3)

DM를 동독의 새 통화로 도입하자는 동독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제안과 관련하여, 연방은행은 서독 정부로부터 - 국가조약의 일환으로서 - 양독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화폐교환법 초안을 제시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독일 연방 은행의 중앙은행 자문위원회 (이하: 중앙자문위)는 이같은 연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90년 3월 29일에 가진 회의에서 화폐교환법에 대한 “기준” (Eckwerte)을 결정, 이를 연방정부에 그 추천방안으로 통보하였다. 이 결의사항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이는 당시 논의사항의 결과만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 이미 연방정부에 대해 실시하였듯이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중앙자문위는 대 정부 추천방안의 작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특히 유념하였다: DM가 새 통화로 동독에 도입됨으로써 동독 경제의 경쟁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DM의 도입이 가급적이면 동독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DM가 새통화로 동독에 도입될 경우, 동독은 완전태환이 가능한 통화를 구비하게 되는데, 이로써 동독 경제는 모든 산업국가들과 경쟁을 치루어,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화폐교환 시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연방은행의 주 관심사로 D-마르크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들 수 있다.

현 상황은 현실적인 환율시세에 입각한 교환을 책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동독 마르크 대비 D-마르크 공식 환율은 4.4:1 내지는 3:1 또는 2.4:1 등으로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1:1의 교환율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1:1 교환비율이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

3 Vorschläge des Zentralbankrats zu einem Umstellungsgesetz,
in : Pressenotiz der Deutschen Bundesbank, 1990년 4월 2일.

용될 경우 이것이 동독 경제에 안겨 줄 부채와 비용의 과중은 - 연방 은행의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 - 대부분의 기업들로서는 감당해 내기가 힘들 것이며, 따라서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도 힘들 것이다. 동독 스스로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기업 부채에 대한 교환비율은 2:1 내지는 2.5:1로 조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1:1로 교환비율이 책정될 경우 동독 정부는 주택사업 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 원금과 이자까지도 앞으로는 모두 D-마르크로 지급해야 하는 - 상황의무도 결코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동독 금융기관들의 자산항목에 대해서는 2:1, 부채항목, 즉 예치금과 유통현금에 대해서는 1:1의 비율을 적용시킬 것 같으면, 국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5백억 ~ 1천억 DM 상당 규모의 차액보전청구가 불가피해질 것인바, 이에는 1:1 비율로 교환된 부채항목에 대한 이자를 현실 금리시세에 맞게끔 지불토록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동독의 정부 부채 상태는 그러나 현재로서도 이미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연방은행은 현금과 예치금에 대한 2:1 교환비율은 부담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1 동독 마르크의 현 가치가 결코 1 DM가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금에 대해 2:1의 교환비율을 적용시킬 때 절약해서 모은 예금의 “실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즉 이로써 동독 예금자들은 고급품을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연방은행은 - 특수한 사회 상황을 고려 - 동독 주민 일인당 최고 2천 동독 마르크까지 1:1 비율로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4인 가족은 최고 8천 마르크까지 교환할 수 있다. 이로써 대다수 동독 주민들의 예금은 완전히 1:1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은행은 이상의 예외규정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는 통화정책상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일단 교환된 D-마르크에 대한 처분은 각 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이다. 물론 연방은행은, 동독 금융기관들이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에서

와 같은 장기 고금리 투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밖에도 동독 정부가 이른 바 국유재산을 - 화폐교환에 따른 결손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 주식화하여 일반 예금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임금 및 연금 등에 대한 교환비율은 동독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독의 현 가격 및 비용구조가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관계로 문제 해결이 그리 용이치 않다. 그리하여 약 5백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소비재에 대한 가격보조가 빚어 낸 왜곡된 가격제도를 화폐교환 실시일 전에 폐지시켜 가격을 자율적으로 인상·조절시키자는 안이 대두되었다. 그렇게 될 경우, 임금과 연금도 동시에 인상되어야 한다. 이 같이 인상된 임금을 1:1 비율로 교환시킬 경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동독 경제력이 더욱 더 약화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임금 및 연금에 대해서도 2:1의 교환비율을 책정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물론 이로써 현재 총 임금이 절반으로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D-마르크 도입 이후의 실질 임금은 종전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화폐교환 실시 이후의 임금계약 체결문제는 각 기업 및 지방단체들이 근로자측과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교환비율이 1:1로 책정되고, 왜곡된 가격구조 역시 다시 정상화되었을 경우, 생필품 가격의 양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가격 인상 - 임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우려 또한 커진다. D-마르크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은행으로서 이 같은 악순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중앙은행 자문위원회 결의 사항

중앙자문위는 양 독일 국가의 정치적 통합의지와 이에 따른 동독 지역에 대한 D-마르크 통화권 확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제 1, 3, 6항들은 필수사항으로서, 그리고 제 2항은 추천사항으로서 국가통합조약 규정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제 1 항: 동독 마르크의 D-마르크로의 화폐교환시 부채 (유통 자금 이전에 따른 부채 포함)에 대해서는 2:1의 비율을 적용토록 한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2천 DM까지 1:1 비율로 교환토록 하는 예외를 허용한다. 교환된 D-마르크에 대한 처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토록 한다.

제 2 항: 2천 DM 이상의 동독 예금 소지자에 대해서는 양 독일 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들에게 신탁청 재산과 사유화 재산에 대한 지분참여를 보장토록 한다.

제 3 항: 국가조약은 동독 통화권 내에서의 연방은행법 및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앙자문위 결정사항들이 동독에서 관철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제 4 항: 연방은행이 같은 과제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베를린에 1개의 한시적 행정기구와 동독 전 지역에 약 15개의 지점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 5 항: 동독에 금융기관법을 도입하여 서독 및 외국 신용기관들의 지점 설치를 보장토록 한다. 의무 금리 규정 및 외환제한 규정을 폐지토록 한다.

제 6 항: 동독 공공 기관에 대한 신용 대부를 제한토록 한다.

7. 1:1 교환비율에 대한 반론⁴⁾

양독간의 화폐통합을 둘러싼 동독 마르크 대 서독 DM의 교환 비율 책정 문제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간 화폐통합상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각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화폐통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화폐 잔고, 채권, 부채, 임금 및 연금에 대한 적정 교환비율 책정과 교환 방법이다.

상품 가격은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단일 통화지역 내에서는 상품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금리 역시 자본 이동이 가능한 관계로 단일성을 띠게 되며, 이 역시 시장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화폐통합을 점진적으로 실시, 동독 마르크 대 서독 DM의 교환비율을 유동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면, 이 역시 시장동향에 따르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화폐통합은 2년 후 화폐 교환일의 유통 환율가를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Saarland를 연방주로 통합시킬 때에 바로 이 같은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동독과의 화폐통합 과정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시장에 의한 환율가를 대신하였다.

화폐 잔고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결산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왜냐하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동독 국립은행에 대한 동독 기업들의 적립금이 약 6백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금액을 보다 더 확대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원화된 은행제도에서는 이 같은 적립금은 가시예금 (Sichtdeposit: 단기 적립금)으로서 소규모 통화량 M1에 속한다. 따라서 동독의 화폐잔고는 지금까지 추정했던 2

4 Prof. Dr. Horst Siebert (킬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1990년 4월 2일자, Handelsblatt Wirtschafts- und Finanzzeitung
관련 기사

천억 동독 마르크 (유통자금량 170억 동독 마르크, 개인 예치금 1천 7백 7십억 동독 마르크) 보다 높은 2천 6백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게 된다 (국가 예치금 제외).

화폐통합은 DM 통화권의 확장을 의미한다. 잠재적 생산성에 입각한 통화 정책에 따르면 화폐통합 D-Day시 통화량은 잠재생산성이 증가하는 만큼 늘어날 수 있다. 동독의 잠재 생산성은 대략 다음과 같이 추계해 볼 수 있다: 동독 주민수는 서독의 26%에 달한다. 동·서독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26% 정도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1/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재생산성은 26%의 1/3인 10%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통화권의 통화량은 약 10% 정도 늘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통화량 M1은 420억 DM이 될 것이며, 총 통화량 M3은 1,250억 DM이 될 것이다. 이 때 M3의 경우에는 다음의 불안정 요소가 첨가되는 바, 정기 예치금 (Termin-einlagen)을 봉쇄한다 할지라도 - 이것이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40여년 간의 강제적 소비억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급격한 소비성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총 통화량 1천 2백 50억 DM 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한시적 봉쇄가 필요하다.

1:1 비율로 화폐를 교환시킬 경우, 재산 사유화를 통해 1천 3백 5십억 동독 마르크는 유통과정에서 수거하여 폐지시켜야 한다. 한시적 봉쇄방법은 이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화폐 통화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소액 예금자에 한해서만 1:1로 교환토록 하고, 나머지 저금에 대해서는 다른 환율을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투기성 동독 마르크 구입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들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독 기업들의 부채가 2천 6백억 동독 마르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 부채들에 대해서도 1:1의 교환비율을 적

용시켜, 이에 따른 시장금리를 요구한다면 동독 기업들은 자본 비용의 과중 부담 속에서 세계 경제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동독 기업들이 계획경제의 잣대 속에서 마치 불사조와 같이 솟아오를 것을 기대하는데, 이 때 과거 부채가 이들의 발목을 휘감고 있음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바로 이같은 과도한 자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만약 동독 재산에 대해 차액 보전 청구권을 도입한다면 유통 자금에 대해서 만큼은 부채와는 다른 교환비율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환율책정시 차액 보전 청구액 규모와 이것이 연방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 교환 비율 책정도 간단히 처리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이 임금 교환율에 따라 동독주민들의 이주여부가 판가름날 뿐만 아니라, 이는 동시에 동독기업들의 경쟁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화폐교환 당일 해당 임금이 너무 높을 경우, 이는 또 다른 대량 실업의 주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다시 서부로의 이주를 강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임금 교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역동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화폐 교환 실시 당일의 임금은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화폐교환일 이후부터는 임금이 급격히 상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임금이 “1:2 plus α ” 공식으로 교환될 것임을 의미한다. “plus α ”란 첨가치는 식품에 대한 국가보조 폐지와 사회보장 보험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증가할 임금폭이다. 식품은 매매품으로, 단일 통화권에선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될 것이기 때문에 화폐교환 실시 수일 전에 식품에 대한 국가보조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식품가격의 인상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은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서독 보험체제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 보험수기도 인상될 것

이다. 이 또한 임금 인상요인으로 간주된다. 요컨대 동독 내 임금은 최소한 이상에 언급한 부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액만큼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

이 같은 계산 방법은 화폐교환 실시 당일 해당 교환 임금이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의 임금 인상 문제는 노사협약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데, 현재 전망으로는 계속 인상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굳이 그 까닭을 들자면, 보다 높은 생산성을 이룩할 수 있는 신규 및 소규모 회사는 대기업의 우수 인력을 유치 하고자 노력할 것인 바,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실시될 것이다. 기업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심지어 두 자리 수의 생산성 증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1948년에 있었던 화폐개혁 후의 실질 성장율을 상기해 볼 것 같으면, 첫 5개월 간 산업부문에서의 생산성은 50% 정도 증가하였다. 1949년 하반기부터 1951년 상반기까지의 실질 국민 생산고는 15 ~ 20%가 증가하였다.

조심스런 임금 교환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비로소 시장원칙에 입각한 임금의 세분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교환 실시 당일의 적정 임금 책정 문제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Loandrift 는 효율 임금을 교환임금 이상으로 인상시킬 것이다. 이 같은 임금 정책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생산적인 회사와 업종으로 직장을 옮겨가도록 작용할 것이며, 이는 특히 산업 부문의 초과인력을 전망이 좋은 용역 사업 분야로 이전시킬 것이다. 이로써 동독 주민들의 기대가 보다 빨리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같은 선결 문제점 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시장 경제 체제가 그 성과를 보이게 될 것이며, 다른 체제보다 결국 우수하다는 입증을 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연금 교환 문제는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연금 수혜자 들의 시간 개념은 젊은이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낮은 연금 - 45 년간에 걸쳐 연금 보험을 지불하여 취업자가 받게 될 규정 연금은 월 480

마르크임 - 은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 교환당일의 적용 임금이 연금 계정의 기초가 된다. 만약 이 때 연금을 실질 임금의 70% 선에서 책정한다면, 이는 낮으면 낮았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금 교환은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실질 임금이 급속히 인상될 경우 연금 역시 대폭 인상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화폐잔고에 대한 1:1 교환비율은 통화정책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가격안정화를 저해하는 조치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부채와 임금에 대한 1:1 교환비율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끝으로 지적해 둔다.

8. 올바른 정책방향⁵⁾

동부 독일인들의 참을성과 신뢰가 지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조속한 통일을 요구하였는데, 이로써 복지향상에 대한 꿈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선거가 끝난 이제, 곧 새 출발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한 가지만이 이들을 아직 동독에 붙들어 놓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화폐통합의 시기와 조건을 둘러 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이 동독 주민들에 아무런 이해를 사지 못하고 있음은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못된다.

일인당 2천 마르크에 한해서만 1:1 비율로 교환시키고 대부분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1 교환비율을 적용시킬 것을 권장하는 독일 연방은행 자문위원회의 제안은 이들에게 찬물세례와 다를 바가 없다. 선거를 노린 사기 행위라며 격분하는 동독 주민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설사 연방 수상이 “소액의 예금자들”에 대해서만 유리한 교환비율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한 여타 정치가들의 여러가지 부주의한 발언들을 불식시킬 수는 없다.

연방은행은 처음부터 경제 및 화폐통합과 같은 민감한 정책은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발권은행 역시 양 독일 국민경제가 점진적인 통합방식을 취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왜냐하면 동독에로의 조속한 DM의 도입은 동독 주민들에겐 너무도 힘겨운 적응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멈출지를 모르는 이주 물결에 직면하여 조속한 통합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교환 비율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은행장 피엘은 2월말, ‘이 문제는, 자세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현재 동독의 부채와 자산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독 국립은행은 사실에 입각한 결산보고서를 제시하지 않을

5 Jürgen Jeske, Der richtige Kurs, in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0년 4월 2일자.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역시 다른분야에서의 실상과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은행 예치금들은 국가에 대한 신용 대부금조로 국영기업과 주택사업에 투입되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부채는 전 예치금의 2.5배 이상이나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앙은행 자문위는 전체 예치금에 대한 "1:1" 교환을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앙은행 자문위원회는 연립 정부 정치가들이 끈덕지게 요구하고 있는 임금 및 연금에 대한 1:1 교환비율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조속한 경제 및 화폐통합은 일시적이거나 대량 해직사태를 초래할 것인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 2백만여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후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나마도 비생산적으로 조업 중이다. 일련의 기업들은 환경보전상의 이유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며, 새 일자리들이 생기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추가로 임금까지 1:1 비율로 교환 지급할 경우 동독 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악화되어 대량 실업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 밖에도, 화폐교환비율을 사회 정치적 동기에 의해 너무 관대하게 책정할 경우, 이는 DM 화폐 가치 안정을 위협하는 불확정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연방 은행의 과제는 물가안정을 기하는 데에 주어져 있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주간의 국제 금융 시장 정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어는 통일 독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안정된 DM 만이 가치있는 마르크이다.

연방 정부가 중앙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 미지수이다. 물론 연방은행의 안을 따르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명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는 은행 예치금을

- 특히 이것이 동독인 들에게는 노후 보장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 보다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다. 물론 이는 비싼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40년간 사회주의 실패 경제

정책의 산물인 동독 마르크는 서독 마르크의 1/5 가치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에 대해서도 서독 정부는 화폐통합 시 사회보장적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자문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금을 화폐교환 이후 점차적으로 서독 수준으로 인상시켜 나가는 방안이 현명할 것이다.

반면 임금 및 급여에 대해서는 1:1 교환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가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조치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이나 온 김에 지적해 두고 싶은 사항으로, 화폐교환 이후 각 기업과 기관들은 능력별 차등제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협정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얼마 안 있어 동독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임금도 이에 준하여 곧 인상 추이를 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 실업보험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포함해 - 수십억 DM에 달하는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요구한다. 이는 독일이 통일을 위해 치루게 될 대가로서, 부자나라만이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헛된 망상만 불러 일으키는 정치가들의 입바른 소리와 동독 주민들을 점점 더 불안케 하는 정당들 간의 분열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동독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다. 서독 탄생 당시 루드빅 에어하르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이성과 강한 심장”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일의 경제적 통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9. 환전 자산 취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제 1 조

예금잔액의 환전실시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적법한 자산 취득 여부의 조사는 이하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이를 위하여 인민의회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임시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2 조

동독내 또는 동독이외의 지역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은 요청을 받을 경우 환전하기 위하여 신고한 예금잔액의 적법성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 3 조

제(1)항 제2조의 요청은 신고한 예금잔액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 임시특별위원회에 의하여 행해진다.

제(2)항 생 략

제(3)항 이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특별위원회는 은행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우선적으로 환전을 해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환전을 정지하고 이 금액의 사용금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예금거래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전한 예금의 적법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 5 조

제(1)항 임시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예금잔액의 취득 적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제(2)항 예금잔액 또는 일부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적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나 규정을 위반한 행위
-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영업행위
- 국가 또는 공권력 및 직위의 남용
-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 6 조

임시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 조

이 법은 199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0. 동독내 통화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처벌에 관한 법

제 1 조

동독 재무성 산하에 임시 “통화변경 관계 검사관청” Pruefboehorde Waehrungs-
mstellung)을 설치한다. 이 기관의 업무는 통화변경과 관련하여 동독마르크를
서독 DM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법 제1조에 따른 검사작업의 실시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은 동독내에 거주지,
소재지 또는 지사를 갖고 잇는 자연인 또는 법인들에 대해 본 법이 규정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제(1)항 동독 베를린 국립은행은 1990.7.6일까지의 예금잔액이 100,000 동독
마르크 이상에 달하는 동독내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구좌를 즉시 확인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금융기관은 임의추출의 일환으로 검사관청이 지정한 특정 구좌들에
대해 저축예금의 경우 1989.9월부터 1990.6.30일까지의 잔액,
대체구좌 (Spargirokonten)의 경우 1989.10월부터 1990.6.30일까지의
잔액을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구좌잔액이 50,000 동독마르크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이를 검사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3)항 동독 베를린 국립은행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1990.7.6일까지의 예금
잔액이 100,000 마르크 이상에 달하는 동독내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구좌를 확인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1989년 9월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의 저축성 예금구좌

잔액 및 1989년 10월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의 대체구좌의 월 잔액이 50,000 마르크 이상 증가한 자연인의 구좌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증거자료를 즉시 검사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검사관청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은행구좌를 신설한 법인 또는 동독에 상주하는 본사 또는 지사의 예금잔액이 250,000 마르크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구좌를 열람 함으로써 확인한다.

제 4 조

검사관청은 즉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검사관청은 이를 위하여 예금 구좌를 열람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관청에 조회를 하거나 은행거래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검사관청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예금 및 제3조 제(4)항의 검사기관에 있어서의 예금에 대하여 최고 4주까지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검사에서 범행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경찰서에 증거서류와 함께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금융기관은 검사관청이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 6 조

검사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고와는 별도로 자체 인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제(1)항 검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은 업무 수행시 알게 된 개인적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지고 있다. 또, 이 자료는 본 법 제1조에 언급된 사항들에 한해서 사용이 허용된다.

제(2)항 개인적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본 검사절차의 일환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990년 5월 18일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에 체결된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조약 부록 VII에 명기된 자료보호원칙 (Datenschutzgrundsätze)이 적용된다.

제 8 조

본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융기관들의 비용을 파악하여, 이를 재무성으로부터 보상받도록 한다.

제 9 조

본 법은 1990. 6. 29일부터 발효한다.

참 고 문 헌

< 參考 文獻 >

Akerlof, George A./Andrew Rose/Janet Yellen/Helga Hessenius: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i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1991. William C. Brainard and George L. Perry (Ed.),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1.

Bofinger, Peter: The German Monetary Unification (Gmu): Converting Marks to D-Marks. i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e Review. 1990. 7/8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Hausmanns Plan zur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in: BMWI-Tagesnachrichten, Bonn 8. Jan. 1990. Nr. 9507

Busch, Andreas: Die deutsch-deutsche Währungsunion. Politisches Votum trotz ökonomischer Bedenken. in: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 - Strategien - Kontroversen. Libert, Ulrike/Merkel, Wolfgang (Hg.): Leske + Budrich, Opladen 1991, pp. 185-207.

Deutsche Bundesbank: Vorschläge des Zentralbankrats zu einem Umstellungsgesetz. in: Pressenotiz der Deutschen Bundesbank. Frankfurt a.M. 2. April 1990.

Ders.: Die Währungsunion mi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Monatsberichte der Deutschen Bundesbank. Juli 1990. pp. 14-29.

Hankel, Wilhelm: Die Sieben Todsünden der Vereinigung. Wege aus dem Wirtschafts- desaster. Siedler Verlag. Berlin 1993. pp. 25-41.

Jeske, Jürgen: Der richtige Kurs.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rankfurt a.M. 2. April 1990

Kampeter, Werner: "경제통합 이후 동독경제의 붕괴." 통일독일의 사회경제적 변화. 베르너 푸쉬라/김원식(편): 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992. pp. 5-54.

Priewe, Jan/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i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Frankfurt a.M. 1991. pp. 56-114.

- Schneider, Hans K.: Brief des Sachverständigenrates vom 9. Februar 1990 an den Bundeskanzler. Zur Frage einer Währungs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in: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Deutscher Bundestag.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472, pp. 306-308.
- Schrettl, Wolfram: Economic and Monetary Integration of the Two Germanies. in: Economic Systems. Vol. 15, No. 1, April 1991, pp. 1-17.
- Sherman, Heidemarie/Helmut Laumer: Germany One Year Later. Attempt of an Appraisal after one Year of Economic, Monetary and Social Union. Tokyo Club Papers No. 5, ifo-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 Sibert, Horst: Der Umstellungskurs kann nicht 1:1 sein. in: Handelsblatt Wirtschafts- und Finanzzeitung. Düsseldorf/Frankfurt 2. April 1990
- Ders.: Das Wagnis der Einheit. Eine wirtschaftspolitische Therapie,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92
- Sinn, Gerlinde/Hans-Werner Sinn: Kaltstart.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J.C.B. Mohr, Tübingen 1992
- 염돈재: "잘못 알려진 독일통일" 신동아 1993년 10월호
- 재무부: "독일통일관련자료집 (II)" 재무부 국제금융국 1991.9
- 통일대비 정책연수단: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제 2 차 통일대비 정책연수 결과 보고서. 통일원 통일정책실 1993

동서독 화폐 통합

인 쇠 : 1993. 12. 10

발 행 : 1993. 12. 15

발행처 : 통일원 통일정책실

제 2 정책관실

TEL: 720 - 2148

725 - 0762

〈비매품〉